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



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11-1420000-000330-10

# 2013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부

## 창업 · 사업전환

1장. 아이디어 · 기술 창업 지원 .....	13
1-1 청년창업사관학교 .....	14
1-2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	16
1-3 선도벤처연계 창업 지원 .....	18
1-4 연구원 예비기술창업 지원 .....	20
1-5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	22
1-6 창업선도대학 육성 .....	24
1-7 실전창업리그 「슈퍼스타 V」 .....	25
2장. 맞춤형 창업지원 .....	30
2-1 창업아카데미 지원 .....	31
2-2 청소년비즈쿨 지원 .....	32
2-3 시니어창업 지원 .....	34
2-4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	36
2-5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	38
2-6 창업기업 자금지원 .....	39
2-7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	42
3장. 1인 창조기업 육성 .....	44
3-1 앱 개발 및 창업 지원 .....	45
3-2 우수 앱 해외진출 지원 .....	47
3-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48
3-4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	52
3-5 참살이 업종 실무교육 지원 .....	54
4장. 사업전환, 재창업 지원 .....	56
4-1 사업전환 지원 .....	57
4-2 유 · 무형 자산거래 알선 .....	59
4-3 중소기업 재기 지원 .....	60
4-4 가업승계 지원 .....	62

## 2부 금융 지원

5장.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	70
5-0 정부의 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71
5-1 신성장기반자금 .....	78
5-2 경영안정자금 .....	80
5-3 긴급경영안정자금 .....	81
5-4 투·융자 복합금융 .....	83
6장. 신용보증 지원 .....	103
6-1 신용보증 .....	104
6-2 신용보험 .....	113

## 3부 기술개발 지원

7장. 기술개발 자금 지원 .....	123
7-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124
7-2 창업성장 기술개발 .....	129
7-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131
7-4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	133
7-5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	136
7-6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	139
7-7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142
7-8 중소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	145
7-9 중소기업 디자인 역량강화 .....	148
7-10 업종 공통기술개발 .....	151
7-11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154
7-12 개발기술 사업화 .....	157
8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 지원 .....	164
8-1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 .....	165
8-2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	168
8-3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	171
8-4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장비 이용 .....	174
8-5 뿌리산업 기술협력 강화 .....	177
8-6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 .....	179
8-7 의료기기 비교임상 및 성능평가 지원 .....	182
8-8 의료용 전기기기 국제인증 지원 .....	185

9장. 정보화 지원 및 기술유출 방지 .....	188
9-1 경영혁신 플랫폼기반 정보화지원 .....	189
9-2 생산현장 디지털화 .....	191
9-3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지원 .....	194
9-4 기술유출 방지 .....	196

## 4부

### 인력 지원

10장. 현업에 곧바로 활용하는 인재 교육.....	204
10-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205
10-2 기술사관 육성.....	208
11장. 재직자 직무교육 및 인력유입 촉진 .....	210
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	211
11-2 연수업체 인증제도 운영 .....	214
11-3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취업지원 .....	217
11-4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	220

## 5부

### 판로 지원

12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 제도 .....	227
12-1 직접생산 확인제도 .....	228
12-2 계약이행능력심사 .....	231
12-3 적격조합 확인제도 .....	233
12-4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제도 .....	235
12-5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237
12-6 공공구매론 .....	240
12-7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242
13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244
13-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245
13-2 성능인증제도 .....	247
13-3 성능보험제도 .....	249

14장. 마케팅, 홍보 지원 .....	250
14-1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	251
14-2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	254
14-3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	257
14-4 공동상표 지원 .....	260
14-5 마케팅 기반 조성 .....	262
14-6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	265

## 6부 수출지원

15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지원 .....	273
15-1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	274
15-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278
15-3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	281
15-4 무역촉진단 파견 .....	289
15-5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	296
15-6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 .....	300
15-7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303

## 7부 건강진단 및 컨설팅 지원

16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를 활용하세요 .....	310
16-1 중소기업 건강관리 지원 .....	311
16-2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지원 .....	323
16-3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 .....	325
16-4 기업회생 컨설팅 .....	328
16-5 녹색경영 평가, 그린비즈 컨설팅 .....	330
16-6 중소기업간 해외녹색규제 협력대응지원 .....	333
16-7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지원단 .....	335

## 8부 소상공인 · 전통시장

17장.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	346
17-1 소상공인 창업교육 .....	347
17-2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	349
17-3 소상공인 e-러닝교육 .....	350
17-4 소상공인 교육장 지원 .....	352

17-5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354
17-6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	356
17-7 소상공인방송(yes-tv) .....	358
17-8 상권정보시스템 .....	360
<b>18장. 맞춤형 경영개선과 협업화 지원 .....</b>	<b>362</b>
18-1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	363
18-2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	365
18-3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	368
18-4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	370
18-5 소상공인 자금 지원 .....	371
18-6 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	376
<b>19장. 대형할인점 부럽지 않은 전통시장 .....</b>	<b>378</b>
1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	379
19-2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382
19-3 시장경영 혁신지원 .....	384
19-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 .....	388

## 9부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지원

<b>20장. 여성기업 창업, 경영지원 .....</b>	<b>393</b>
20-1 여성전문분야 창업교육 .....	394
20-2 여성CEO MBA 교육 .....	396
20-3 전국여성CEO 경영연수 .....	398
20-4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	399
20-5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402
20-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	404
20-7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	406
20-8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 .....	409
20-9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411
<b>21장. 장애인기업 맞춤형 창업지원 · 경쟁력 강화 .....</b>	<b>413</b>
21-1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	414
21-2 장애인 원스탑 창업교육 .....	417
21-3 장애인특화 창업보육실 운영 .....	419
21-4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	422

## 10부 도움이 되는 제도

22장. 알아두면 좋은 제도 .....	426
22-1 벤처기업 확인 .....	427
22-2 이노비즈 제도 .....	430
22-3 메인비즈 제도 .....	432
22-4 우수그린비즈 선정제도 .....	434
22-5 중·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확인 .....	436
22-6 사업조정 제도 .....	438
22-7 중소기업옴부즈만 .....	439

## 부 록

1.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 방법 .....	442
2. 중소기업 조세 지원 .....	444
3. 중소기업청 및 지원기관 연락처 .....	448

---

# 1부. 창업 · 사업전환



S M A L L A N D M E D I U M B U S I N E S S A D M I N I S T R A T I O N

# 창업과 재도약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b>1</b>	<b>아이디어 · 기술 창업 지원</b>	<b>13</b>
	청년창업사관학교 · 청년창업자에게 창업 전과정 일괄 지원	14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 수요자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	16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 선도벤처기업연계의 성공 노하우 전수	18
	연구원 예비기술창업 지원 · 연구원 기술창업자 집중사업 지원	20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 선도벤처기업연계의 성공 노하우 전수	22
	창업선도대학 육성 ·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24
	실전창업리그「슈퍼스타 V」· 미래 유망CEO 발굴을 위한 성공창업의 등용문	25
<b>2</b>	<b>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b>	<b>30</b>
	창업아카데미 지원 ·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양성	31
	청소년비즈쿨 지원 · 청소년 창업유망주 발굴 및 육성	32
	시니어창업 지원 · 퇴직 후 창업을 통한 제2인생 설계 지원	34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 창업보육 인프라 지원	36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창업	38
	창업기업 자금지원 · 업력 5년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자금지원	39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 모태조합 출자로 창업 · 투자 활성화	42

# 창업과 재도약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b>3</b>	<b>1인 창조기업 육성</b>	<b>44</b>
	앱 개발 교육 지원 · 앱 개발자양성을 위한 무료 교육 지원	45
	우수 앱 해외진출 지원 · 국내 수 앱의 글로벌 마켓 진출 지원	47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 패밀리카드 1장으로 전국센터 자유이용	48
	지식거래 조건부 사업화 지원 · 프로젝트 기반의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52
	참살이업종실무교육지원 · 3대 유망 참살이(문화, 녹색, 건강)분야 무료 실무교육 지원	54
<b>4</b>	<b>사업전환, 재창업 지원</b>	<b>56</b>
	사업전환 지원 ·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사업전환 지원	57
	유 · 무형 자산거래 알선 · 온라인을 통한 자산 거래 지원	59
	중소기업 재기지원 · 실패 중소기업의 재창업 지원	60
	가업승계 지원 · 2세 경영인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62



###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창업 · 사업전환 Q&A

- Q. 시제품제작, 사업화자금 등 창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및 경영애로에 대해 도움 받고 싶습니다. 자격조건이 있나요?
- A.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입니다.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 집약 업종(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이 지원대상입니다.
- Q. 상품화가 가능한 사업아이디어가 있어 직접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 A. 상용화 기술을 보유하고 창업에 뜻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대학 등의 기술, 인력, 장비 등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경비의 70% 범위 내에서 기술 분야에 따라 제조분야와 지식서비스분야로 나누어 최대 5천 만 원까지 지원해드리니 도전해 보세요.
- Q. 창업선도대학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 A. 창업선도대학은 전국 주요 광역경제권별로 대학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예비창업자 발굴 및 교육, 창업실행, 성장촉진 등 창업 전 과정을 하나의 대학 내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Q.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은 일반 창업선도대학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 A. 2013년부터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과 일반 창업선도대학이 나누어 운영되는데,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은 일반 창업선도대학과 기본교육프로그램은 같으나 창업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은 창업팀들이 창업선도대학에 입소하여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공간, 기자재 등)를 제공하고, 책임 멘토단을 통한 다각적인 코칭 및 심화 창업교육을 지원합니다.
- Q.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선발과정에서 창업기업의 외국어 역량이 중요하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팀원 중 최소 1명은 영어 혹은 진출국가 언어에 능통자여야 합니다.

Q.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창업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항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창업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현지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국내외 창업연수 및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단, 현지 체재비, 사업모델 개발비는 자부담으로 하셔야 합니다.

Q.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연구기술은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그 소유권을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연구원예비기술 사업에 기술 이전비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비(정부지원금의 20% 이내)는 연구기관, 대학 등 보유기술을 이전받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권리를 보장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창업과제 수행 중 사업 아이템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창업과제의 변경은 불가하며, 추가시 고도추가일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선도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간의 매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선도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간의 매칭은 예비창업자 사업신청 시 참여 선도벤처기업의 정보를 확인하시어 매칭희망 선도벤처기업을 3순위까지 지정해 주시면 해당 선도벤처기업과의 상호 매칭희망 우선순위에 따라 매칭을 진행해 드립니다.

Q. 사업신청 시 등록된 팀원은 사업수행 중 변경이 불가한가요?

A.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팀원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해당 팀원의 인적사항과 사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주관기관으로 해주시면 정당한 사유여부를 판단하여 변경 승인이 가능합니다.

# 01

## 아이디어 · 기술 창업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1 청년창업사관학교 · 14

1-2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 16

1-3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 18

1-4 연구원 예비기술창업 지원 · 20

1-5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 22

1-6 창업선도대학 육성 · 24

1-7 실전창업리그-「슈퍼스타 V」 · 25

우수지원사례 ① 국내 최초 통합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애드립’

〈11년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주)모코플렉스〉

우수지원사례 ② 어깨워킹걸대, 기능성과디자인을 동시에 잡다

〈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주)모비유〉



## 1-1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자에게 창업 전과정 일괄 지원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소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양성하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253.9억원, 1년간 최대 100백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 \* 총 모집인원 : 300명 내외
  - 경기도 안산(입소형) 및 지방 3개 권역(입소 및 준입소형) 지원
  - 지방 3개 권역 : 호남(광주광역시), 대구경북(경북 경산), 부산경남(경남 창원)
-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지원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기업의 대표

### 지원이 안되는 경우

- '10~'12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선정자
- '10~'12년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중인 자 또는 탈락, 포기한 자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등

**지원 업종** 고용및부가가치창출이높은기술집약업종(제조업및지식 서비스업)

**선정 절차**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면접심사 → (3단계) 심층심사

### 지원 내용

- 창업공간 : 사관학교(안산, 광주, 경산, 창원)내 창업준비 공간을 제공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코칭
- 창업교육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등 사업비 지원
- 연계지원 : 정책자금, 투자 및 보증, 판로 및 입지 등 연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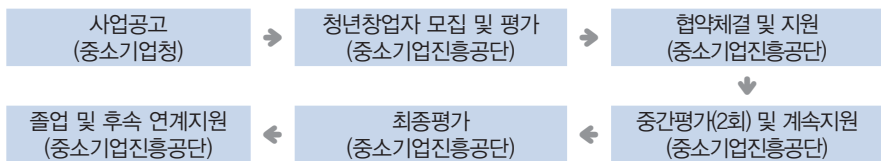
### 신청 서류

- 사업참가(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 · 접수

- 신청기간(예정)
  - 1차 접수 : '13. 1월중
  - 2차 접수 : '13. 2월중
- 창업정보관리시스템([www.changupnet.go.kr](http://www.changupne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14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 031-490-1372/ 1373/ 1371



## 1-2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수요자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

수요자((예비)기술창업자) 선택방식을 통해 창업수요자에게 지원분야 및 주관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1,000과제 내외(500억원)

\* '12년 지원현황 : 578개 과제, 창업과제당 평균 4,000만원

**지원 대상** 협약종료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1년 미만)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등
- '09~'12년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자 등
  -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자는 제한적 지원 (추후안내)

### 지원 내용

- 대학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 조건부로 지원

### 지원 절차

- 지식서비스 분야(연6회)

신청접수



1차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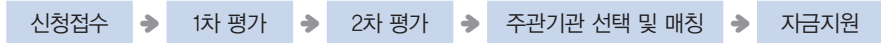


멘토링 및 2차 평가



자금지원

- 제조 분야(연1회)



### 신청 · 접수

주관기관 : 추후 별도안내

예비기술창업자 : 추후 별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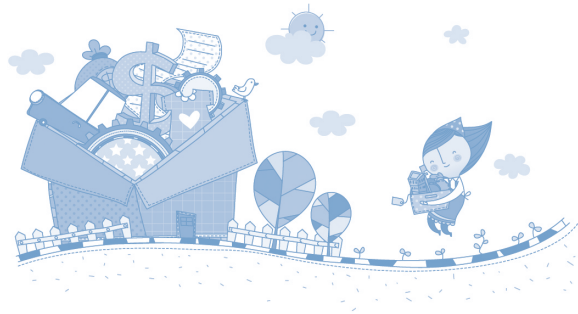
- 창업지원 온라인 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http://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한 접수

###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3991, 8921
- 창업진흥원([www.kised.or.kr](http://www.kised.or.kr)) : 042-480-4334~8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 지원정책 / 창업/벤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1-3 선도벤처연계 창업 지원

선도벤처기업연계의 성공 노하우 전수

성공한 선도벤처기업의 성공 노하우 전수 및 예비창업자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성공창업 유도 및 미래 스타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지원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총 75억원, 80개 창업팀 내외 지원

\* '12년 지원현황 : 신규 40개, 계속 10개 과제, 신규과제당 평균 9,000만원 지원

**지원대상** 우수 아이템의 개발을 통하여 선도벤처기업과 협업 등 전략적 제휴관계를 희망하는 기술창업희망자(팀)

\*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한지 1년 이내인 자 또는 협약종료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까지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

### 지원이 안되는 경우

-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중인 자 등

### 지원 내용

- 선도벤처기업이 육성하고 싶은 예비창업팀을 직접 선발하고 창업 준비공간, 전담 멘토링, 사업기획, 기술보완, 국내외 마케팅(판로개척) 등 지원
- 창업팀의 창업 준비활동 및 시제품 개발 자금을 창업 조건부로 지원

### 지원 절차



### 신청·접수

선도벤처수행기업 : 2013. 2월초 (예정)

(예비)창업팀 : 2013. 3. 4 ~ 3. 15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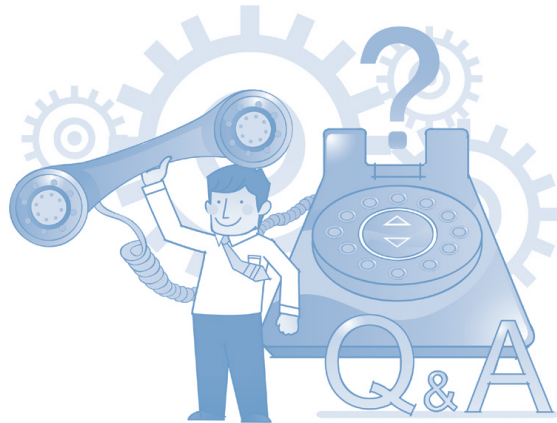
- 창업지원온라인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한 접수
  - \* 단, 선도벤처수행기업의 경우 주관기관(벤처기업협회)에 직접신청

###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423
- (사)벤처기업협회(www.venture.or.kr) : 02-890-0627~28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지원정책 / 창업/벤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1-4 연구원 예비기술창업 지원

연구원 기술창업자 집중사업 지원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연구원 예비창업자(팀)를 선정하여 BI 입주지원,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경영 등을 종합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총 25개 내외 창업과제(20.5억원)

\* '12년 지원현황 : 22개 과제 선정지원, 창업과제당 평균 9,000만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으로 직접 연구개발 또는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희망하는 자

- \* 예비창업자 : 연구기관 재직 경력 5년 이상이고 퇴직 후 3년 이내인 연구원
- \* 예비창업팀 : 연구기관 재직 경력 5년 이상이고, 퇴직 후 3년 이내인 연구원 1/20이상 포함
- \* 계약직 연구원도 기본여건 충족 시 참여를 허용

### 연구기관의 범위

- 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R&D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지자체,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출연한 재단법인 형태의 연구기관에 限

### 지원 내용

- 선정된 창업팀별 시제품 완성시기를 기준으로 단계별 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창업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 동 사업에 연구원 예비창업자(팀)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 선정된 연구원 예비창업팀은 협약 후, 연구원특화 BI에 1년간 무상입주 등 창업보육 지원
- 사전 멘토링 및 소비자 반응평가 시행, 우수창업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신청 · 접수**

2013. 1. 30 ~ 2. 28(예정)

- 창업지원 온라인 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한 접수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지원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14, 4413
- 창업진흥원(www.kised.or.kr) : 042-389-0041 ~ 44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지원정책 / 창업/벤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1-5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글로벌 청년창업 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진출 의지가 높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창업 교육 및 코칭, 현지 보육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5개 창업팀 내외(총 20억원)

\* 창업팀 수준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 가능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선정 후 중도 포기자 포함)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사업이 진행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등

**지원 내용** 국내외 창업연수 및 보육지원

- 사업아이템(모델) 현지화를 위한 이론, 실습 프로그램 제공
  - \* 해외현지 기업문화, 법률, 사업모델 현지화, 성공기업 CEO 및 투자자 만남, 멘토링 등
- 본격적인 현지 진출 · 창업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 제공
  - \* 현지 입주공간 제공, 멘토링, 투자자 네트워킹 등

**신청·접수** 3 ~ 5월 중

- 창업지원 온라인 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을 통한 접수

### 지원 절차



###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3991, 8921
- 창업진흥원(www.kised.or.kr) : 042-480-4331, 4333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지원정책 / 창업/벤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1-6 창업선도대학 육성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지식과 기술이 집적되어 있는 창업특화 대학에 창업교육부터 사업화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402억원

\* '12년 지원현황 : 250억원 (18개 대학, 예비창업자 총 537개 과제 지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이내 기업

### 지원 내용

- 창업사업화 지원
- 창업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및 창업동아리 육성 지원
- 창업전담인력 지원 등

### 지원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 신청·접수

- 창업정보관리시스템([www.changupnet.go.kr](http://www.changupnet.go.kr))을 통한 접수

### 문의처

- 창업진흥원 : (042-480-4352, 4354, 4358)



## 1-7 실전창업리그 「수퍼스타 V」

미래 유망CEO 발굴을 위한 성공창업의 등용문

성공 창업을 꿈꾸는 참가자들의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친 수상자들에게 포상금과 투자 유치·특허·창업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경진대회입니다.

### 지원 규모 17억원

- \* 2012년 지원 현황 : 총 1,592팀 참가 신청, 전국결선 28팀 수상(총 상금 4억 5천만원)  
전국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 2012 수퍼스타 V 최종 3팀 수상(총 상금 1억원)

###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시제품제작, 특허출원, 투자유치 등
- 창업멘토링 지원 : 일부 참가자를 대상으로 창업멘토링 지원

### 신청·접수 3 ~ 5월 중

- 창업지원 온라인 관리시스템(<http://startbiz.changupnet.go.kr>) 신청

###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3991, 8921
- (사)창업진흥원 : 042-480-4357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 지원정책 / 창업/벤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중기맨이  
떴다!

우수지원사례 ① 국내 최초 통합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애드립'  
(12년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주)모코플렉스)



(주)모코플렉스 박 나라 대표

“제게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우연히 사업으로 이어져 투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앱 개발사와 함께 성장하는 광고 플랫폼, 수익 모델을 찾아 어떻게 서비스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좀 더 편리한 기술을 만들겠습니다.”

국내 최초 통합 모바일 광고 플랫폼 '애드립'을 출시하여 서비스 시작 10개월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주)모코플렉스의 박나라 대표는 아직도 얼떨떨하다.

#### (주)모코플렉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다.

(주)모코플렉스는 인터넷 서비스 1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 모여 설립한 모바일 전문 개발사로, 원래 위치기반 채팅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선보였다. 앱을 사용하는 회원이 늘어가면서 앱에 광고를 붙이고자 솔루션을 찾았지만 박나라 대표가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광고 플랫폼 회사가 없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듯이 박 대표는 직접 광고를 모으고 순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이왕 만든 솔루션이니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개방하자는 생각에 홈페이지에 올려두었고, 관련 서비스에 목말랐던 개발사들이 하나, 둘 그의 API를 쓰기 시작하면서 광고 플랫폼 회사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제안해 왔다.

서비스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주)모코플렉스는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LTE 솔루션 전문업체인 (주)엔텔스와 매칭되어 선배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및 창업노하우 등을 전수받았다. 또한 (주)엔텔스로부터 1억원을 직접 투자받아 더욱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 인터넷 서비스 베테랑들이 뭉쳐 대기업에 도전장을 내밀다.

이동통신3사(SK,KT,LG)와 NHN, 다음, 구글, 삼성전자 등이 경쟁하고 있는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에 (주)모코플렉스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베테랑들이 모인 회사라 해도 대기업과의 경쟁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박 대표는 모바일 광고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2012년, 스마트폰 보급률이 60%에 다다를 정도로 대한민국에는 스마트폰 열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은 기존 온라인 광고 시장의 5%, 700억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은 불안정하고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눈 앞의 수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서비스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점차 그 규모를 키워갈 생각이다. 서비스 시작 10개월 만에 500여 개발자(사)와 1,500여 개의 앱이 등록되어 ‘애드립’의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애드립’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광고 트래픽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로!

“모바일앱 시장 생태계가 양적으로 팽창될수록 업계 전체의 수익성 제고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본엔젤스는 이에 대한 해결책중 하나로 모바일 광고 플랫폼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주)엔텔스에 이어 (주)본엔젤스 벤처파트너스로부터 3억의 추가 투자금을 받게 되었다. 강석훈 본엔젤스 이사는 ‘애드립’이 이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점과 창업팀의 실행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투자 이유를 밝혔다. 투자 자금으로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주)모코플렉스는 2013년 직접적인 매출발생은 물론 BEP(손익분기점) 달성을 바라보고 있다.

모바일 광고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에 이를 만큼 엄청난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그 중 국내 시장은 4위 규모이다. 박 대표는 ‘애드립’으로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을 선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빠르게 글로벌 서비스로 전환시켜 세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포부를 갖고 있다.

“애드립의 모바일 광고 솔루션을 포함한 부가적인 다른 기능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입니다.” 국내 최초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쥌 수 있을지, (주)모코플렉스와 ‘애드립’의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중기맨이  
떴다!

우수지원사례 ② 어깨 위 링겔대, 기능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다.  
<'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주)모비유



(주)모비유 김형석 대표

“병원에 입원해보셨어요? 링겔거치대, 참 거추장스럽죠. 어깨 위로 올려봤습니다. 한번 매보시면 가뿐하실 겁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적용되어 최초 개발된 휴대용 링겔대, ‘EZpole’은 (주)모비유 김형석 대표에게 2012 독일 Reddot Design Award 본상 수상의 영광까지 안겨주었다.

“EZpole은 환자가 직접 몸에 착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능성은 물론 디자인의 세련됨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각 부분의 디자인에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 “5년 후면 병동 풍경이 바뀔 겁니다.”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바퀴달린 이동식 링겔거치대는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져 제품 자체도 무겁지만 화장실, 병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이동할 시 밀고 다니기에 큰 불편함이 있다. (주)모비유의 김형석 대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휴대용 링겔대 ‘EZpole’을 개발하게 되었다. ‘EZpole’은 어깨 상부와 가슴 부위에 착용하는 휴대용 링겔거치대로 타인의 도움 없이 어디든 환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사용하면 어깨가 아프지 않냐구요?” ‘EZpole’은 어깨뼈(견봉)가 받는 압력을 완화하도록 수액의 무게중심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고, 최고급 소재 3중 소프트 패드를 어깨걸이구와 겨드랑이 고정벨트에 적용했기 때문에 견봉과 근상근, 겨드랑이의 통증을 줄이고 사용자의 쇄골에 기구가 직접 닿지 않아 착용감도 매우 좋다. 다만, 수액을 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수술 받기 전이나 수술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수액을 1개만 투약 받는 환자들이 주 사용 대상이다. 김 대표는 더 이상 무겁고 불편한 이동식 링겔거치대를 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병원의 ‘혁신’을 꿈꾼다.

어깨 위 링겔 거치대, 기능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다.



EZpole 착용 모습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독일의 Reddot Design Award, 총 4,515개의 제품이 출품된 가운데 당당히 본상을 수상했다. 기능성에 이어 디자인의 품질과 혁신성까지 인정받은 셈이다.

“하이테크 기술을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수액의 무게 분산 기능, 고강도 플라스틱 사용을 통한 안정성, 400g의 초경량, 보관 및 휴대 용이성까지 갖춘 똑똑한 제품입니다. 또한 환자가 직접 몸에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각 부분의 디자인에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인류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업, (주)모비유의 미래입니다.

EZpole의 개발을 완료하기까지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선정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자금지원을 통해 제품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제 막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 수요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40kg 미만 체형, 80~100kg 이상의 체형 등 맞춤형 제품의 디자인에도 착수하였다. 인류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김 대표의 신념인 만큼 다양한 체형의 환자들이 편리하게 EZpole을 사용하는 것이 목표이다.

해외 디자인 어워드에서의 수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러 병원과 의원에서 제품에 대한 견적 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지역대리점 체결 희망의사를 밝힌 곳도 있다. 유럽연합 진출을 위하여 CE마크도 획득하였고, 현재 터키, 홍콩, 일본 등의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수출 관련 업무도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빠르면 2013년부터 조금씩 수출의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EZpole이 받는 호평을 넘어, 5년 후의 병동 풍경을 바꾸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인류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업 (주)모비유가 되겠습니다.”

# 02

## 맞춤형 창업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2-1 창업아카데미 지원 · 31
- 2-2 청소년 비즈쿨 지원 · 32
- 2-3 시니어창업 지원 · 34
- 2-4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 36
- 2-5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 38
- 2-6 창업기업 자금 지원 · 39
- 2-7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 42



## 2-1 창업아카데미 지원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양성

- ①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전 창업교육 기술평가, 창업자 금 및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 ② 대학 창업 강좌 및 창업동아리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가를 육성합니다.

### 지원 규모

'13년 예산 69.5억원, 일반인 창업교육기관 40개, 대학교 40개

### 지원 대상

- ① 일반인 창업교육 :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창업자
- ② 대학생 창업교육 : 창업강좌 수강생 및 창업동아리

### 지원 내용

운영기관 사업비, 교육생 창업지원금, 멘토링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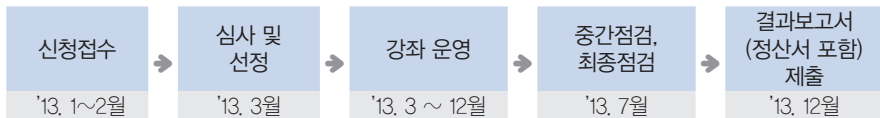
### 신청·접수

2013년 1월 ~ 3월 중, 창업교육 운영기관 선정(온라인 [www.changupnet.go.kr](http://www.changupnet.go.kr) 접수) 후 교육생 별도 모집

### 신청 서류

창업교육 운영기관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수료생 지원계획서, 사업예산서 등 제출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535
- 창업진흥원 : 042-480-4465



## 2-2 청소년 비즈쿨 지원

청소년 창업유망주 발굴 및 육성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창업교육을 지원하여 청소년 창업 및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 체험활동 지원 실시를 통해 기업이 정신을 확산합니다.

### 지원 규모

전국 130개 초·중·고등학교 지원, 학교 당 12~50백만원 차등지원 (전체 예산 45억원)

### 지원 대상

「초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지원 내용

- 창업동아리 지원, 기업인·금융인·교수 등 전문분야 외부특강, 창업행사 지원

### 신청·접수

2013. 1 ~ 3월 접수

- [www.changupnet.go.kr](http://www.changupnet.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비즈쿨 학교장의 운영의지 및 교육계획의 적절성
- 비즈쿨 운영 교육인프라 및 교육계획의 독창성

###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온라인 신청) 및 사업계획서

### 처리 절차

처리 절차	일 정
사업공고 및 비즈쿨학교 신청 · 접수	'13. 1월~2월
↓	↓
비즈쿨 학교 평가 및 선정	'13. 3월
↓	↓
운영 지원금 지급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13. 3월~12월
↓	↓
성과발표 및 평가	'13. 12월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535
- 창업진흥원 : 042-480-4461





## 2-3 시니어창업 지원

퇴직 후 창업을 통한 제2인생 설계 지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시니어(40세 이상 퇴직자)가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43.52억원, 20개 시니어창업스쿨, 13개시니어비즈플라자

**지원 대상**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 지원 내용

- 창업스쿨 운영, 시니어비즈플라자 설치·운영, 창업 커뮤니티 지원, 교육생 사후 관리 지원, 시니어특화창업보육센터입주
- 세부사업내역

분야	내용	비고
창업스쿨	• 시니어 예비창업자를 위한 실전창업 교육 운영 (약 80시간 내외)	2,000명 교육지원 (교육비 80% 지원)
비즈플라자*	• 창업준비를 위한 공간 제공 • 상담, 교육, 세미나, 특강 등 진행	전국 13개소 (신규2곳 포함)
시니어특화 창업보육센터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 기업에게 사업공간 제공 • 세무, 경영, 기술지도, 정보, 공동작업장 시설 제공 - 수원시, kt(성남시), 호서대(서울)	전국 3개소

- ▶ 서울(노원, 은평, 마포구), 경기(수원시, 의정부), 부산(사하구), 대구(수성구), 광주광역시, 강원(춘천), 경북(칠곡군), 울산(울주), 신규 2개 설치예정

**진행 일정** 2013. 1 ~ 12월

- 1월~12월 : 시니어 비즈플라자 운영
- 3월~7월 : 시니어 비즈플라자 신규지정
- 2월~3월 : 시니어창업스쿨 교육기관 모집
- 3월~11월 : 시니어창업스쿨 교육 수행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47
- 소상공인진흥원 : 042-363-7601~9
- 홈페이지 : 창업넷(사이트명 개정중)





## 2-4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창업보육 인프라 지원

우수한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초기 기업 입주 및 보육지원을 위한 보육실 확충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전체 예산 177.4억원(건립비 59.5억원, 운영비 117.9억원)

\* 2012년 지원 현황 : 신규지정 2개, 신규 건립지원 8개, 기존센터 확장지원 5개)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대학·연구소 등

### 지원 내용

- 건립비 : 창업초기기업 보육공간 확장 및 창업보육센터의 자립기반 마련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보육센터의 신규 및 확장건립 소요비용 지원
  -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3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운영평가결과 A등급 이상인 보육센터로 대응투자비가 총사업비의 30%이상 될 것)
- 운영비 : 전문매니저 인건비,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하여 보육센터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비 지원
  - 사업자당 최고 1억원 이내(운영실적을 평가하여 5개 그룹으로 분류, 차등 지원)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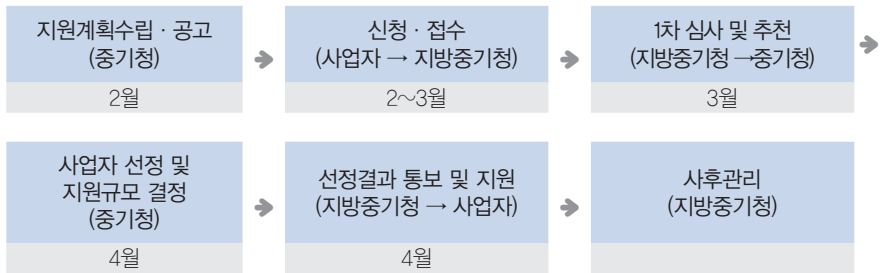
2013.2 ~ 3월

-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제주지역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접수

### 신청 서류

- 건립비 지원 : 신규 · 확장사업 신청서, 신규 · 확장 건립 사업계획서 등 (별도 공고시 안내)
- 운영비 지원 : 운영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자료(별도 안내)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공고 참고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413
- 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2013년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2-5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창업

회사설립과 관련해 정부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사설립을 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의 전산망을 통합 연계한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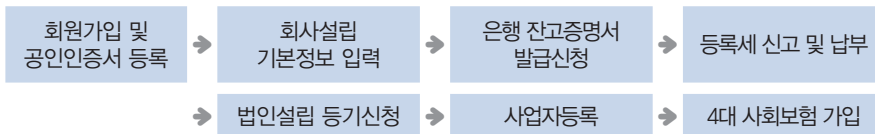
### 지원 내용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안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ETC),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 연계시스템)
- 서비스 개시일 : 2010. 2. 18 ~

### 사용방법

사용방법 시스템 사이트([www.startbiz.go.kr](http://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회사설립 관련 기본정보 입력 등의 절차 진행

### 온라인 회사설립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14
- 재택창업시스템 콜센터 : 1577-5475



## 2-6 창업기업 자금 지원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자금 지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의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 · 매입자금 및 기업활동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조 2,500억원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6,628개사 중 4,365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3.1억원

**지원 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 ·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 · 경영실권자
  -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 (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⑤ 신용회복복지(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용자 시점에는 사업자 등록 필요)

### 응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및 공정설치 등 소요자금
  - 안정성평가 및 유통·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 당 1회에 한정
  -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응자 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신용대출인 경우 5년 이내(거치기간 2년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신용대출인 경우 3년 이내(거치기간 1년포함)]
    - \* 단,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회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업당 1억원

### 응자 방식

- 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응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 재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평가를 실시하여 응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응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응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우리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응자대상 결정후 대출
  - \* 응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응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13. 1월중 취급은행 추가지정 예정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연락처는 부록 참조)

## 2-7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모태펀드 출자로 창업·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모태조합(fund of funds)은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정부재원으로 결성한 펀드로서 창업투자조합, 사모펀드 등에 대해 출자합니다.

**출자 규모** 4,400억원

**지원 분야** 투자조합 결성금액의 30~70%를 모태조합에서 출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투자 전문회사 등
- 출자조건
  - 창업·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결성액의 60% 이상을 조합의 주결성 목적에 따라 전문적으로 투자

### 지원 내용

- 창업초기기업, 투자회수시장 조성 등 정책목적이 높은 투자조합 결성을 지원
  - 엔젤투자매칭펀드, 인큐베이팅펀드, 청년창업전문펀드 등 창업 초기기업 투자펀드 조성
  - (엔젤지원형)세컨더리펀드, M&A펀드 등 투자회수 활성화를 위한 투자펀드 조성
- 기타, 사회적 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영화 및 문화콘텐츠 등 전문펀드 결성을 지원

모태펀드는 개별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각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펀드예요!

중기유망 TIP!



## 신청 · 접수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전략본부 : 02-2156-2000

## 신청 서류

- 출자신청서, 서약서, 확인서, 협약서, 투자조합결성제안서, 조합현황 등
  - \* 신청양식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www.k-vic.co.kr)에서 다운로드

## 처리 절차

	모태펀드 출자계획 공고 (한국벤처투자)	→	신청 제안서 제출 (벤처캐피탈 → 한국벤처투자)	→	출자심의위원회 개최 (한국벤처투자)
1차	1월 말		2월		2월
2차	5월		5 ~ 6월		5 ~ 6월
	모태펀드 출자조합 선정 (한국벤처투자)	→	모태펀드 출자금 지원 (한국벤처투자 → 벤처캐피탈)	→	조합 결성신청서 제출 등록 (벤처캐피탈 → 중소기업청)
1차	3월 초		3 ~ 8월		3 ~ 8월
2차	6월		7 ~ 12월		7 ~ 12월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 042-481-4487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우측「2013년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 03

## 1인 창조기업 육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3-1 앱 개발 및 창업 지원 · 45
- 3-2 우수 앱 해외진출 지원 · 47
- 3-3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 48
- 3-4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 52
- 3-5 참살이 업종 실무 교육 지원 · 54



## 3-1 앱 개발 및 창업 지원

앱 관련 실전창업을 위한 교육 지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앱 창작터를 통해 개발 역량 강화와 실전 창업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25개 내외 스마트 앱 창작터 운영(전체 예산 95억원)

### 지원 대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교육을 희망하는 예비 1인 창조기업

### 지원 내용

- 개발자 양성교육 및 기본 개발능력을 배양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앱 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실전창업 응용기술 교육을 병행

구 분	교육 내용
개발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과정(C++, 자바 등 언어), 플랫폼 개발환경(iOS) 이해 및 앱 개발 등</li> </ul>
실전 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 개발능력의 응용기술 전환</li> <li>HTML5, Open API(SN S포함), 3D Graphic, 삼성 Share, Google App Engine 등</li> </ul>

### 신청 · 접수

연중 수시

- ‘스마트 앱 창작터’별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생 모집
- 교육 희망지역 소재 ‘스마트 앱 창작터’를 통해 신청 · 접수

### 처리 절차



##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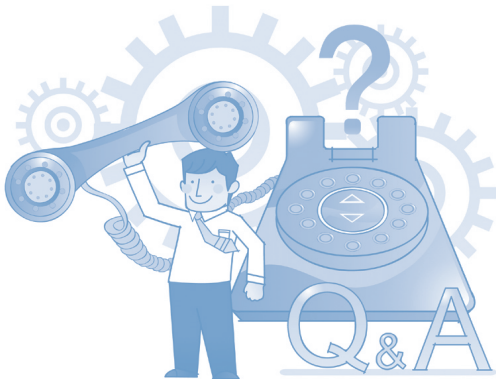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80, 4552
- 창업진흥원 : 042-480-4386, 4387, 4389 (www.kised.or.kr)
- 스마트 앱 창작터 : 붙임 참조 (창업넷 홈페이지 : www.changupnet.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3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우수사례

### 앱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 창출 사례

- 「여기요」(건양대 이성해) : 2012년 앱 창업 전문코스 참여, 휴대폰 분실 대비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하여 출시 5개월 만에 250만건 다운로드 (매출 월평균 500만원 내외)





## 3-2 우수 앱 해외진출 지원

국내 우수 앱의 글로벌 마켓 진출 지원

국내 개발 우수 앱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앱 지원센터에서 번역, 홍보물 제작 및 해외 퍼블리싱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분야별 2백만원~5백만원 한도내(전체 예산 10억원)

**지원 대상**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앱 개발자 및 개발기업

### 지원 내용

- 번역, 홍보물 제작, 퍼블리싱, 지적재산권 보호, 전문컨설팅 등 글로벌 마켓 진출 지원
- 해외 투자자, 퍼블리셔 초청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투자연계 지원

**신청 · 접수** 연중 수시

-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 · 접수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80, 4552
- 글로벌 앱 지원센터 : 02-398-7653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3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3-3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패밀리카드 1장으로 전국센터 자유이용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지원, 비즈니스 창출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 지원 내용

항 목	내 용
사무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창조카페** 등 비즈니스공간 지원</li> <li>* 1인 창조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형태의 작업공간</li> <li>** 민간기관 회의실 등 개방 가능한 유휴 공간 중 1인 창조기업의 회의·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공간</li> </ul>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li> </ul>
사업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특화센터)</li> </ul>
시설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li> </ul>

#### 신청·접수

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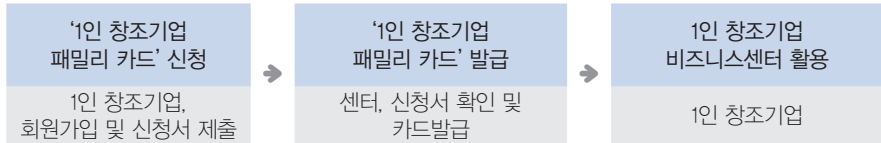
- 창업 종합지원사이트([www.changupnet.go.kr](http://www.changupnet.go.kr))를 통해 1인 창조기업으로 회원가입(정회원) 후
-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1인 창조기업 유무를 확인 후 1인창조 패밀리카드 발급(즉시) 또는 우편발급
  -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현황 : 붙임 참조

### 신청 서류

- 1인 창조기업 패밀리카드 발급 · 신청시 서류제출
  -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사업장 가입명부) 제출
  - 프리랜서(창업예정자) : 프리랜서 활동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건강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사무(작업)공간 활용 등 센터시설 안내 등의 자세한 사항은 창업 종합 지원 사이트([www.changupnet.go.kr](http://www.changupnet.go.kr)) 참조

### 처리 절차

- 1인 창조기업패밀리카드 발급 후 비즈니스센터 이용



### 문의처

-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 센터 (붙임 참조)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437
- 전용 정보사이트 : [www.changupnet.go.kr](http://www.changupnet.go.kr)(창업 종합지원 사이트)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53

###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지정 현황

구 분	센터명	센터위치	연락처
일반(공공)	가산센터 (창업진흥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20층	02) 6299-5504
일반(공공)	역삼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525 KOCCA 빌딩 4층	02) 2016-4153
일반	서울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4가 260 드림트리빌딩 6층	02) 920-4394
일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92-5번지 인천 IT타워 301호	032) 250-2190
일반	강원 강릉시	강릉시 경강로 2326번길 4	033) 650-3394
일반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삼일오대로 203	055) 247-9387
일반	충청남도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44-19	041) 539-4548
일반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울천 제1 지방산업단지 내 6블럭	061) 729-2700
일반	전북 전주시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 전주정보영상진흥원 IT사업부	063) 281-4221
일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부산우체국 보험회관 4층	051) 464-0063
일반	서울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1길 52번지 은평구청 별관	02) 6015-9343
일반	서울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공릉길 138 스마트하우스 1203호	02) 944-6038
일반	서울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40번지 601호	070) 7727-4100~1
일반	경기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370번지 영빈빌딩 4층	031) 828-8877~8
일반	경기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동8번지 영동시장 2층	031) 241-1713~5
일반	부산 사하구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510-9번지 초이스빌딩 4층	051) 205-1014
일반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76-8	053) 784-8261

구분	센터명	센터위치	연락처
특화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36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032) 434-6800
특화	울산광역시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동문길 20-22(구, 웅촌 보건지소)	052) 277-1996
특화	대구시 중구	대구시 중구 공평동 83-3번지	053) 422-9081
특화	경북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280(문경시 농업기술센터 별관2층)	054) 552-2322
특화	광주광역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 20-2 무등빌딩 10층	062) 236-3261
특화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대전CT센터 2층	042) 864-5111
특화	용인디지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	031) 323-4689
특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 벤처타운 2층,7층	051) 746-0016
특화	제주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호	064) 720-3053~4
특화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1길 7	043) 210-0822
특화	로호넷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24-1 율촌빌딩 3층	02) 761-2550
특화	매트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8 KS빌딩 3층	070) 8662-4701
특화	비즈앤틱스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67-1 인우빌딩 5층	02) 1661-7854
특화	한성케이에스콘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470-5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1206	02) 6670-0021
특화	오피스허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186-15 소망빌딩 B1	02) 445-8005
특화	크로스비즈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112-3 삼한골든게이트빌딩 9층(지점)	051) 818-0211
특화	한국캐릭터협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번지(중앙로 5) 공영빌딩 3층(지점)	070) 8672-5682

※ 센터·창조카페 시설안내 등의 자세한 사항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 참조



## 3-4 1인 창조기업 사업화 지원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을 통한 사업화 역량 제고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보유지식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합니다.

### 지원 규모

'13년 예산 50억원(300여개 과제)

### 지원 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분야 예비창업자
  - \* 상시근로자 없이 대표자 1인이 운영하는 기업(단, 공동대표인 경우 4인까지 인정)으로서, 지식기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종(429개)에 한함

### 지원 내용

- 지원과제 : 1인 창조기업의 지식 또는 지식산출물의 마케팅 과제
- 지원조건 : 세부사업 중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 총 소요비용(계약금액)의 80%, 1,500만원 이내
  - \* 다만, 제품디자인, 브랜드 개발의 경우 비용의 80%, 2,000만원 한도 지원

분야	세부사업	보조금 한도
사업화 디자인 개발	국내/외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500만원
	시각 디자인 개발(포장 등)	500만원
	제품 디자인 mock-up 등	2,000만원
	브랜드(CI, BI) 개발 지원	2,000만원
On-line, 마케팅 지원	홈페이지(웹사이트) 제작지원	500만원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 지원 및 대행	200만원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 지원 및 대행	200만원
	SNS 커머스 구축 및 상품 등록 지원	400만원

분야	세부사업	보조금 한도
Off-line 마케팅 지원	국내/외 시장 조사(컨설팅)	400만원
	홍보 동영상 제작	300만원
	국내 전시회 참가	200만원
	국내외 매거진에 상품 홍보	500만원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광고	500만원

\* 사업화 디자인 개발 사업이 경우 수행기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요건 필요

\* 각 세부사업은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선정된 수행기관(지정형)을 통해 사업 추진(단, 전시회 참가 ·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광고 등은 개별기업이 임의로 수행기관을 선정(개방형))

### 신청 · 접수 '13.2월~3월

- 창업넷([www.changupnet.go.kr](http://www.changupnet.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접수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54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386 ([www.kised.or.kr](http://www.kised.or.kr))
- 사업관리시스템 : 아이디비즈뱅크([www.ideabiz.or.kr](http://www.ideabiz.or.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2013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3-5 참살이 업종 실무교육 지원

문화·취미·건강 등의 Well-Being 분야에 대한 실무교육 지원

기술·전문지식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 뷰티, 취미, 여행 및 건강 등의 분야에 대한 참살이 실습터 운영을 통해 실무교육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10개 참살이 실습터 운영(전체 예산 18억원)

- \* 참살이 지원업종(12년) : 네일 아티스트, 공예 디자이너, 커피 바리스타, 소물리에, 투어 플래너, 플라워 코디네이터, 플로리스트, 제과제빵, 복지건강 운동전문가, 웨딩 플래너, 두피 관리사, 푸드코디네이터 등

### 지원 대상

- 참살이 업종 관련 대학 전공자(졸업(예정)자), 초급 기술자(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등 경력자로서 창업 및 취업을 위해 실무 교육을 희망하는 자
  - \* 참살이 실습터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이론교육 및 실습 창업준비교육 등의 인원배정과 참살이 업종교육 프로그램은 실습터별로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참살이 업종 관련 이론 및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 교육

### 신청·접수 연중 수시

- 참살이 실습터별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생 모집
- 교육 희망지역 소재 참살이 실습터를 통해 신청·접수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80, 4552
- 창업진흥원 : 042-480-4386, 4389 (www.changupnet.go.kr)
- 스마트 앱 창작터 : 붙임 참조 (창업넷 홈페이지 : www.changupnet.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3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우수사례

#### 참살이 실습생 수료생 창업 사례

- 화승 한지공방 (공예 디자이너 분야 창업)
  - 공예디자인 과정을 수료 후 참살이 실습터를 통해 한지 제작기술을 향상시켜, 우수한 한지(韓紙)를 활용한 신소재 개발 및 개인별 맞춤형 교육운영을 통해 '한지공방'으로 창업



# 04

## 사업전환, 재창업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4-1 사업전환 지원사업 · 57
- 4-2 유·무형 자산거래 알선사업 · 59
- 4-3 중소기업 재기 지원사업 · 60
- 4-4 가업승계 지원 · 62



## 4-1 사업전환 지원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사업전환 지원

경쟁력이 떨어진 업종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용자 1,700억원

\* '12년 지원 현황 : 신청기업 316개사 중 30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5.4억원

**지원 대상**

- 사업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중소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업체
- 휴 · 폐업 중인 업체 등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 5억원 포함)</li> <li>•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li> <li>• 대출기간 : 시설(8년, 거치 3년 포함), 운전(5년, 거치 2년 포함)</li> </ul>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규모 및 비율 : 최대 1억원 미만, 규모에 따라 30~50%</li> <li>• 지원과제 : 신사업 모델 기획, 신제품 · 신시장 개척, 신사업 공정개선</li> </ul>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 소득세 (50%, 4년) 감면 등 세제지원</li> <li>• 고용유지(인력재배치, 1일 4만원 이내, 1년간 지원)등 고용안정지원</li> <li>• 중소기업 유휴자산 거래 지원(<a href="http://www.usedmall.or.kr">www.usedmall.or.kr</a>)</li> </ul>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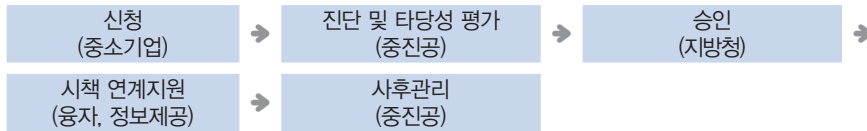
- 자금 지원 :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직접 신청(상시, 자금 소진시까지)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또는 사업전환지원사업 홈페이지(www.kerc.or.kr)에서 다운로드
-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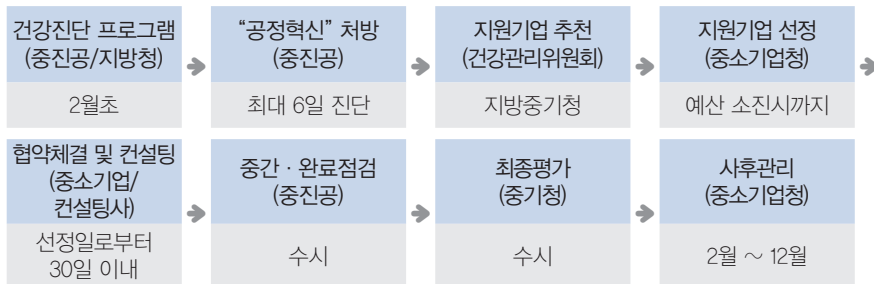
- 지방세 납세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 등을 현장 실태조사시 확인

### 처리 절차

#### ① 사업 전환계획



#### ② 컨설팅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8920
-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지원센터 : 02-769-6803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2013년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4-2 유·무형 자산거래 알선

온라인 통한 자산 직거래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보유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산거래 중개장터 사이트([www.usedmall.or.kr](http://www.usedmall.or.kr))를 통해 유휴설비, 공장, 원자재, 특허기술 등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유휴설비, 공장, 원자재, 특허기술 등 매매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 내용

- 유휴설비, 공장, 원자재, 특허기술 등 매각 및 매입 물건정보 제공
- 입찰정보 제공(자산관리공사, 신보, 기보 등 자산매각 정보)
- 유휴자산 매각시 필요한 전문가 정보 및 가격정보 제공 등

### 이용 방법

- 회원가입 : 유휴설비·공장의 매매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자산거래 중개장터 사이트([www.usedmall.or.kr](http://www.usedmall.or.kr))에서 회원가입
- 정보등록 : 매매를 원하는 유휴설비, 공장, 원자재, 특허기술에 대한 정보를 사이트에 등록 후 온라인 견적(인콰이어리)을 통한 가격협상
- 직접거래 : 자산거래 중개장터에서 검색 후 소유주와 매매계약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530
-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지원센터 : 02-769-6804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2013년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4-3 중소기업 재기(再起) 지원사업

재기교육, 전문가 진단

잠재 부실중소기업, 실패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전문가 진단(신속한 회생 및 회사정리 방향 제시), 재기교육을 제공해 주는 신규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지원대상은 '13.2월 사업 공고시 대상자 공고(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비즈인포 사이트)

### 지원 내용

- (교육) 심리치유와 자기성찰, 재창업 실무교육으로 운영

분 야	내 용	비 고
힐링캠프식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일정 : '13년 3회(잠정) (2월, 6월, 10월)</li> <li>• 교육대상 : 실패 중소기업 및 한계기업으로 재기에 의지가 강한 자</li> <li>• 교육과정 : 4주 교육(명상, 자기성찰, 심리치유, 1:1코칭 등)</li> <li>• 교육장소 : (재)재기중소기업개발원 죽도연수원(경남 통영)</li> <li>* 기타 세부사항은 (재)재기중소기업개발원 홈페이지 참조</li> </ul>	교육비 전액 무료

\* 재기교육 수료자에 대해 경영교육(재창업 실무교육) 실시 예정

- (전문가 진단) 부도(예정)기업, 잠재 부실중소기업 등 실패기업의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회사정리 필요여부 진단 및 회생방향과 정리 절차 제시
- \* 지원대상, 지원금액, 진행절차 등은 '13.2월 사업공고시 공고

### 신청·접수

'13.3월 예정

\* 단, 재기교육 중 힐링캠프 과정은 연중 수시접수 → 대상자 선정 → 2월, 6월, 10월 입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8938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 지원정책 / 창업/벤처
- (재)재기중소기업개발원 홈페이지([www.jaegi.org](http://www.jaegi.org)) : 051-316-405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4-4 가업승계 지원

창업 1세대와 2세 경영인과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후계자교육, 가업승계 인식개선, 가업승계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전체 예산 3.5억원

\* 2012년 지원사업 : 경영후계자 양성교육, 1·2세대 소통 프로그램 운영, 가업승계 안내서 발간, 장수기업 포상, 가업승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대상**

- 가업승계 예정기업의 경영자 및 경영후계자

**지원 내용**

-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 경영후계자 교육, 경영후계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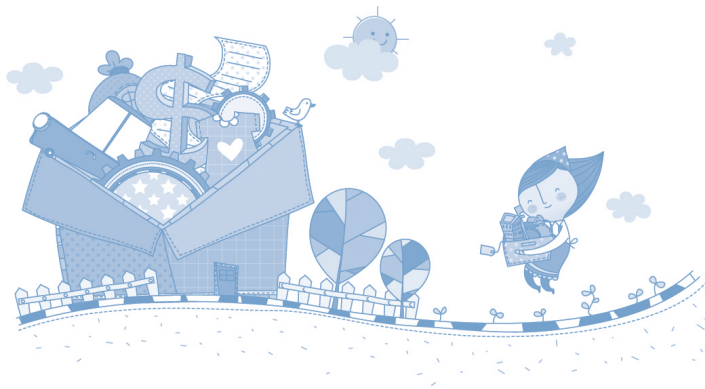
분 야	내 용
경영후계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업승계 최고경영자 워크숍 개최</li> <li>• 경영후계자 경영역량 강화교육 - 세제, 경영실무, 리더십 등 전문가 강의</li> </ul>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업승계 매뉴얼 발간</li> <li>•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li> </ul>
협력네트워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업승계 1·2세대 소통프로그램 운영</li> <li>• 경영후계자 클럽 운영 지원</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문장수기업 사례발굴 및 포상</li> <li>• 가업승계관련 온오프라인 상담</li> </ul>

### 신청 · 접수

- 신청방법 :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uccessbiz.or.kr](http://www.successbiz.or.kr)) 또는 직접 신청(Fax 02-786-2038)
- 신청기간
  - 후계자 양성교육 :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상담 신청, 경영후계자 클럽 가입 : 연중 수시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책과 : 042-481-3965
- 가업승계지원센터([www.successbiz.or.kr](http://www.successbiz.or.kr)) : 02-2124-3186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 2부. 금융 지원

S M A L L A N D M E D I U M B U S I N E S S A D M I N I S T R A T I O N

# 정부의 금융지원, 적극 활용하세요!

<b>5</b>	<b>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b>	<b>70</b>
	정부의 자금 지원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71
	신성장기반자금 ·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78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 기업경영 및 원부자재 구매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80
	긴급경영안정자금 · 원부자재구입 · 수출 ·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81
	투 · 용자 복합금융 ·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기업에 투자요소를 가미한 용자지원	83
<b>6</b>	<b>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제도</b>	<b>103</b>
	신용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104
	신용보험 · 납품대금 때일 염려없는 거래안전망	113

• 창업부터 사업전환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자금

자금명칭	자금신청 자격	지원규모 (억원)	용자한도
① 창업기업지원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력 5년 미만</li> <li>•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용자시점에 사업자등록증 필요)</li> </ul>	12,5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② 개발기술사업화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기술</li> <li>•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li> <li>•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술</li> </ul>	3,000	연간 20억원 (운전 5억원)
③ 신성장기반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력 5년 이상</li> <li>• 시설투자 예정기업 등</li> </ul>	6,35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④ 긴급경영안정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li> <li>• 재해 피해 중소기업</li> <li>• 수출 중소기업</li> </ul>	950	연간 10억원
⑤ 사업전환지원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li> <li>•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li> </ul>	1,7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⑥ 투·용자 복합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성장 유망 중소기업(전환사채 인수 또는 영업이익 수취)</li> </ul>	1,500	연간 30억원 (운전 10억원)
⑦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자금 필요기업</li> </ul>	5,000	연간 5억원
⑧ 소상공인지원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종업원 10인 미만)</li> </ul>	7,500	1억원 (소상공인특화 2억원)

용자기간	금리(변동) (*13. 1/4분기 기준)	용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자금 3년 거치 8년 (신용 : 2년 거치 5년)</li> <li>• 운전자금 2년 거치 5년 (신용 : 1년 거치 3년)</li> </ul>	정책자금 기준금리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구입, 정보화설비 등</li> <li>-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li> <li>- 사업장 확보자금(1회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자금 3년 거치 8년 (신용 : 2년 거치 5년)</li> <li>• 운전자금 2년 거치 5년</li> </ul>	정책자금 기준금리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구입 등</li> <li>-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 비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자금 3년 거치 8년 (신용 : 2년 거치 5년)</li> <li>• 운전자금 2년 거치 5년 (신용 : 1년 거치 3년)</li> </ul>	정책자금 기준금리 +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설비, 시험검사 구입, 정보화 설비 등</li> <li>-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 되는 자금</li> <li>-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거치 5년 (신용 : 1년 거치 3년) (수출금융 : 180일)</li> </ul>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li> <li>- 재해피해 복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자금 3년 거치 8년 (신용 : 2년 거치 5년)</li> <li>• 운전자금 2년 거치 5년 (신용 : 1년 거치 3년)</li> </ul>	정책자금 기준금리 -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설비, 시험검사 구입, 정보화 설비 등</li> <li>- 사업장 건축자금, 임차보증금</li> <li>-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 소요 자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거치 5년</li> </ul>	초기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구입 등</li> <li>-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 비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거치 만기 일시상환</li> </ul>	은행 금리 -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부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자금 1년 거치 4년</li> </ul>	정책자금 기준금리 +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li> </ul>



###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금융지원 Q&A

Q. 2009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A. 창업하신지 5년 미만이라면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지난해는 업체당 평균 4억원 정도가 지원됐고, 연간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식약청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A. 특허 기술이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기계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Q. 지난 92년에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A. 5년 이상 된 기업이 생산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입니다.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도입, 기계구입, 사업장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Q.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 자금이 필요합니다.

A.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 자금은 시설자금은 지원되지 않고,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도로만 지원됩니다.

Q. 98년부터 컴퓨터 프레스와 판금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2005년 이후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네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여 전기온풍기 업종 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술발전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경우 업종추가, 업종전환, 품목추가 시 '사업전환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Q. 지난해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자금은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 사업성·기술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 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는 창업·개발기술사업화·장기시설투자 지원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책자금은 신청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총 대출잔액 기준으로 수도권 45억원, 비수도권 50억원 이내로 대출한도 관리를 합니다. 또한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신청일 기준 동일기업당 지원횟수를 최근 3년 이내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 자금 및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 총 지원횟수에 따른 중복지원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Q.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용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후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이 이루어지며,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주거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용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05

##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 5-0 정부의 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71
  - 5-1 신성장기반자금 · 78
  - 5-2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 80
  - 5-3 긴급경영안정자금 · 81
  - 5-4 투·융자 복합금융 · 83



## 5-0 정부의 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소공인특화자금을 제외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8개 자금(소공인특화자금을 제외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용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용자제의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됨
  - \*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은 우선 지원
  - 녹색 · 신성장동력산업(별표 3, 3-1), 뿌리산업(별표 4), 부품 · 소재산업(별표 5), 지역전략 · 연고산업(별표 6), 지식서비스산업(별표 7), 문화 콘텐츠산업(별표 8), 바이오산업(별표 9),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 10)

### 용자 한도

50억원까지(수도권은 45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

- \* 잔액기준 한도 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용자 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자금별로 -0.3%p ~ +0.6%p 가감.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해중소기업은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고정금리 적용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http://www.sbc.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금리 우대(최대 1%p, 1년간 한시 적용)

### 응자 방식

- 중진공에서 응자신청·접수, 응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로 대출
  - \*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서 담보는 취급 제한(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공고 시행전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제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
-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중진공에서 응자신청·접수, 응자대상 결정 후 금융회사(대출취급은행)에서 최종 심사 후 대출

### 응자 절차

- ①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 (정책자금 응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응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www.sbc.or.kr](http://www.sbc.or.kr)) 또는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
  - \* 중진공 직접대출 시설자금(사업장 확보, 중고설비, 외국 제작설비 제외) 10억원이상 신청기업은 전자거래시스템([sbc.mp1.co.kr](http://sbc.mp1.co.kr))을 통하여 공개견적을 의뢰(기업평가 시 공개 견적서 및 입찰확인서 확인)
- ②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및 소공인특화자금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만 활용
  -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③ 용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여부 결정
- ④ 자금대출 : 용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용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 중진공 직접대출로 용자하는 시설자금은 전자거래 사이트를 통한 전자거래 의무화(단, 사업장 건축 등은 예외)
- ⑤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 대출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 청년전용창업자금(용자상환금 조정형)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 사항을 점검

### 용자 제한 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단, 세금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분납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 허용)
-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최우수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10억원 미만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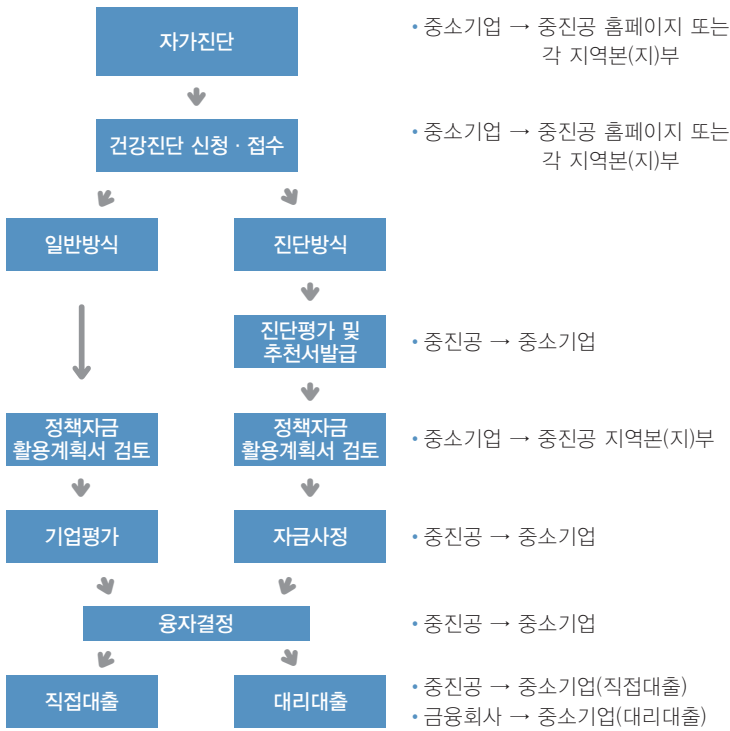
- ⑦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재해 피해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⑧ 용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⑨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 ⑩ 업력 5년 이상 기업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대출잔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지원기업).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 용자 시기

- 2013.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사업별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다만,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건강진단 신청기업 : 매월 1일 ~ 1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매월 1일 ~ 5일

- 재창업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를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용자 절차도** \*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별도의 용자절차 적용(창업기업지원자금 '용자방식' 참조)

**신청 · 접수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	전화	지역본(지)부	전화	지역본(지)부	전화
서울 (목동)	02) 6678-4127, 37	충북 (청주시)	043) 230-6811~2	전남 (무안군)	061) 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 2156-2222~3	충북북부 (충주시)	043) 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 724-1056
서울북부 (여의도)	02) 769-6816, 26	전북 (전주시)	063) 210-9900	부산 (사상구)	051) 630-7400
인천 (연수구)	032) 450-0521~3	전북서부 (군산시)	063) 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 712-9670
인천서부 (연수구)	032) 450-0560	대구 (대구시)	053) 601-5300	울산 (울산시)	052) 703-1100
경기 (수원시)	031) 259-7921~5	경북 (구미시)	054) 476-9321~9	경남 (창원시)	055) 212-1350
경기동부 (성남시)	031) 628-6888	경북동부 (포항시)	054) 223-2047~8	경남동부 (김해시)	055) 310-6600
경기서부 (시흥시)	031) 496-1083~4	경북남부 (경산시)	053) 212-3300~01	경남서부 (진주시)	055) 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 920-6700	강원 (춘천시)	033) 259-7600	제주 (제주시)	064) 751-2053~7
대전 (대전시)	042) 866-0114, 23	강원영동 (강릉시)	033) 655-8870		
충남 (천안시)	041) 621-3687	광주 (광주시)	062) 600-3000		



### 용어설명

- **용자잔액**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 **중소기업창업및진흥자금**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 해당분기의 전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진채(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변동금리**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 **용자제한 부채비율**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지원 계획(중소기업청 공고)에서 최근연도들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장 평균한 2~3배의 값
-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직접대출은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 **거치기간**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5-1 신성장기반자금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생산시설 개량 또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초기가동비 등을 지원합니다.

**용자 규모** 6,350억원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1,810개사 중 1,452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5.9억원

### 지원대상

-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 \* 단, 업력 5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지원
  -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제외

###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및 공정설치 등 필요자금
  - 안정성평가 및 유통·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기업 또는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이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 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구매) 허용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30% 이내)
- \* 혁신형기업(별표11),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용자 가능

### ● 융자 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신용대출인 경우 5년내(거치기간 2년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신용대출인 경우 3년내(거치기간 1년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 융자 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업체가 선택)



## 5-2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기업경영 및 원부자재구매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기업경영 및 생산·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

**용자 규모** 5,000억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용자 범위**

- 제품생산 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 비용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이상 기업에 한함)

**용자 조건**

- 대출금리 : 금융회사(은행)에서 결정한 대출금리에 연리 2.0~3.0%p를 보전한 금리
  - \* 혁신형 중소기업(별표11)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3%p, 그 외 기업은 2.0%p 이차보전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①전기 대비 10%이상 고용증가기업, ②국가 또는 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③고용확대로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
- 대출기간 : 3년 이내(만기 일시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5억원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대출취급은행에서 대출(자금신청·접수 시 대출취급은행의 사전상담 확인서 제출)



### 5-3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 ·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수출중소기업 · 재해피해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등의 생산 및 판매 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용자 규모** 950억원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1,727개사 중 1,376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0억원

**지원 대상**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애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수출 중소기업
  -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용자 지원 제외(단, 해외 조달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용자 범위**

구 분	내 용
긴급경영 안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li> <li>•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li> <li>•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li> <li>•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li> <li>•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또는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li> <li>•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li> <li>•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li> <li>•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li> </ul>

구 분	내 용
긴급경영 안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li> <li>·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li> <li>· 기술유출 피해기업</li> <li>·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li> <li>*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lt;1.공통사항&gt; 마. 융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li> </ul>
수출금융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li> </ul>

### 용자 조건

####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신용대출인 경우 3년내(거치기간 1년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이를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 상환.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 수출실적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용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 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5-4 투 · 융자 복합금융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기업에 대해 투자요소를 가미하여 융자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지원합니다.

**융자 규모** 1,500억원

**지원 대상**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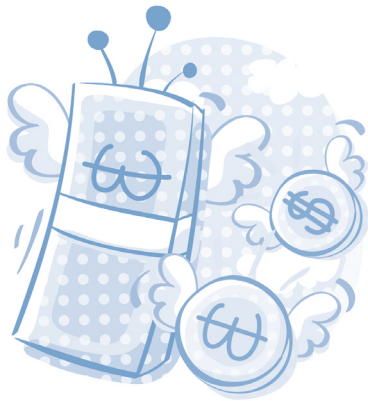
**융자 조건**

- 대출금리
  - (이익공유형 대출)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구 분	내 용	비 고
고정 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금리에서 2%p를 차감(대출기간동안 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력 5년 미만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li> <li>■ 업력 5년 이상(시설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li> <li>■ 업력 5년 이상(운전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li> </ul>
이익연동 이자	영업이익 × 3%(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당해연도 면제)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회차를 부과

- (성장공유형 대출)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단, 성장공유형 대출 중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이익공유형 대출)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융자 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별표 1]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제조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
	451	자동차 판매업
도매 및 소매업	452중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중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중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중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서비스업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익업	731	수익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9) 중 콜센터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제외)
	759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제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604)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제외)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제외)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업(55111) 중 관광숙박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69110),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허용

\* 사업전환자금의 경우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허용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 산업단체(94110), '나들가게'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46102) 중 주류중개업이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

\* 뷰티산업(두발미용업(96112), 피부미용업(96113), 기타미용업(96119))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허용

\* 재창업자금의 경우 건설업(41~42), 자동차판매업(451)은 지원대상에 허용

[별표 2]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사업전환융자
1	A01(농업)	132.1	396.2	792.3
2	A03(어업)	126.1	378.3	756.6
3	B(광업)	138.3	414.9	829.9
4	C(제조업-중소기업)	170.3	500.0	1,000.0
5	C101-4(고기,과실,채소및유지가공업)	175.4	500.0	1,000.0
6	C105(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	47.8	200.0	400.0
7	C106,8(곡물가공품,전분제품,사료및조제식품)	132.5	397.5	795.1
8	C107(기타식품)	94.8	284.5	569.0
9	C111(알콜음료)	101.2	303.6	607.3
10	C112(비알콜음료및얼음)	80.2	240.6	481.3
11	C131(방적및가공사)	105.5	316.5	632.9
12	C132(직물직조및직물제품)	161.3	484.0	968.0
13	C133,4,9(기타섬유제품)	122.3	366.9	733.8
14	C14(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중소기업)	185.5	500.0	1,000.0
15	C15(가죽,가방및신발-중소기업)	168.1	500.0	1,000.0
16	C16(목재및나무제품(가구제외)-중소기업)	184.9	500.0	1,000.0
17	C17(펄프,종이및종이제품-중소기업)	146.0	438.0	876.1
18	C18(인쇄및기록매체복제품-중소기업)	216.4	500.0	1,000.0
19	C19(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중소기업)	131.0	393.0	786.0
20	C201(기초화학물질)	75.9	227.7	455.4
21	C202(비료및질소화합물)	123.5	370.4	740.9
22	C203(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	90.7	272.0	544.0
23	C204(기타화학제품)	83.1	249.4	498.8
24	C205(화학섬유)	146.0	438.1	876.2
25	C21(의료용물질및의약품-중소기업)	89.5	268.4	536.8
26	C221(고무제품)	118.0	354.1	708.2
27	C222(플라스틱제품)	240.3	500.0	1,000.0
28	C231(유리및유리제품)	39.3	200.0	400.0
29	C232(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	91.0	273.1	546.2
30	C233(시멘트,석회,플라스터및그제품)	132.8	398.3	796.6
31	C239(기타비금속광물제품)	146.7	440.1	880.2
32	C241(1차철강)	82.4	247.1	494.2
33	C242(1차비철금속)	98.7	296.2	592.4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사업전환율
34	C243(금속주조업)	199.9	500.0	1,000.0
35	C25(금속가공제품(기계및가구제외)-중소기업)	194.4	500.0	1,000.0
36	C261,2(반도체및전자부품)	66.8	200.3	400.6
37	C263(컴퓨터및주변장치)	123.9	371.7	743.5
38	C264(통신및방송장비)	146.9	440.6	881.2
39	C265,6(영상및음향기기,마그네틱및광학매체)	158.0	474.0	948.0
40	C27(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중소기업)	113.9	341.6	683.3
41	C281(전동기,발전기및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130.0	390.1	780.2
42	C282,4,9(기타전기장비)	107.4	322.2	644.4
43	C283(절연선및케이블)	266.4	500.0	1,000.0
44	C285(가정용기기)	134.4	403.2	806.5
45	C291(일반목적용기계)	155.9	467.8	935.6
46	C292(특수목적용기계)	148.6	445.8	891.6
47	C301(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	76.6	229.9	459.8
48	C302,3(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자동차부품)	137.3	412.0	823.9
49	C311(선박및보트건조업)	243.9	500.0	1,000.0
50	C312,3,9(철도,항공기및그외기타운송장비)	197.8	500.0	1,000.0
51	C32(가구-중소기업)	178.8	500.0	1,000.0
52	C33(기타제품제조업-중소기업)	136.6	409.8	819.5
53	D351(전기업)	101.0	302.9	605.8
54	D352,3(가스,증기·냉운수및공기조절공급)	303.8	500.0	1,000.0
55	E(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중소기업)	145.0	435.0	870.1
56	E37E381,2(하수,폐수및분뇨처리,폐기수집운반·처리업)	122.9	368.7	737.5
57	E383(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225.9	500.0	1,000.0
58	F41(종합건설업)	205.3	500.0	1,000.0
59	F42(전문직별공사업)	79.1	237.3	474.7
60	G45(자동차및부품판매업)	236.2	500.0	1,000.0
61	G46(도매및상품중개업)	261.1	500.0	1,000.0
62	G47111(백화점)	92.1	276.2	552.4
63	G4711-9(종합소매업(백화점제외))	86.5	259.5	519.0
64	G472-9(일반소매업)	147.7	443.1	886.1
65	G4791(통신판매업)	109.3	327.8	655.5
66	H49(육상운송업(철도운송업제외))	121.1	363.2	726.4
67	H491(철도운송업)	94.3	283.0	565.9
68	H492(육상여객운송업)	387.5	500.0	1,000.0
69	H493,4(도로화물,소화물전문운송업)	140.8	422.5	844.9

번호	업종(KSIC-9)	평균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사업전환율자
70	H50(수상운송업)	339.7	500.0	1,000.0
71	H51(항공운송업)	494.0	500.0	1,000.0
72	H52(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119.6	358.7	717.4
73	I55(숙박업)	95.1	285.2	570.4
74	I56(음식점및주점업)	286.9	500.0	1,000.0
75	J581(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101.0	303.0	606.0
76	J582(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105.7	317.2	634.4
77	J59(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249.1	500.0	1,000.0
78	J60(방송업)	51.4	200.0	400.0
79	J61(통신업)	108.3	324.8	649.5
80	J62(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97.2	291.7	583.4
81	J63(정보서비스업)	74.5	223.4	446.9
82	L68(부동산업)	644.6	500.0	1,000.0
83	L69(임대업;부동산제외)	315.0	500.0	1,000.0
84	M71(전문서비스업)	219.2	500.0	1,000.0
85	M711,2(법무,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업)	122.1	366.2	732.3
86	M713(광고업)	208.5	500.0	1,000.0
87	M714,7153(기타전문서비스업)	249.6	500.0	1,000.0
88	M72(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	161.1	483.2	966.5
89	M73(기타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83.1	500.0	1,000.0
90	N74(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90.4	271.3	542.5
91	N751(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165.1	495.3	990.7
92	N752(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123.4	370.2	740.3
93	N753(경비,경호및탐정업)	69.5	208.6	417.3
94	N759(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163.9	491.8	983.7
95	P(교육서비스업-중소기업)	301.8	500.0	1,000.0
96	R(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중소기업)	1,169.0	500.0	1,000.0
97	S95(수리업)	239.4	500.0	1,000.0
98	S96(기타개인서비스업)	11,766.7	500.0	1,000.0
99	기타산업	-	500.0	1,000.0

-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별표 3]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구분	신성장동력	세부분류
녹색 기술산업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농산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 청정석탄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원전플랜트
	고도 물처리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친환경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기술,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지속가능 물환경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기술
	LED응용	LED응용
	그린수송 시스템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첨단철도
	첨단 그린도시	U-City S/W, U-City IT H/W, U-City IT 융합 H/W, ITS, GIS, 그린홈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 융합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방송통신미디어
	IT융합 시스템	IT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로봇응용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onic Liquid(IL) 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 분야, 기능성 나노 필름 분야, 나노융합 바이오퍼먼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해당사항 없음)
	콘텐츠·소프트웨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MICE, 생태관광

-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 ▶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은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및 녹색·신성장동력 산업 기반 기술 관련 표준산업분류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별표 3-1]

한국형 신제조기반 24개 전략기술(녹색·신성장동력산업 기반 기술)

- 녹색·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기술(한국형 新제조기반 24개 기술)에 해당 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신제조기반기술		관련 산업(제품/부품/소재)
		세부 연관기술	
사출금형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마이크로 성형기술, 대면적 성형기술		▷가전(케이스), 자동차(내장부품, 계기판부품), 휴대폰(케이스) 등
프레스금형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립기술, fine blanking 및 forming die 제작기술, 난성형재 성형기술		▷자동차(차체 및 샤시부품), 휴대폰(커넥터), 반도체(IC배선부품) 각종 기능부품 등
특수금형	다색다중사출성형기술, blow 성형기술, 플라스틱 메탈 일체화 성형기술, IMA(In Mold Assy) 성형기술		▷휴대폰(2색컬러케이스), 융복합 제조, 디스플레이(LCD초슬림필터), 의약 및 식품산업(용기류), 카메라(렌즈 및 광학부품) 등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기술, 마그네슘 다이캐스팅기술		▷자동차(엔진부품, 미션, 크랭크 케이스), 휴대폰(케이스), 정보통신(컴퓨터 케이스) 등
사형주조	주철, 주강 사형주조기술, 비철사형주조 기술		▷자동차(실린더 블록), 조선(대형 구조부품) 등
특수주조	금형주조기술, 정밀주조기술		▷정밀기계(정밀부품) 등
단조	열·냉·온간 단조기술, 복합 단조기술, 부품 일체화 단조기술		▷자동차(조향장치, 엔진관련부품, 기어류), 자전거(변속기, BB), 발전시스템(축류품, 유압밸브부품, 압축기용 부품), 히프펌프(열교환기) 등
압출·인발	형상재 압출/인발 기술, 정수압 압출기술, 가변단면 압출/인발 기술		▷자동차(차체/샤시부품, 볼트류, 범퍼류), 히프펌프(열교환기용부품), 자전거(프레임, 포크, 핸들) 등
전자접합	water Level Packaging 기술, 전자모듈 제조기술, 무연솔더링 실장기술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휴대폰(IC packaging) 등
용접	레이저 용접기술, 아크 용접기술, 저항용접기술, 철강용접기술, 비철용접기술		▷조선(블록부품), 자동차(차체 및 샤시부품), 건설기계(굴삭기 붐, 암 부품), 건설(교량, 철재 구조물), 중공업(플랜트), 자전거 프레임 등
용접·접합재료 및 시스템	용접재료기술, 전자접합 소재기술, 용접전원기술, 접합시스템기술		▷조선(용접재료, 용접전원, 용접와이어 피더), 자동차(용접전원 및 접착재료, 전자(패키징소재 및 장비) 등
열처리	질화기술, 침탄기술, 템퍼링기술		▷자동차(기어/허브/범퍼/클러치/필러), 건설기계(실린더/부싱/축), 산업기계(사출금형/프레스금형), 에너지(베어링) 등

	신제조기반기술		관련 산업(제품/부품/소재)
		세부 연관기술	
건식코팅	DLC 기술, 경질코팅기술		▷자동차(실린더/피스톤링), 산업기계(렌즈금형/절삭공구), 휴대폰(외장) 건설기계(내마모부품) 등
도금	일반전기도금, 무전해도금,화성처리기술, 양극산화기술		▷자동차(실린더/휠/배관), 반도체(배선/커넥터), 철강(연주몰드/구조물), 정밀기계(미소부품), 태양전지(전극/흡수판) 등
PCB 표면처리	전기도금기술, 무전해도금기술, 솔더도금기술		▷휴대폰(연성기판), 디스플레이(COG), 전기전자(FCC), 정보통신(COF), 가전(회로기판)
재생가능 연료·소재 생산	바이오원료전처리기술, 연료 전지분리막기술,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기술		■ 대체고급연료(윤활유, 항공유), 점접착제/도료/코팅제, 화학첨가제
고기능성 고분자 소재제조	나노탄소소재기술, 나노필름기술, 검지용소재기술, 식품첨가제기술		■ IT/가전 기판, 디스플레이 필름, 반도체실장, 태양전지 전극 ■ 자동차/조선/항공 내장재, 섬유, 패키징(포장재, 용기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소재
정밀화학 제품 합성분리	나노복합소재 추출분리기술, 그린에너지소재 막분리 및 상분리기술, 신소재합성 미반응물제거		■ 의약/식품, 정밀화학제품(염료, 화장품 등), 화학플랜트(결정화/추출/증류장치)
발효생산	균주개량기술, 바이오연료전환기술, 모노머 생물합성기술, 고도발효기술		■ 기능성 식품, 바이오화학제품, 모노머, 바이오연료
발효장치	바이오가스정제기술, 발효산물분리기술, 금속성분회수기술, 발효 약취제거기술		■ 정밀분리막시스템, GMP/HACCP 정제장치, 결정화 분리장치
섬유 신소재	섬유방사/방적기술, 제펄직/부직포화 기술, 섬유복합재료기술		■ 화섬원사, 복합방적사,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초경량 직면물, 인공피혁, 3차원 스페이서 직물, 자동차내장재등
섬유 신가공	섬유표면가공기술, 섬유복합가공기술		■ 친환경염색가공, 투습방수 섬유, 자외선 차단섬유, 온도조절섬유, 기능성 염조제 등
패키징	패키징 소재기술, 인디케이터 기술, 맞춤형 설계기술, 패키징 공정 기술		■ 편의제공 패키징(품질, 유통, 제조 포함), 품질 인디케이터, 온도시간 인디케이터, 가스 농도 인디케이터, 가스투과 제어 패키징, 위조방지 패키징

[별표 4]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 (제 2조 관련)

품목코드	산업명	품목코드	산업명
주조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9223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용접접합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금형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열처리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표면처리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5922	도금업	3012	자동차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소성가공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별표 4-1]

## 뿌리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제 3조 관련)로, 뿌리산업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 되는 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주조 부문	사형주조	열처리 부문	전경화열처리
	금형주조		국부열처리
	다이캐스팅		침탄열처리
	정밀주조		질화열처리
	연속주조		복합열처리
	저압주조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소실모형 주조		전기도금
	특수주조		무전해도금
금형 부문	사출성형금형	표면처리 부문	양극산화
	다색다중성형금형		화성처리
	블로우성형금형		도장
	복합성형금형		표면경화
	프레스성형금형		스퍼터링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화학기상증착
	파인블랭킹금형		아크용접
소성가공 부문	단조	용접접합 부문	저항용접
	압연		특수용접
	압출		브레이징
	판재성형		칩레벨 접합
	특수성형		보드레벨 접합
			구조용 접합

\*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별표 5]

부품·소재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품·소재”관련 산업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섬유제품 제조업(17)	섬유방적사(천연원료를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 사등 가공사에 한한다)	1710
	섬유직물(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에 한한다)	1720
	염색·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을 제외한다)	1740
	부직포 및 펠트	17993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	17994 17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2112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에 한한다)	24111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2411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24129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2413
	합성고무	2415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24152
	기초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재	2421
	농약 원제 및 중간체	24312
	공업용 도료 및 관련제품	24321
	공업용 인쇄잉크	24323
	계면활성제	24331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24342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제품	24392
	접착제 및 젤라틴	24393
공업용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24399	
화학섬유	244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타이어 및 튜브	25111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25191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25199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25211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25212
	극세사 합성피혁	25213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2524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6)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mm 이하에 한한다)	26111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26121
	판유리 가공품	26122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26129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26213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에 한한다)	26221
	기능성 석회(형상 및 물성제어된 제품에 한한다)	26312
	연마휠	26991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mu$ m 이하에 한한다)	26992
	공업용 내화 단열재	26993
	탄소섬유	26994
복합소재 비금속광물	26999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제1차 금속산업(27)	합금철	27112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을 제외한다)	27121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을 제외한다)	27122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을 제외한다)	27123
	주조한 관연결류	27131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을 제외한다)	27132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강판을 제외한다)	27191
	그 외 기타 철강제품	27199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2721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722
	철강 주조제품(회주철을 제외한다)	2731
	비철금속 주조제품	2732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증양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28122
핵반응기 부품		28131
증기발생기 부품		28132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를 제외한다)		2891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을 제외한다)		
통 및 호환성공구		2892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28934
금속스프링		28941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닳,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28943 2899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펌프 및 압축기	2912
	탭, 밸브 및 유사장치	29130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2914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29150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2916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29171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29172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29173
	기체여과기	29174
	액체여과기	29175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29176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부품	2919
	가공공작기계 부품	292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293
	무기 부품	29400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 부품	29511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	29519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295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30)	컴퓨터 기억장치	30012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을 제외한다)	30013
	복사기 부품	30021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발전기세트를 제외한다)	311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312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31301
	절연 광섬유케이블	31302
	일차전지(리튬전지에 한한다)	31401
	축전지	31402
	전구 및 램프 부품	31510
	일반 조명장치 부품	31521
	내연기관용 및 차량용 전기장치	319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31991
	자석 및 자석제품	3199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31993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부품	31994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기장비 부품	31999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품	321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322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3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의료용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를 제외한다)	331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	332
	광섬유 및 광학요소	33321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부품	33322
	기타 광학기기 부품	33329
시계 부품	334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자동차용 엔진	34110
	자동차 부품	34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선박 구성부분품	35114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장치물 부품	35202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35310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353
	모터사이클 부품	35910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부품	35920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36)	운송장비용 의자	36111

\* 품목코드는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임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별표 6]

##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구산업

지역	전략산업	연구산업
부산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관광컨벤션산업, 영상·IT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신발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등
대구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섬유산업, 생물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산업 등
대전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공예산업, 동구포도주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안경산업 등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문화산업	김치산업, 한복패션산업, 화훼·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 등
울산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울산농산물, 울산축산업, 산악·산업·해양관광산업 등
강원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약초산업,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등
충북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자,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바이오농업,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묘목, 옷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태양광산업, 보은문화산업 등
충남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 바이오산업	금산인삼산업, 보령머드산업, 공주자카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서산육쪽마늘일류화사업, 예산사관가공·유통산업 등
전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 남원울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허브산업, 진안홍삼·한방산업, 고창복분자산업, 임실유기공업 등
전남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삼강청자)산업, 전통애견(진도개) 산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차류가공업, 과일,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경북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 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경남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SI&C산업, 석재가공업, 축산사료유통산업, 하동녹차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남해마늘가공업, 통영진주가공업, 창녕양파산업 등
제주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로 정하는 지역산업도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구산업에 포함

[별표 7]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계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별표 8]

##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출 판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 공연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게 임	58211	온라인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 · 비디오 · 애니메이션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 · 광고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작성업	
71399	그외 기타 광고업	
캐 릭 터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0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별표 9]

바이오산업

품목코드	해당업종
C10	식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299	그외 기타 축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약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412	농약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바이오산업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바이오산업 :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로 가공·생산하는 산업

## [별표 10]

##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구분	해당 업종
융복합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농공상 융합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li> <li>-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li> </ul> </li> <li>②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융복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li> </ul> </li> </ul>
프랜차이즈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가맹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한 업체(가맹본부)에 한함</li> <li>* 가맹사업 해당 요건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지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li> </ul>

\*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의 주된 업종이 <별표1> 정책자금 융자제의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별표 11]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분	지원 대상
기술혁신 분야	○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 Inno-biz 선정 기업
	○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개발 성공 기업
	○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 등록기업
	○ 벤처기업
	○ 녹색기술 인증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경영혁신 분야	○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컨설팅 추진기업으로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 통합 연계형 전문기업(ICMS) 컨소시엄 참여기업
	○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참여기업
	○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제외)
	○ 우수 Green-Biz 선정 기업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채용협약 체결)
	○ 우수 물류기업(국토해양부 장관 인증)
	○ 연수인증기업(중소기업청 인증)
	○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농림수산식품부)
○ 가족친화인증기업	

# 06

##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6-1 신용보증 · 104

6-2 신용보험 · 113



## 6-1 신용보증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신용보증기관(아래 3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공통사항	한도 30억원, 예외 70억원 (시설자금 100억원) 보증료 0.5~3.0% 보증비율 50~100% (창업 : 수출, 일반기업 위주)	한도 30억원, 예외 70억원 (시설자금 100억원) 보증료 0.5~3.0% 보증비율 85~100% (기술창업, 기술혁신형 벤처·이노비즈기업위주)	한도 8억원 보증료 0.5~2.0% 보증비율 50~100%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위주)
창업기업	① 창업기업보증	①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② 청년창업특례보증	⑧ 청년창업 특례보증
시설투자기업	② 시설자금보증	③ 시설자금 특례보증	⑥ 금융회사 협약보증
수출중소기업	③ 수출기업보증	⑤ 기업일반자금보증	④ 일자리 창출기업 및 미래산업에 대한 특례보증
녹색성장기업	④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④ GEEN HI-TECH 특례보증	
일반기업	⑥ 기업일반자금보증	⑤ 기업일반자금보증 ⑥ 문화산업완성보증	
기술혁신형기업 (벤처·이노비즈)		⑦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⑧ R&D 평가 특례보증	④ 일자리 창출기업 및 미래산업에 대한 특례보증
소상공인 (10인 미만)	⑤ 기업일반자금보증	⑤ 기업일반자금보증	① 일반보증 ② 햇살론 ③ 나들가게특례보증 ④ 일자리 창출기업 및 미래산업에 대한 특례보증 ⑤ 금융기관 협약보증 ⑥ 희망드림론 ⑦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⑧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저신용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② 햇살론
저신용 개인			② 햇살론

## 신용보증기금 보증상품

## ① 창업기업보증

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Start-Up)	청년창업특례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보증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으로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기업에 보증지원</li> <li>• 청년 창업자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 이상 장기로 보증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비율 90 ~ 100%</li> <li>• 기업 당 5억원 이내, 보증료 0.6 ~ 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비율 95 ~ 100%</li> <li>• 기업 당 3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보증료 0.3%</li> </ul>

## ② 시설자금보증

- 사업용 공장, 고정적인 설비투자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 기업 당 소요자금 범위 내(최고 100억원), 보증료 최고 0.2%p 할인

## ③ 수출기업보증

-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기타 수출계약서 및 실적을 바탕으로 지원
- 지원한도는 최고 70억원, 보증료 0.1%p 할인

## ④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상 녹색인증기업 및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 지원한도는 최고 70억원, 보증료 0.2~0.3%p 할인

## ⑤ 기업일반자금보증

- 재료의 구매, 생산, 판매활동 등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보증기간은 단기와 장기(3년 이상 장기분할해지보증)로 운영
  - \* <장기분할해지보증> 단기위주의 기업대출금을 장기(3년 이상)로 전환을 유도하고 기업의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상환(보증해지)토록 하는 제도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 ①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으로서 아래 해당기업에 보증  
단,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업력제한 없음
  -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산업, 그린에너지산업 영위기업
  - (지식문화)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 (이공계 헬린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이공계 고등학교·대학(원) 졸업자로서 만 45세 이하인 기업
  - (40·50 창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40~만 55세 이하인 기업
  - (1인 창조기업)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지식·기술,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상시근로자 없이 영위하는 기업
  - (첨단·뿌리산업)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 각 대상기업 별 보증비율 및 보증료 등 우대

### ② 청년창업 특례보증

- 창업후 3년 이내로 대표자가 만 20~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에 보증
- 기업 당 보증금액 3억원 이내에서 보증비율 및 보증료 등 우대

### ③ 시설자금 특례보증

-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시설자금을 보증
- 보증비율 및 전결권 완화 등 우대

### ④ GREEN HI-TECH 특례보증

- 녹색관련 인증 보유기업 및 녹색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보증지원
- 금융회사의 녹색예금과 연계된 녹색대출 및 기술개발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 보증심사 완화 및 보증료 등 우대

### ⑤ 기업일반자금보증(기술보증)

- 담보력이 미약한 기술 중소기업의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등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

- 기술보증 대상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주요 보증상품

- (무역금융)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 등을 위한 금융회사의 무역금융에 대하여 보증
- (구매자금융)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 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구매자금융방식으로 전환, 납품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보증
- (전자상거래)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⑥ 문화산업완성보증

- 문화콘텐츠 제작사(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가 유통계약(선판매계약 또는 배급계약 등)이 체결된 영화, 게임 등 프로젝트성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에서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보증
- 지원대상 문화콘텐츠는 '영화, 게임, 방송(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공연'(9개 분야)
- 지원한도는 기업당 50억원 이내

- ⑦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 특허기술의 사업화 이전단계의 우수한 기술을 조기 발굴하여 사업화 촉진하기 위한 보증(협약에 의해 특허청에서 기술평가료 지원)
- 대상기업은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 지원한도는 기술가치 평가금액으로서 기업 당 10억원 이내

- ⑧ R&D 평가 특례보증

- R&D 단계별(개발 - 사업화준비 - 사업화) 체계적인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사업화연계기술개발)금융 지원제도
- 개발단계 및 사업화 준비단계(보증료 0.3% 감면, 부분연대보증제도 운용), 사업화단계(보증료 0.3%p 감면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상품

### ① 일반보증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신용 1~6등급의 등록사업자
- 보증규모 : 7.2조원('13년 신규공급)
- 대출금액 : 1인당 최대 8억원 이내 보증대출
- 시행기간 : 2013년 공급한도 소진시까지
- 취급은행 : 전 금융기관
- 신청접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 ② 햇살론

- 지원대상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포함) 및 근로자
  - 신용6~10등급자중 연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청불가
- 보증규모 : 10조원('10.7월~'16년)
  - '12.11월 기준 2조 625억원 공급
- 대출금액 : 자금용도에 따라 최고 대출가능금액 차등적용
  - 사업운영자금(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최고 5천만원), 긴급생계자금(최고 1천만원), 대한대출(최고 3천만원)
  -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은 자영업자, 긴급생계자금은 근로자 대상 지원, 대한대출은 햇살론 지원대상자중 캐피탈이나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 시행기간 : 2010년7월부터 2016년까지
- 취급은행 :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 신청접수 : 인근 취급은행

### ③ 나들가게 특례보증

- 지원대상 : 나들가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자
  - 나들가게 : 쇼핑환경·가격·서비스·위생·정보화 등에서 선도적 우수점으로 중소기업청의 나들가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장
- 보증규모 : 소상공인 우선지원자금('13년 4,100억원) 소진시까지
- 대출금액 : 1개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대출
- 시행기간 : 2013년 공급한도 소진시까지

- 취급은행 : 기업은행
- 신청접수 : 각 소상공인지원센터(개별신청서)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체인 조합단체 신청서)

#### ④ 일자리창출 및 미래산업에 대한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신용도 “CCC”(7등급) 이상인 일자리 창출·수출·1인창조·지식서비스 분야 소상공인
  -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 최근 3개월간 상시근로자 감소 사실이 없으며, 전년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소상공인
  - 최근 3개월 이내 수출실적 보유 수출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업 소상공인
- 보증규모 : 3,000억원('10.6월~자금 소진시까지)
  - '12.11월 기준 947억원 공급
-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내 보증대출
- 시행기간 : 한도 소진시까지
- 취급은행 : 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및 농협중앙회
- 신청접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 ⑤ 금융기관 협약보증

- 지원대상 : 영세자영업자 및 시설보수·리모델링을 위한 시설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로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자영업자
- 보증규모 : 자금 소진시까지('12년말 기준 4조 920억원)
  - '12.11월 기준 3조 2,414억원 공급
-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8억원이내 보증대출
- 시행기간 : 한도 소진시까지
- 취급은행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산업은행
- 신청접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 ⑥ 희망대출사업(희망드림론)

- 지원대상 : 6대 뿌리산업 및 농수축산 가공·유통업, 영리 사회적 기업
- 보증규모 : 1,400억원('11.4월~자금 소진시까지)
  - '12.11월 기준 960억원 공급

-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내 보증대출(시설자금은 1억원이내)
- 시행기간 : 한도 소진시까지
- 취급은행 : 새마을금고
- 신청접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⑦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 만39세 이하인 자로서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
- 보증규모 : 1,600억원
-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이내 보증대출(제조업은 최대 1억원이내)
- 시행기간 : '13년 1월말(예정) 부터 한도 소진시 까지
- 취급은행 : 협약 금융기관
- 신청접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⑧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보증규모 : 일반보증 자금('13년 7.2조원 공급) 소진시까지
-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4억원이내 보증대출
- 시행기간 : '12년 1월말(예정) 부터 계속
- 취급은행 : 기업은행
- 신청접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절차 · 서류 및 지원받는 금액 산정**

- 상담에서 보증서 발급까지 총 7~9일 소요



- 보증신청시 제출서류 : 8종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세신고서, 재무제표, 기업실태표, 납세증명서
  - 보증종류별 추가 서류는 각 보증기관에서 보증상담시 안내
- 지원받는 금액 산정
  - (운전자금) 연간매출액의 1/3~1/4 범위 내
  - \* 무역금융, 구매자금용, 할인어음보증 등은 연간매출액의 1/2범위 내
  - (시설자금) 당해 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

### 보증신청시 유의할 점

- 보증 대상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 보증제한 대상
  - 사치·향락업종 및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대상자(파산, 면책, 연체 등) 해당시 신청불가(햇살론의 경우, 1년 이상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 중인 자영업자는 신청 가능, 대한대출은 제외)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은 보증 금지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은 보증 제한
  - 기타 보증기관 보증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 제한

### 신청·접수

- 신용보증기금 : 홈페이지(www.kodit.co.kr) 접속 후 메인 메뉴에서 '사이버 영업점 → 회원가입 → 보증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신청
- 기술보증기금 : 홈페이지(www.kibo.or.kr) 접속 후 메인 메뉴에서 '사이버 영업점 → 회원가입 → 보증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신청
- 지역신용보증재단 :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메뉴에서 보증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또는 방문) → 보증 신청
  -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온라인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우편 또는 방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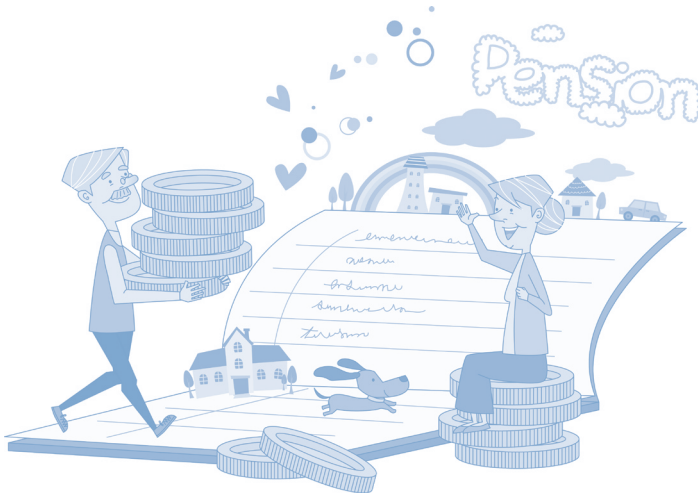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전국 단일전화 1588-6565
-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 전국 단일전화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 전국 단일전화 1588-7365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042-481-4477, 042-481-4454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사실 여부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무등록 소상공인확인 및 신용보증 요령」에 따라 상인회장, 통·반장, 인근 고정사업주, 아파트관리소장, 부녀회장등이 확인하는「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으면 햇살론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6-2 신용보험

납품대금 떼일 염려 없는 거래안전망

신용보험은 중소기업이 신용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 보험인수 : 10조원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 보험가입 대상

구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모	업력	업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제한 없음 (2012.7월부터 업력제한 철폐)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어음보험	중소기업	접수일 현재 영업실적 1년 이상 (제조관련 도매업은 2년 이상)	

### 가입이 안 되는 기업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 처리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등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 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 지원 내용

- 보험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 예)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 보상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20억원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 보험료

- 매출채권보험 : 보험가입 매출채권에 대하여 최저 0.1%~최고 5.0%
- 어음보험 : 보험가입 어음에 대하여 최저 0.5%~최고 5.0%

### 상품 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보험	하나보험	5일	개별 구매처에 이미 발생한 매출채권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일석e조보험	15일	개별 또는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보험청구권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어음보험	포괄어음보험	15일	포괄어음한도 설정 후 개별 구매처에서 수취할 어음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 영업점으로 신청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용보증기금은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보험인수구매자 등 결정

### 제출 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근보험), 세금계산서 사본(개별보험),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매출액 확인자료 등

### 처리절차

보험가입절차	세 부 내 용
보험상담	보험가입조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청약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신용조사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보험심사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보험증권발급	보험증권 발급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042-481-4388
-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전국 단일전화 1588-6565



## 궁금해요! 중기맨

### 1. 신용보험과 신용보증의 차이점?

구 분	신용보험	신용보증
특 징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금융안전망	신용보완을 통한 추가적 신용창출
계약의 성격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체결	채권자를 위한 피보증인이 체결
수수료 성격	예상손실에 대한 분담금	보증에 따른 대가(수수료)

### 2.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

- ☞ 구매자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당좌부도(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때
- ☞ 보험금 지급청구 시기
  - 상기 보험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3. 보험금 지급 청구 시 필요서류?

- ☞ 보험금 지급청구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또는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 어음 사본(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우수사례

#### ● 보험가입 개요

보험가입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금수령액
대X금속공업	19억원	2천3백만원	6억6천만

우리 회사는 대전에서 특수강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8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몇 년간 거래하던 장기 고정거래처라고 해도 현재의 좋은 신용도를 계속 유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평소 생각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보험료 부담은 다소 있었지만,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가입 첫해에는 거래처들로부터 수금이 잘 되어 보상을 청구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매출채권보험 재가입 후, 생각지도 못했던 거래처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상장회사이고 연매출액이 1천억원에 이르는 우량회사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싶었으나, 그 회사의 부도로 일시에 10억원 이상의 매출채권 손실이 발생하여 은행, 거래처에 지불해야 할 결제대금 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사업 중단의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 3부. 기술개발 지원



S M A L L   A N D   M E D I U M   B U S I N E S S   A D M I N I S T R A T I O N

# 신기술·신제품 개발, 든든하게 후원합니다.

<b>7</b>	<b>기술개발 자금 지원</b>	<b>123</b>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미래성장 유망기술개발 R&D 자금	124
	창업성장 기술개발 · 창업기업과 소기업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	129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지원	131
	해외수요처 연계기술개발 · 해외수출을 위한 시제품개발 지원	133
	민 · 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 정부와 대기업 · 공기업이 R&D 협력펀드 조성 · 지원	136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지원	139
	중소기업 융 · 복합기술개발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142
	중소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 중소기업형 서비스분야 신상품 및 신기술 개발 지원	145
	중소기업 디자인 역량강화 ·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프로세스 개선 및 혁신	148
	업종 공통기술개발 ·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개발 지원	151
	제품 · 공정개선 기술개발 · 소기업의 단기 · 소액 제품 · 공정 개선 지원	154
	개발기술 사업화 · 우수기술의 제품화 · 사업화 지원	157

# 신기술·신제품 개발, 든든하게 후원합니다.

<b>8</b>	<b>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 지원</b>	<b>164</b>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 ·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구개발 사전기획 지원	165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 기술개발인력 활용으로 혁신역량 강화	168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 대학 · 연구기관보유 연구장비 공동이용시 장비이용료 지원	171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장비 이용 · 지방청 시험연구장비 “연중 내내” 무료 이용	174
	뿌리산업 기술협력 강화 · 뿌리산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 기술지도 및 교육 지원	177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 · 글로벌 뿌리기술 강소기업 육성	179
	의료기기 비교임상 및 성능평가 지원 · 외국 유명브랜드 제품과 비교평가 지원	182
	의료용 전기기기 국제인증 지원 · IEC 60601 제1판 규격 기술지도 및 시험검사	185
<b>9</b>	<b>정보화 지원 및 기술유출 방지</b>	<b>188</b>
	경영혁신 플랫폼기반 정보화지원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화 솔루션 지원	189
	생산현장 디지털화 · 효율적인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191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지원 · FTA 발효에 따른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	194
	기술유출 방지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196



###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기술개발 Q&A

- Q. 무급수 순환 화장실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어로부터 기차에 공급할 제품 개발 의뢰를 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 A. 해외수요처에서 기술개발을 주문받아 납품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구매조건부 R&D)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총사업비의 55%이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수요처는 해외수입자 신용등급 E등급 이상이고, 해외수요처와 개발, 구매계약 등을 보유하셔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해외수요처 연계기술개발사업 참조)
- Q. 산업용 케이블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신뢰성에 자주 문제가 발생해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걸음기술개발의 경우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청과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며 1억원 한도 내에서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약기술개발은 혁신역량 부족, 성장 정체 기업 등에 대해 1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비의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참조)
- Q. 자동차, 선박부품 등의 주철을 제조하는 소기업입니다. 주문물량은 늘는데 계속 사람을 뽑자니 애로가 많아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싶습니다.
- A.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를 과제당 5천만원을 한도로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참조)
- Q. 3년 전부터 난연 플라스틱 제조 및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험장비가 고가이다보니 자체 해결이 어려워 연구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 A.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비사용료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를 먼저 구매한 후 장비를 이용하시는 방식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조)

Q. 중소기업이 R&D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기획지원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A. R&D 기획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 및 기술에 기업이 보유한 R&D 자금, 인력 등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R&D 기획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사업 참조)

Q. 냉장고나 세탁기의 PC기판 사출성형 업체입니다. 공장에서의 생산관리를 자동화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 지원받아 생산시점관리(POP)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작업 지시서에 제품명, 납기일, 생산수량, 작업자 등의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붙여서 생산관리를 하게 되면 생산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참조)

Q. 산업용 잉크 제조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아직이 찾아 기술유출 우려가 늘 존재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A.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상담과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보호 상담의 경우 사전진단(1일)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심층진단은 일정 비용 부담), 보안시스템 구축은 총비용의 50% 이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기술유출 방지사업 참조)

# 07

## 기술경쟁력을 키워주는 기술개발 자금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7-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124
- 7-2 창업성장 기술개발 · 129
- 7-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131
- 7-4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 133
- 7-5 민 · 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 136
- 7-6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 139
- 7-7 중소기업 융 · 복합 기술개발 · 142
- 7-8 중소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 145
- 7-9 중소기업 디자인 역량강화 · 148
- 7-10 업종 공통기술개발 · 151
- 7-11 제품 · 공정 개선 기술개발 · 154
- 7-12 개발기술 사업화 · 157

우수지원사례 ① (주)신동디지텍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160

우수지원사례 ② K-MAC(주) –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 162



## 7-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FTA 대응 글로벌 전략품목 및 녹색·첨단기술, 제조기반 분야 등 혁신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육성합니다.

**지원 규모** 2,197억원(신규과제 1,154억원, 계속과제 1,043억원)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1,491개 중 신규 501개사, 계속 472개사(과제당 2.3억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신청가능
  - \* 지원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 전년도 수출실적 3백만불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청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다만,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은 신청 불가
  - 투자연계과제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연계 조건으로 지원
    - 다만,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 불가
  - 혁신기업기술개발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은 신청 불가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⑥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협력사업 중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주관기관으로 2개 과제 이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단,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미만은 제외)
- ⑦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내용

내역사업명	내 용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306억원)	<p>〈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175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0%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10억원</li> <li>• 수출중소기업이 FTA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지원(지정공모)</li> </ul>
	<p>〈투자연계과제(131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0%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10억원</li> <li>• 미래유망 및 국산화 전략품목을 발굴하여 민간 투자연계 방식 지원(지정공모)</li> </ul>
혁신기업 기술개발 (84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5억원</li> <li>•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반의 녹색성장, 첨단기술, 제조기반 등 미래유망 전략제품에 대해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응모(자유응모)</li> </ul>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및 시장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전략분야에 대해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응모
  - \* ('12) 미래선도과제, RFP 지정공모, 1회 사업공고 → ('13.계획) 혁신기업기술개발, 133개 전략제품 자유응모, 2회 사업공고 중 1회만 신청가능
- 유망품목 발굴 연구와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FTA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수출유망 및 국산화 전략품목 발굴·지원
  - \* 글로벌강소기업육성 : ('12) 수출유망 80대분야 지정, 자유응모 → ('13.계획) 수출유망 전략품목 170개 기술 RFP, 지정공모
  - 투자연계 : ('12) 수입대체 210개 품목, 자유응모 → ('13.계획) 민간투자 유망 및 수입대체 전략품목 130개 기술 RFP, 지정공모

###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 접수방법 : [www.smech.go.kr](http://www.sm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 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신규과제 선정평가(서면 → 현장 → 대면)시에 개발내용 및 개발목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사업계획의 구체화, 개발목표의 정량화 및 객관화가 필요
- ① 개발목표 및 연구내용 설정을 명확하게
    - 기술개발내용 및 연구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정량적 평가항목 설정 및 객관적 시험평가는 신규평가 및 최종 평가시 주요 검토 항목
  - ②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 시장규모, 국내외 경쟁기술, 목표설정 등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
  - ③ 개발계획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
    - 최종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 개발내용, 연구진 및 추진체계 제시
    -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 및 적정 사업비 구성
    - 개발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항목 및 객관적 측정방법 제시

## 지원과제 선정 절차

구 분	내 용
서면평가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현장조사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기본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 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등 조사
대면평가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의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 평가
최종선정	• 대면평가 점수, 우대배점 및 감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결정

## 제출 서류      현장조사 시 다음 서류 준비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인증서(해당기업)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 가능)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 관련 서식 :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 처리 절차



\* 세부 추진일정은 사업별로 별도 공고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51, 440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42-715-2320~7/2329~2333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 기술개발사업비 포인트제가 무엇인가요?

☞ 기술개발 기관의 계좌에 실제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 대신 포인트를 지급·사용토록 하며, 개별 기업은 직접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비목·용도 및 금액을 명시하여 지급 요청하면, 통합 수탁은행이 실제 자금을 집행하면서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하는 기술개발(R&D) 자금 집행·관리제도입니다.



## 용어 설명

### • RFP(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청서)

기술수요조사 등에 의하여 발굴된 지원대상 기술 분야를 지정하여 공고하는 '지정공모형 과제'에서 지원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개발목표 및 내용, 기술개발의 필요성 등을 정리한 문서로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시 RFP의 요청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 기술료 납부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총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



## 7-2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창업기업과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314억원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5,118개 중 1,316개사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창업과제(1,214억) : 창업 후 5년 이내이고, 종업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1인 창조기업 과제(100억)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창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기간 1년 이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li> <li>• 건강진단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li> <li>• 1년 이내 실용화 기술을 '자유 응모 방식'으로 지원</li> </ul>	총사업비의 90%
1인 창조기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기간 1년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지원</li> <li>•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을 지원</li> </ul>	총사업비의 90%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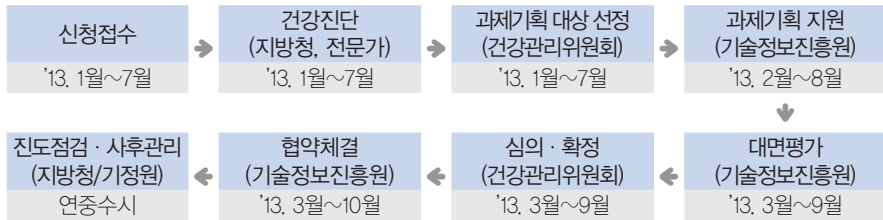
- 창업과제 : 건강진단연계 : 진단기관 방문상담 및 신청
  -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 신청기간 : 매월(7월까지) 1~10일까지
- 1인 창조기업 과제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3월

### 지원과제 선정 절차

구분	비고
기술평가	• 관리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개발여건, 수행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해 평가
대면평가	• 전문기관에서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 평가
최종선정	• 대면평가 순위에 따라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결정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처리 절차



\* 위의 절차는 창업과제의 경우이며, 1인 창조기업 과제는 3월에 공고 예정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2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50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R&D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 7-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지원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이를 상용화하거나 판매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술개발단계부터 판로를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요처(정부·공공기관·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이를 일정기간 구매합니다.

### 지원 규모

약 190개 과제(전체 예산 545억원)

\* '12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372개 중 197개 선정, 업체당 평균 1.9억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내용과 동일

### 지원 내용

- 수요조사 과제 :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일반과제 :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조합, 각종단체, 병원 등)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 전략과제 : 국방·기상·소방 등 공공분야의 외국산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계획에 따른 전략과제 또는 하나의 완제품 생산을 위해 다수의 부품개발이 필요한 과제(예:완제품 1+부품 5개)
- 중소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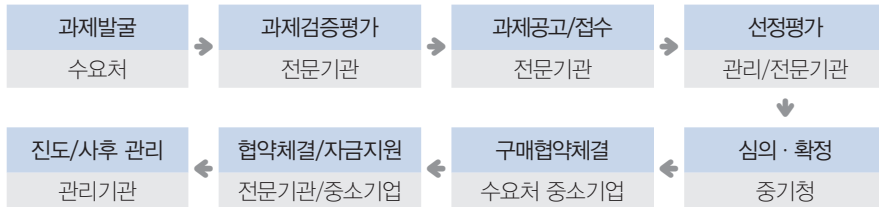
### 신청·접수 '13. 2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 과제신청시 제출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현장조사시 제출서류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 우대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 최근 1년간 재무제표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 서류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관리지침 참고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42-715-2353~4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50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중소기업 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 7-4 해외수요처 연계기술개발사업

해외수출을 위한 시제품개발 지원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고부가가치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규모

60개 과제 내외(전체 예산 100억원)

\* '12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93개 중 63개 선정, 업체당 평균 1.4억원

### 지원 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① 해외바이어와 상호 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
- ②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③ 채무불이행, 의무사항불이행 등에 해당되는 기업
- ④ 해외수입처(바이어) 신용등급이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수입자 신용등급조사 결과 E 등급 이하인 경우
- ⑤ 해외수입처(바이어)와의 구매계약 체결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 지원 내용

- 글로벌 협력과제 : 글로벌 기업, 해외국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과제를 발굴하며, 지정 공모를 통해 개발 중소기업을 선정

- 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신청·접수** '13. 2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접수
- 타당성검토를 위해 해외수요처와의 구매계약 및 해외바이어 신용등급 보고서 제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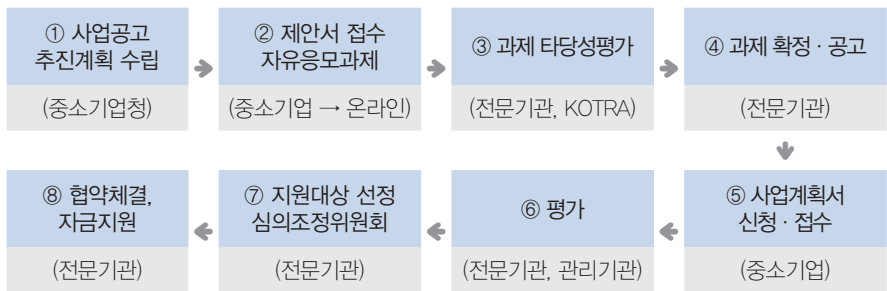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해외수요처와의 계약내용·구매규모, 사업화 가능성, 기술개발 목표 수준 등

**신청 서류** 과제제안서, 구매계약 관련 서류, 신용등급보고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되어 있는 관리지침 참고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042-715-2322~36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7-5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정부와 대기업·공기업이 R&D 협력펀드 조성·지원

정부와 투자기업(대기업, 공기업)이 사전에 기술개발 자금을 조성한 후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투자기업은 개발제품을 구매해 줍니다.

**지원 규모** 200개 과제(전체 예산 521억원)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188개 중 136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6억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고 협력 펀드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제출한 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이 안되는 기업 내용과 동일

### 우대사항

- 신기술 및 국산화 개발 등을 통해 현저한 기술적 혁신 또는 투자기업과의 동반성장이 예상되는 과제
- 투자기업의 예상 구매액이 높은 과제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총 개발비의 75% 이내, 최대 3년간 10억원까지 지원
- 지원분야 : 중소기업 공동지원협약 및 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

- ① 수요조사과제 :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 \* 중소기업 신청시 협력펀드 구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함
- ② 미래전략과제 :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 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컨소시엄 방식)
- ③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의 연구개발 비용 지원

#### 협력펀드 참여 투자기업 현황('12년말 기준) : 4,380억원

- 대기업(3,720억원) : 포스코, 인켈,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S엠트론,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부(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중공업, 삼성SDI, 인성정보, 다산네트웍스, 주성엔지니어링
  - 공기업(660억원)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 참여 투자기업은 협력펀드결성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신청 · 접수

'13년 사업 공고 시점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방법 :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추천서 등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2-3787-0556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10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tech.go.kr](http://www.smttech.go.kr)(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7-6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지원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 장비, 기술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2,000개사(전체 예산 1,389억원)

\* '12년 지원현황 : 1,791개사(예산 1,322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첫걸음기술개발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 도약기술개발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를 겪는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신설 필요 기업 등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②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③ 부채비율 1,000% 이상인 중소기업
- ④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중소기업
- ⑤ 세무당국에 의한 세금 체납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등

### 지원 내용

- 첫걸음기술개발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소재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지원(지방비와 매칭, 예산 390억원)
  - 지원한도 : 1년간 1억원(정부 50%, 지방비 25% 이내)

- 도약기술개발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예산 999억원)
  - 지원한도 : 1년간 1억원(정부 75%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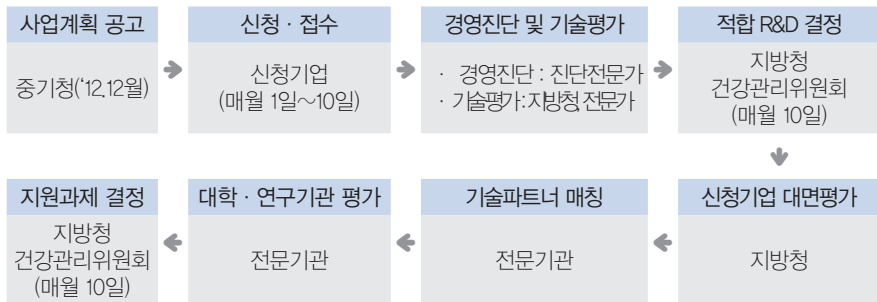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존의 다양한 지원구조를 기술개발 위주로 단순화 개편
  - ('12) 지역사업 → ('13) 첫걸음사업
  - ('12) 전국, 국제, 중점, 기업부설연구소 사업 → ('13) 도약사업
-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신청기업이 기술개발 파트너(대학·연구기관)를 선택하는 방식 도입
  - 참여기업 선정 → 파트너 모집 → 파트너 선정 → 지원여부 심사
-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청기업의 건강진단을 통해 기업에 맞는 기술개발사업(창업성장, 산학연, 제품공정개선)으로 연결
- 연 1회 신청·접수 체계를 상시 접수체제로 개선하고 신청서를 간소화(3쪽)하여 중소기업의 사업 접근성을 제고

### 신청·접수 (매월 1일~10일(1월~9월까지))

- 중소기업 건강관리 신청서와 기술개발 사업신청서(3쪽)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건강진단 기관(지방청, 중진공, 신보, 기보 등)에 방문 접수

### 처리 절차



### 문의처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 042-481-4453
- 각 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서울) 기술혁신지원과,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 (사)한국산학연합회 : 042-720-3300





## 7-7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산-연) 또는 중소기업간(산-산)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융·복합형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융·복합기술개발 역량 향상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755억원(신규과제 387억원, 계속과제 368억원)

### 지원 대상

#### ① 산연협력과제

-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포함)를 보유한 기업

#### ② 이전기술과제

-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거나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포함)를 보유한 기업

#### ③ 센터연계형과제

-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거나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포함)를 보유한 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이 안되는 기업 내용과 동일
-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는기업
  -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지원 내용

### ① 산연협력과제(173억원)

- 기술수요조사, 연구용역, 융·복합지원센터 등에서 발굴·기획된 중소기업형 미래유망 첨단융합기술 분야의 과제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산-연) 공동기술개발 형태의 첨단 융합기술과제

### ② 이전기술과제(59억원)

- 공공연구기관의 상용화되지 않은 특허기술 등 보유기술 이전과제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산-연) 공동기술개발 형태의 융합이전기술과제

### ③ 센터연계형과제(155억원)

- '중소기업 기술융·복합지원센터'를 통해 평가후 추천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의 우수 기획과제
- '중소기업 기술융·복합지원센터'에서 발굴·기획된 과제중에서 추천된 우수과제(산-산, 산-연)

## 과제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신청방식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산연협력과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20%이상	20%이내	지정공모
이전기술과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20%이상	20%이내	지정응모
센터연계형과제	최대 2년, 6억원	60%이내	20%이상	20%이내	자유응모

\* 단, 민간부담금 중 현금(자부담금+보증(융자)금)은 민간부담금의 50%이상

## 추진 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산연협력과제	2월	3~4월	4~5월	6월
이전기술과제	6월	7~8월	8~9월	10월
센터연계형과제	4월	5~6월	7~8월	9월

### 신청·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제출 서류 현장확인시 다음 서류 제출

- 주관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해당기업)
- 벤처기업 등 우대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해당기업)
- 주관기관의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 가능)

### 지원과제 선정 절차

구분	내용
서면평가	• 전문기관에서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R&D 경제성평가	• 기보에서 보증(융자)을 위해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해 평가
현장확인	• 관리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개발여건, 수행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해 확인 (보증기관의 R&D경제성 평가로 대체)
대면평가	• 전문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 평가
최종선정	• 대면평가 점수(100%) 및 우대배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결정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5/397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21/052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



## 7-8 중소기업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시장 지향적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모델 지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지향적 서비스 상품 및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규모

155억원(자유응모, 제품서비스 105억원, 지식서비스 50억원)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1,168개사 중 86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30백만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아래의 사행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구분	코드번호	업종	관련 사행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 경마, 경륜, 경정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복권류 · 체육진흥투표권
	91249	기타 캐블링 및 베팅업	· 카지노 · 경마, 경륜, 경정의 장외지점 영업

###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제품서비스 (有形)	• 전 산업 대상 모든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는 신제품 및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지식서비스 (無形)	•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을 지원하는 과제	

\* '13년부터 비즈니스모델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를 지원하는 지식서비스 분야 지원

### 신청 · 접수 2013.2월중 공고 예정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과제 선정 절차

구 분	내 용
예선심사 (서면평가)	• 관리기관(각 지방청)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과제제안서의 독창성, 혁신성, 기술융합성 및 지원필요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본선심사(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본선심사 (대면평가)	•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개발내용의 혁신성, 기술성, 사업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 평가
본선심사 (현장평가)	• 관리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기술개발능력 및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평가
최종선정	• 대면평가 점수(60%), 현장평가 점수(40%) 및 우대배점 등을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결정

### 제출 서류

- 과제제안서 및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예선심사)
-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본선심사 대상과제만 해당)
- 벤처기업 등 우대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현장평가 대상과제만 해당)
- 최근 1년간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 가능, 현장평가 대상과제만 해당)

\* 관련 서식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 처리 절차



③ 기술개발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0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전문기관) : 042-715-2325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1661-1357(중소기업 R&D 고객지원센터)
-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7-9 중소기업 디자인 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개선 및 혁신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여 독창적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규모

혁신과제 20개사 20억원, 단기과제 25개사 10억원 (전체 예산 30억원)

\* '12년 지원현황

구 분	신청	선정	평균 지원액
혁신과제	93개사	25개사	9,112만원
단기과제	66개사	26개사	1,734만원

### 지원 대상

- 혁신과제 :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 5% 이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단기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업의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등은 지원제외

### 지원 분야

구분	기획	제품디자인	제작유형	생산·사업화
혁신과제	디자인전략리포트	시안(3D)	프로토타입	CMF적용전략 마케팅전략리포트
단기과제	디자인 기초조사	시안(3D)	Dummy목업	-

### 지원 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식
혁신과제	9개월 이내, 1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단기과제	6개월 이내, 4천만원	75% 이내	자유응모

### 신청·접수

- 혁신과제 : 온라인(SMTECH)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
- 단기과제 : 한국디자인협동조합에 사업계획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중소기업디자인역량강화사업)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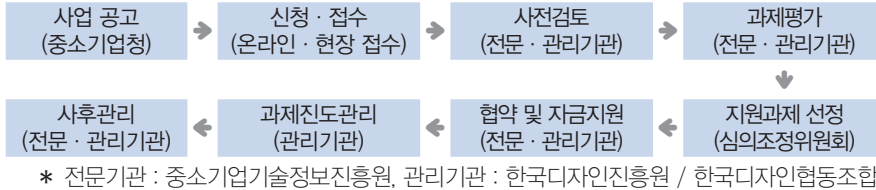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 대면평가
-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개발여건, 수행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해 현장평가
- 대면평가 점수(60%), 현장평가 점수(40%) 및 우대배점을 합산한 종합 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결정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증서(해당기업)
- 주관기관의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 가능)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0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47
- 한국디자인진흥원(혁신과제) : 042-864-2635
- 한국디자인협동조합(단기과제) : 02-418-7780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tech.go.kr](http://www.smttech.go.kr)(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 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중소기업디자인역량강화사업은 주관기관 단독 수행도 가능하나요?  
☞ 단독수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디자인 수행 능력 등에 대하여 제품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참여기업으로 공동 수행함이 평가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를 잘 모르는 경우 어떻게 매칭할 수 있나요?  
☞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 오셔서 디자인전문회사 조회를 통하여 원하는 산업 디자인전문회사와 매칭이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 CMF적용전략  
Color, Material, Finishing 적용전략
- Dummy목업  
색채나 재질까지 완벽하게 고려되지 않고 외형만 갖춘 기초단계 목업



## 7-10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 등을 발굴하여 보급·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제품개발 및 공정혁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21개 협동조합 (전체예산 42억원)

\* '12년 지원현황 : 신청조합 35개 중, 21개 협동조합 선정지원, 조합당 평균 1.8억원

**지원 대상**

- 주관기관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주관기관의 회원사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휴면 또는 해산건의 중인 조합
- 이사장(회장)과 상근이사 모두 공석인 조합
- 세금 체납 중인 조합

**참여기업 우대사항**

- 주관기관인 협동조합은 비영리기관으로 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기술료 면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녹색인증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 그린비즈 인증기업, 정보화경영체계 인증기업,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협업사업계획 승인 주관기업,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등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영성과 우수기업 등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공정 등을 협동조합이 발굴하여 보급·확산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최고 2억원까지 지원
  - 협동조합 사업비 부담액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이중 민간부담금의 5% 이상은 현금부담

### 신청·접수 '13. 3월 공고, 4월 신청·접수

- \* 사업공고 후 중소기업뉴스 등 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사업신청 :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경영현황표, 비목별 소요명세, 연구기자재 구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청렴협약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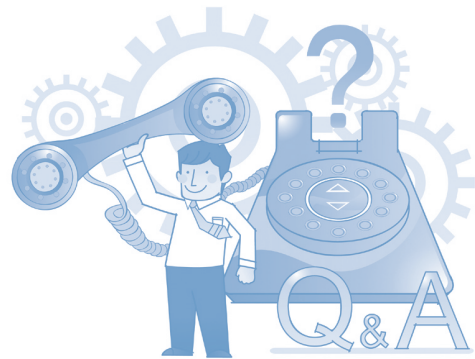
### 처리 절차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0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2-3787-0547
-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 : 02-2124-3101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7-11 제품 ·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소기업의 단기 · 소액 제품 · 공정 개선과제 지원

R&D 역량이 취약한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 ·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 및 생산성 제고,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627개사(전체 예산 415억원)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366개사 중 121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50인 미만 뿌리기업 등 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 (뿌리기업)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 (소상공인) 동일업종의 단체(협회) 또는 소상공인 컨소시엄(3개 기업이상)
  - \* 지원예시 : 세탁업(세탁공정 개발 등), 빵집(제빵공정 개발 등)
- (기타 소기업) 뿌리산업, 소상공인 이외 50인미만 소기업

### 지원 내용

- 소기업의 현장 수요가 많은 제품 ·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과제 580개 내외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제품개선	• 기존 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는 과제	9개월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5천만원 한도
공정개선	• 중소기업의 기존 공정을 개선하여 비용 절감과 생산성을 높이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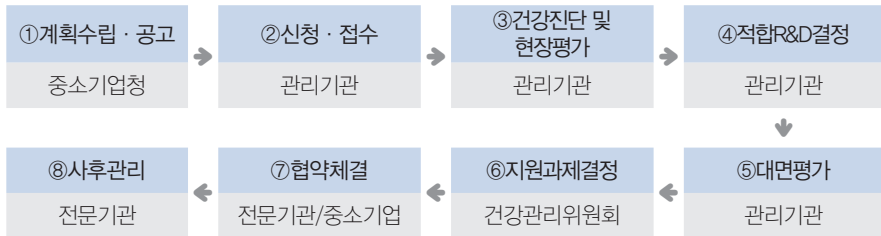
###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매월 1~10일('13. 9월까지)
- 건강진단 연계 : 건강진단기관 방문상담 및 지원신청
  - \* 건강진단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신청 서류

-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

### 처리 절차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 042-481-4460, 444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30, 0531
- 전용 사이트 :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 전화상담은 R&D 통합콜센터 1661-1357(내선 2))



### 궁금해요! 중기맨

• 업종별 조합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협회·조합 등)는 본회 또는 지회 단위로 동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기업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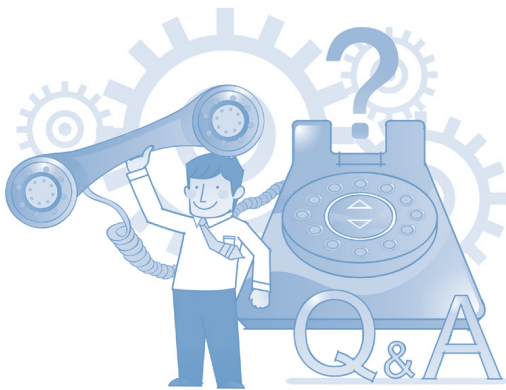
☞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매출액, 자산총액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조업·광업, 정보서비스업 등은 50인 미만이며, 기타서비스업, 폐기물 처리 등은 10인 미만이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 설명

• 건강관리 연계형

「진단→처방→치유」방식의 문제해결 프로그램인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신청 기업에 적합한 R&D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며, 건강관리 연계형 R&D 사업은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 해당됩니다.



## 7-12 개발기술 사업화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000억원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1,645개사 중 1,240개사 지원.

**지원 대상**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 Biz기업
  -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소재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산업 및 프랜차이즈산업
  -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지원 내용

- **용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용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3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자금(2년 거치 3년 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용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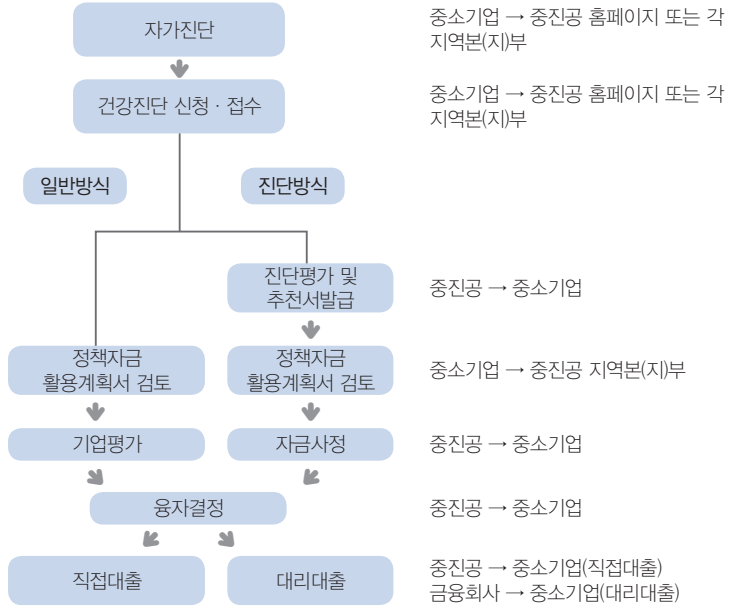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용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용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온라인([www.sbc.or.kr](http://www.sbc.or.kr))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신청 서류

- 건강진단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활용계획서(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정보광장 각종서식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처 자금운영팀 : 02-769-6897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중기맨이  
떴다!

우수지원사례 ① (주)신동디지텍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해양 IT업계의 신동디지텍

선박을 구성하는 장비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 항해통신장비만 보더라도 속력제어, 위치파악이나 방향유지, 장애물 탐지와 통신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가 각각의 기능을 함으로써 선박이 운항됩니다. 만일 특정한 장비에서 문제 혹은 이상 징후가 발생했는데,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선박 운항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선박용 실시간 감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인 AMS(Watch/Safety Alarm Monitoring System)입니다. AMS는 각종 항해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와 고장을 감지하여 미리 알려주고, 정보를 줌으로써 승무원이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승무원의 태만이나 부주의, 또는 불의의 사고로 예기치 않은 운항 조작 불능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장이나 다른 승무원 등에게 즉시 경보를 발하여 대처하게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 운항에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매우 유용한 안전 운항 시스템인 선박용 AMS를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었는데 이를 국산화한 중소기업이 (주)신동디지텍입니다.

### 전량 수입하던 고가장비의 국산화 성공

1994년 부산에서 설립한 (주)신동디지텍은 사업 초창기에는 항해통신장비를 조선소에 납품하는 무역 업무가 주였지만 점차 선박 설치품의 수리 및 국산화 기술개발 등 생산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년간 항해통신장비를 다루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AMS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수입에 전량 의존하던 AMS를 국산화함으로써 통합적인 기술설계능력을 확보하게 되어 앞으로 이로 인해 파생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띄워 기상관측에 필요한 기온, 기압, 풍속 등 날씨정보와 수온, 파고 등 해양정보를 수집해 전송하는 해양기상관측 장비인 '부이' 또한 기상청에서

전량을 수입해서 사용해왔습니다. 외국제품은 가격에 대한 부담은 물론, 고장 시 부품조달이 어려워 신속한 수리가 어렵고 외국의 해양 환경 및 운영실정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운영하기에 많은 어려움과 성능개선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신동디지텍이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뿐 아니라 우리나라 해역환경에 맞는 최적의 설계로 실용성을 더욱 높이고, 유지보수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10년에는 국내 기상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주)신동디지텍은 2009년 10월말 기준, 생산제품을 전 세계 21개국에 수출하며 고속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항해통합시스템을 수출하는 국내업체로는 (주)신동디지텍이 유일합니다. 최근에는 국내외 조선경기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틈새시장인 베트남 조선시장을 개척해 2009년에만 400만 달러어치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 틈새시장이 성공전략

(주)신동디지텍 장철순은 베트남에 본격적인 수출을 하기 5년 전부터 '베트남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 바이어간 교류를 꾸준히 해오면서 현지 시장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은 조선설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설계, 공법 등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은 데다 국가 차원에서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신동디지텍으로서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하였습니다.

(주)신동디지텍은 축적된 해양이동체에서의 정보기술 노하우와 정보 기술력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기맨이  
뒀다!

우수지원사례 ② K-MAC(주)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 IT와 바이오테크놀로지 융합

우리 사회의 빠른 환경변화는 식생활 왜곡과 불균형, 심각한 환경오염 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현대인의 대표적 질병 중 하나인 각종 알레르기(Allergy)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알레르기는 지역적 음식문화, 식습관, 생활환경에 따라 수많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알레르기를 한번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장비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습니다.

K-MAC은 이러한 시장 욕구에 부응하고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하여 LG생활건강과 함께 ‘어드밴슈어 알로스테이션(Advansure AlloStation)’으로 명명되는 ‘통합형 진단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대전 유성구 소재의 (주)K-MAC은 물성분석 기술을 근간으로 분광분석 장비, FPD/반도체 공정용 검사장비, 바이오/의료진단용 분석기기 등 첨단 정밀 측정 장비 전문기업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물성분석실 연구원들을 주축으로 1996년 창업한 기업입니다.

분석기기 산업은 원천기술 개발, 산업 전반의 제품이나 재료의 품질관리 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K-MAC은 창업 이래 축적된 물성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기와 검사 장비를 개발하여 공급함으로써,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분석기기의 국산화를 실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LDC 분야 및 IT 정밀측정 장비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현재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과 일본, 대만, 중국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어드밴슈어 알로스테이션(Advansure AlloStation)’은 한 방울의 혈액으로 3시간 40분 안에 60가지 알레르기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기존에는 시료 전처리를 별도로 진행한 후 판독장치를 통해 분석하는 방식이었지만, 이 장비는 전처리부터 정량화 분석까지 전체 측정과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형 진단시스템’입니다.

## 원활한 소통으로 탄생한 ‘어드밴슈어 알로스테이션’

어드밴슈어 알로스테이션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탄생했습니다. 이는

수요처와 K-MAC의 연구소가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했고, 모두가 기술개발에 한 식구처럼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주)K-MAC의 유규상 본부장은 “빠른 시간 안에 양산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수요처와의 역할 분담이 잘 됐기 때문”이라며 “진단 콘테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지만 LG생명과학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잡은 회의 등을 통해 지원을 많이 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드밴슈어 알로스테이션’이 지난해 본격 생산되면서 국내 바이오 의료진단 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통합규격인증마크 CE, 중국의료기기 SFDA 인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증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해외시장을 개척할 예정입니다. 유럽, 미국 및 제3시장에 현지 영업지사 설립 등을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K-MAC은 바이오 의료진단 분야의 매출신장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목표 250억을 무난히 달성하였습니다.

(주)K-MAC은 기초과학 및 요소 기술에 다년간 경험이 축적된 전문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IT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 08

##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8-1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 · 165
- 8-2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 168
- 8-3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 171
- 8-4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장비 이용 · 174
- 8-5 뿌리산업 기술협력 강화 · 177
- 8-6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 · 179
- 8-7 의료기기 비교임상 및 성능평가 지원 · 182
- 8-8 의료용 전기기기 국제인증 지원 · 185



## 8-1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사업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구개발 사전기획 지원

사업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 및 기술에 기업이 보유한 R&D자금, 인력 등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R&D기획을 대신해 주거나, 향후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발굴해 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 규모

- R&D 기획지원 : 140개사 내외(예산 35억원)
  -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871개사 중 15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100만원
- 과제발굴연구회 : 60개 연구회 내외(예산 10억원)
  -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108개 연구회 중 60개 연구회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500만원
- 개별기업기술로드맵 : 40개사 내외(예산 10억원)
  -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117개사 중 37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250만원

### 지원 대상

- R&D기획지원사업, 개별기업기술로드맵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① 신청기술이 기 개발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
- ②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신청기업, 대표자 포함)
- ③ 중소기업기술개발 참여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 ④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휴 · 폐업
  -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제외)
  - ☞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과제발굴연구회 지원사업 : 중소기업 관련 조합, 협회, 단체 등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① 연구회의 목적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② 연구회가 신청한 연구내용이 기 지원된 경우
- ③ 연구회의 구성 위원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④ 연구회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지원 내용

- 신기술에 대한 R&D기획, 개별기업의 기술로드맵 수립지원 사업은 사업별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최대 22.5백만원까지 지원하며, 과제발굴연구회는 15백만원까지 전액지원
- R&D기획지원사업의 경우 기획 결과가 우수한 과제(기업)는 별도 심의를 거쳐 2014년도 중소기업청 R&D사업을 통해 R&D자금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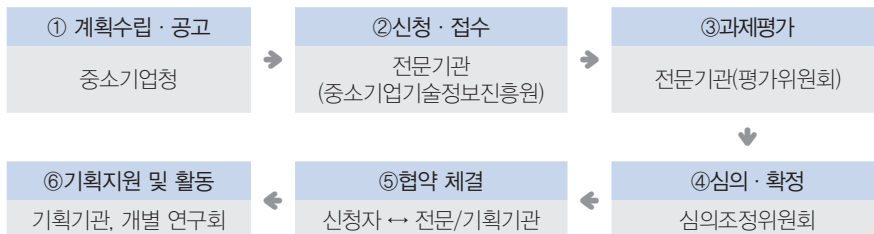
### 신청 · 접수

- '13.2월부터 온라인([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 접수

### 신청 서류

- 대면평가 시 다음의 서류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최근 1년간 재무제표(R&D기획지원, 개별기업기술로드맵지원)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 042-481-4436,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467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http://www.smba.go.kr)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의 경우 연계 지원되는 중기청R&D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R&D기획지원사업의 기획결과 우수한 과제는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이나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등으로 연계됩니다. '11년 사업의 경우 지원받은 133개 기업 중 92개 과제가 우수과제로 평가받아 2012년도 R&D사업으로 연계되었습니다.
- 선정기업의 기술기획활동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 '13년 기획활동 기간은 5개월을 부여하여, 내실있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용어 설명

- R&D기획지원사업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사전검증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전략 등을 수립·제공하는 사업
- 과제발굴연구회 지원사업  
조합·단체 등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 기술기획 활동을 통한 업계공통애로기술 및 유망기술과제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
-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중소기업 차원의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R&D전략을 수립·제공하는 사업



## 8-2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사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인력 활용을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인력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 인력의 양성, 채용, 외부 전문가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규모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 400명 내외(예산 50억원)
- 취업연계교육센터 지원사업 : 300명 내외(예산 20억원)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 : 80개 내외(예산 15억원)

### 지원 대상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취업연계교육센터 지원사업 : 이공계 대졸 예정자 및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①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신청기업, 대표자 포함)
- ② 중소기업기술개발 참여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 ③ 신청기업, 대표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제외)
  - ☞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 신규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 운영 보조금 지원(최대 2년, 2,400만원)
  - \* 단, 정부 지원금의 40%는 해당 인력에 대한 능력개발비용으로 사용 의무화
- 취업연계교육센터 지원사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이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교육(이론교육, R&D실습)하고, 취업을 연계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 중소기업의 융복합관련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연계하여 기술지도 실시(최대 1년, 2천만원)

### 신청 · 접수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 '13.3월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 중계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 37길 37 산기협 회관 이공계인력 중계센터)
- 취업연계교육센터 지원사업 : '13.3월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이노벨리 10동 202호)
-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 '13.3월부터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www.smtcs.or.kr](http://www.smtcs.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 초중급 기술개발인력과 취업연계교육센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www.smttech.go.kr](http://www.smttech.go.kr))정비에 따라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으니 세부사업 공고문 참조

### 신청 서류

- 대면평가 시 다음의 서류 확인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재학 및 졸업증명서(취업연계교육센터 지원사업)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 042-481-4402(초중급기술개발인력, 취업연계교육센터 지원사업), 기술개발과 : 042-481-4445(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608(초중급기술개발인력, 취업연계교육센터 지원사업)
- 한국산학연합회 : 042-720-3326(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02-3460-9084(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40(취업연계교육센터 지원사업)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02-769-6436(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http://www.smba.go.kr)
- 전화상담은 1661-1357(R&D 고객센터),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8-3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대학 · 연구기관 보유 연구장비 공동이용시 장비이용료 지원

대학 ·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애로를 해소하여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규모

1,800개사(전체 예산 184억원)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1,862개사 중 1,675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0.1억원

### 지원 대상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도입금액 1천만원 이상)를 10대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업력 5년 이하)과 일반기업(업력 5년 초과)으로 구분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의 부도, 휴 · 폐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및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등

### 지원 내용

- 대학 ·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R&D 목적으로 공동 활용시 장비이용료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최대 70%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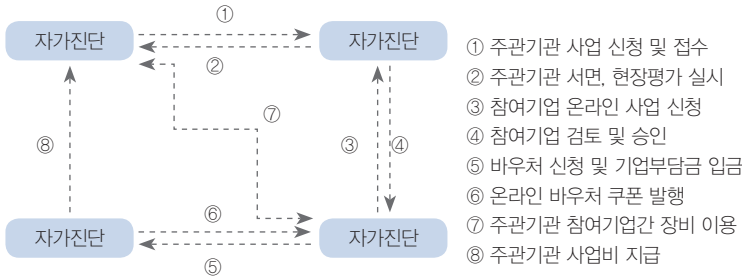
구분	대상	지원 한도
창업기업	• 업력 5년 이하 기업	70% 범위 내 1년간 최대 5천만원
일반기업	• 업력 5년 초과 기업	60% 범위 내 1년간 최대 5천만원

**신청·접수** '13년 1월부터 주관기관 신청 (참여기업은 자금소진 전 까지 연중 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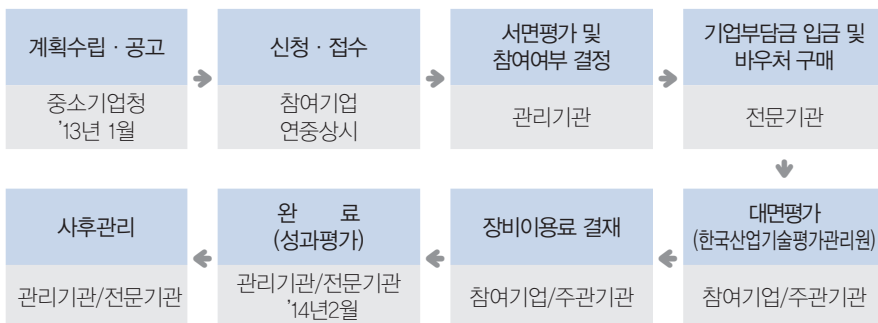
- 신청 요령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예비신청→신청하기→신청서작성

**신청 서류**

- 참여기업 : 사업 참여신청서 및 장비활용계획서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 042-481-4460, 4443
- (사)한국산학연합회 : 042-720-3300, 3350, 3358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 비즈인포(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바우처 구매 절차는 어떠한가요?**
  - ☞ 참여기업으로 승인된 업체는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종합관리시스템 → 온라인과제관리 → 연구장비사업관리 → 바우처 코너에서 신청 → 바우처 승인(전문기관) → 가상계좌 발급 → 기업부담금 입금 → 바우처 발행 → 연구장비 이용가능
- **필요한 연구장비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 주관기관, 지역, 장비명 등 다양한 검색어로 이용하고자하는 장비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연구장비사업관리 → 연구장비검색



## 용어 설명

- **주관기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연구장비를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 **바우처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연구장비 이용료를 대신하여 지불할 수 있는 온라인쿠폰 형태의 증서



## 8-4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장비 이용

지방중소기업청에 있는 시험연구장비 이용 지원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분야 시험연구 장비(RoHS, EMC, DDIC)를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제품의 품질확인, 신기술개발, 신제품개발 또는 품질개선 등 자체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장비 사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이용 장비

서울청을 제외한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보유장비

- EMC : 광주·전남청, 대구·경북청, 인천청
- RoHS : 광주·전남청, 부산·울산청
- DDIC : 서울청, 강원청을 제외한 11개 지방중소기업청(제주센터 포함)
- 일반시험 : 강원청, 제주센터
  - \* EMC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 전자파 적합성
  - \*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EU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로미네이트디비페닐(PBB), 폴리브로미네이트디페닐에테르(PBDE) 등
  - \* DDIC(Digital Design Innovation Center) : 디지털설계혁신센터로서, 제품설계, 디자인, 공학해석용 설비·프로그램 이용 제공

### 이용 방법

- 지방청 직원이 설비를 작동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설비를 작동하여 데이터 제공 또는 시험성적서 발급

- 단, 지방청의 설비 부재로 취약 중소기업(제조업 50인미만, 연매출 10억원 이하)이 협약시험검사기관 이용시 지방청에서 추천서 발급('14.9.30까지)
  - \* 협약기관(6개)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FTI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료시험연구원
  - \* 우대지원 : 협약기관 수수료의 20%할인 혜택

### 이용 수수료

2013.6.30일까지 한시적 무료(다만, 별도의 인증요건 유지를 위한 '설비사용계약' 등은 제외)

### 신청 · 접수

지방중소기업청(제주시시험연구센터 포함)에 신청

### 제출 서류

- 지방청 설비이용 신청서(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지방청 민원실 활용)
- 자체 연구개발계획서, 공문 등의 기타 증빙서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이용 방법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고시번호 제2011-21호(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신청서[별지1호서식]
  - \* 시험검사기관 이용 추천 신청서(지방중기청 홈페이지 및 지방청 민원실 활용)

### 처리 절차

이용 협의	• 시험장비 사용일정 등에 관해 지방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
이용 신청	• 지방청 민원실에 비치된 설비사용 신청서 작성
사전 교육	• 직접 사용시 설비 작동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장비담당자의 간단한 교육
장비 사용	• 직접 사용시 장비담당자 입회 하에 사용자가 설비 이용
장비 점검	• 장비 사용 후 장비담당자가 설비 이상유무, 작동상태 등 점검 •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설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상회복하거나 손해 배상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 042-481-4452, 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 비즈인포(www.bizinfo.go.kr)

## 중기만이 뒀다!

### 우수지원사례 - 시험연구장비 이용 지원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R사는 LED 조명을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청의 전자파 측정장비(EMI, EMS)를 15여 차례 이용 후, 문제점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아 전자파 국내인증(KC, 고효율 기자재) 및 해외규격(IEC) 인증을 획득하여 매출증대 6억원, 시험비용절감 20백만원, 개발기간 4개월 단축 등의 효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 8-5 뿌리산업 기술협력 강화사업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 대상 기술지도 및 교육 지원

중기청과 대기업 및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뿌리산업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규모** 기술지도 120개사, 교육인원 1,000명

\* '12년 지원현황 : 기술지도 120개사, 교육인원 1,000명

**지원 대상**

- (뿌리산업 맞춤형 현장애로 기술지도)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뿌리기업 중 2·3·4차 협력사 및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 우선지원)
- (뿌리산업 기술협력 아카데미)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자 및 취업희망자
-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뿌리산업 관련분야 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미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뿌리산업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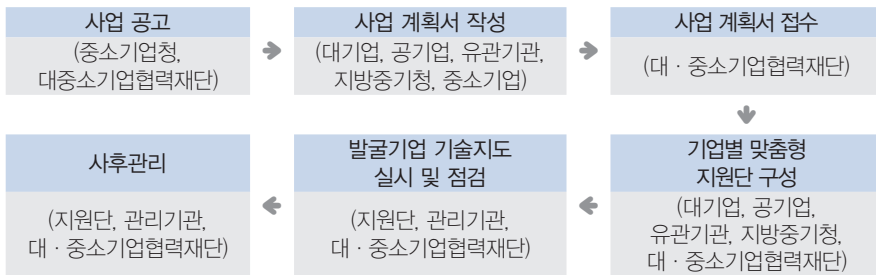
- 영세한 뿌리산업에 현장 애로 기술지도,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향상 아카데미 및 현장 방문 교육,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 세부사업 내역

구분	내용
뿌리산업 맞춤형 현장애로 기술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도가 필요한 중소기업 발굴</li> <li>•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도</li> </ul>
뿌리산업 기술협력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향상 아카데미 운영</li> <li>• 뿌리산업 현장방문 맞춤형 교육 운영</li> </ul>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li> <li>• 신규인력이 필요한 협력사 등을 발굴 및 취업 지원</li> <li>• 양성인력 인력채용 간담회 운영</li> </ul>

**신청 · 접수**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제출 서류** 기술지도 신청서, 사업계획서, 아카데미 개설 신청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 042-481-4459
-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66~8  
(jhkim@win-win.or.kr, yhh@win-win.or.kr, lws@win-win.or.kr)



**궁금해요 ! 중기맨**

- **뿌리산업 맞춤형 현장애로 기술지도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 ☞ 협력사 기술지도를 희망하는 위탁기업(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유관기관, 조합 등)이 협력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이 개별 신청합니다. 컨소시엄 구성시 1~4차 협력사 구성비는 업종 특성, 위탁기업의 협력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뿌리기업 중 2·3·4차 협력사 및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 8-6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뿌리강소기업으로 육성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정 대상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업 중 전문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뿌리기업 :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하인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 전문기업 요건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6개 항목 평가 (70점 이상/100점)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6개 항목 평가 (70점이상/100점)
- 품질관리수준 : 품질인증, 품질개선 활동 등 3개 항목 평가 (25점이상/40점)

## 우대사항

- 기술개발, 자동화·첨단화, 경영안정 자금, 인력 등 지원 우대

지원사업	우 대 사 항	소관부처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융합원천R&amp;D 등 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li> <li>• 사업 선정평가시 가점(1점) 부여</li> </ul>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자동화·첨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속공정자동화구축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li> </ul>	지식경제부
경영안정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뿌리산업 이행보증사업’ 우대 지원</li> <li>• 신성장기반자금의 시설·운전자금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자한도 확대(50억원→70억원)</li> <li>* 초기가동비(시설자금) 지원 확대(30%→50%)</li> </ul> </li> </ul>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인력 공급·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기능요원 배정업체 추천시 가점(10점) 부여</li> <li>•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우선지원</li> </ul>	중소기업청
자금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뿌리기업 명가’ 선정 평가시 가점(3점) 부여</li> </ul>	지식경제부

## 신청·접수 연중 상시

- 뿌리기술전문기업 홈페이지(www.root-tech.org)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 평가시 특허, 재무제표,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서류 등 증빙서류 확인

## 신청 서류

- 품목기술 설명서, 뿌리산업 매출액 확인서
  - ※ 온라인 자가진단시 뿌리산업 확인
- 전문기업 지정신청서, 기업현황조사표, 매출액명세서 및 정보공개 동의서
  - ※ 홈페이지(www.root-tech.org)에서 현장평가 신청시 온라인 등록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 042-481-4459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root-tech.org](http://www.root-tech.org)) : 031-436-8097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2013년 지원시책」 참조



## 궁금해요! 중기맨

- 뿌리기술 전문기전문기업 또는 뿌리산업에 대해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www.root-tech.org](http://www.root-tech.org) :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관련 절차 및 기타 필요사항
  - [www.kpic.re.kr](http://www.kpic.re.kr) :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지원사업, 기타 자료



## 8-7 의료기기 비교임상 및 성능평가 지원사업

임상시험과 성능평가를 통한 내수 및 수출시장 확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의료기기와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과의 품질·성능을 비교·평가 하여 국산 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 20개사 내외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45개사 중 2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7,500만원

**지원 대상**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으로 제조허가 및 품목허가 기업

\* 영상진단, 생체신호, 치료기기, 치료재료, 치과용 의료기기 등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사업목적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컨소시엄 구성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업의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 경우 등은 지원제외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과제당 최대 1억원 지원(정부 75%이내, 민간 25%이상)

구분	내 용	지원 한도
비교임상시험	선진국 글로벌 브랜드 제품과 품질 및 성능에 대한 비교임상시험 소요비용 지원	1억원
비교성능평가	의료기기 품질 및 신뢰성 평가 등을 통해 부품 및 의료기기 자체의 성능 및 문제점 파악 등 객관적 입증자료 도출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1억원

### 신청·접수

- 우편·방문 제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연구개발팀
- 주소 : (133-834)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3동 289-9 덕산빌딩 7층  
 ※ 사업계획서 신청 방법 : <http://www.medinet.or.kr>→공지사항→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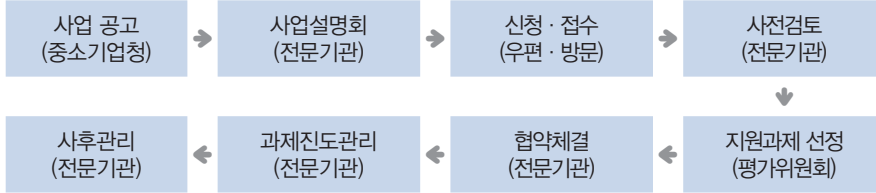
### 심사·평가 주요내용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사업분야(50)	사업타당성 : 사업목표,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등이 타당하며 제품의 기술력 여부	15
	시장매력도 : 분명한 관련 목표시장을 정의하고 있으며, 판로확보 가능성 여부	10
	파급효과 : 수입대체,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부	15
	시급성 :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지 여부	10
추진계획 및 전략(40)	세부사업 추진 계획 : 비교임상 또는 성능평가 등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추진 방법 및 전략이 제시 되었는지 여부	35
	추진일정 : 추진일정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한지 여부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10)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사업수행 후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10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참여의사 확인서, 품목허가증 사본 1부, 참고문헌, CD 1매

### 처리 절차



\* (전문기관)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01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연구개발팀) : 02-467-0350(내선2)



### 궁금해요! 중기맨

- **결과물이 비교제품보다 열등하게 나온다면 사업실패 또는 사업비를 환급하나요?**  
 ☞ 결과물이 열등하더라도 성적서를 통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품성능 개선을 위한 RFP도출 및 R&D연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실패가 아닙니다.



### 용어 설명

- **비교임상시험**  
 우월성 검증 또는 비열등성 검증을 통해 의료기기의 상대적인 우수성, 유효성 및 열등하지 않음을 검증
- **비교성능평가**  
 환경조건에 따른 의료기기 신뢰성, 정확도, 우수성 등 문제점 분석·증명 및 사용자 관점을 고려한 비교시험 지원



## 8-8 의료용 전기기기 국제인증사업

IEC 60601-1 제 3판 규격에 대한 기술지도와 시험검사

강화된 유럽인증규격(CE)에 준비가 미흡한 수출의료기기 기업들의 사전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IEC 60601-1 제3판에서 요구하는 문서 작성 및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규모 35개 업체 내외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77개사 중 3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3,000만원

### 지원 대상 전기·전자 의료기기 수출 중소기업

\* 영상진단, 생체신호, 치료기기, 재활복지 의료기기 등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시범품목에 따라 업체당 최대 4,000만원 지원 (총 소요비용의 75%이내, 업체부담금 25%는 현금부담)

#### • 품목구분 및 지원액

(단위:백만원)

품목구분	대 상 품 목	지원액
단순기기 (Si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규격 및 일부 보조규격만을 적용하는 제품</li> <li>* 품목 : 내시경 광원장치, 의료용 흡인기, 체지방측정기 등</li> </ul>	20
중간기기 (Mode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규격, 보조규격 및 개별규격(1개)만을 적용하는 제품</li> <li>* 품목 : 전기수술기, 심전계, 레이저 조사기 등</li> </ul>	30
외국인근로자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규격, 보조규격 및 개별규격(2개 이상)을 적용하는 제품 또는 제품의 모듈이 2개 이상인 품목</li> <li>* 품목 : 환자감시장치, 초음파영상진단장치, X-ray, MRI 등</li> </ul>	40

● 지원항목별 지원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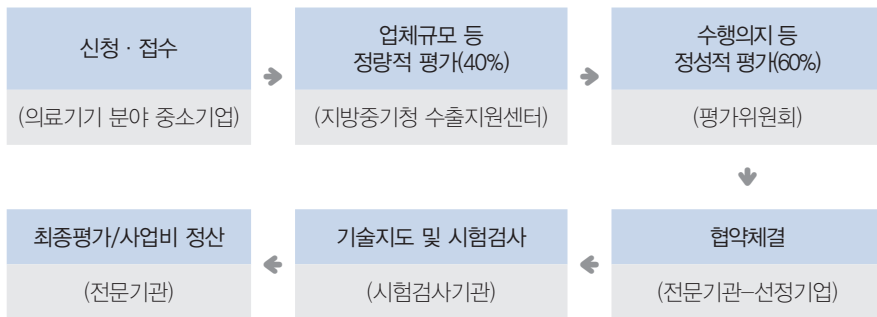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지원액 비율(%)	
		단순	중간,복잡
기술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EC 60601-1 3판 지도 및 문서작성</li> <li>* 공통사항</li> <li>* 위험관리 및 밸리데이션</li> <li>* 사용 적합성</li> </ul>	30	30
시험지원	• IEC 60601-1 3판 공통기준규격 시험	70	35
	• IEC 60601-1 3판 개별기준규격 시험	-	35
합 계		100	100

\* 지원항목 간 지원액 비율은 지도위원 ↔ 시험검사기관 간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신청·접수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인증 신청]->[의료용전기기기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처리 절차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업협력센터 : 02-860-1314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http://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의료용전기기기국제인증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은 어느 시점에 기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 선정되신 기업은 협약체결 이전에 총 지원금의 25%의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하며 협약체결 시 입금증을 첨부하여야합니다. 기업부담금은 현금납부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업이 전문기관과 시험검사기관을 선택가능한가요?
  - ☞ 전문기관은 중기청에서 지정(현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하며 시험검사기관은 사업 신청 시 선택 가능합니다.



## 용어 설명

- 평가위원회  
동 사업의 수행기업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와 사업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수행하는 위원회
- 전문기관  
중소기업청장이 동 사업에 대한 선정 및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관
- 시험검사기관  
식약청 등록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을 말하며, 사업수행 기업의 기술지도 및 시험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 09

## 정보화 지원 및 기술유출 방지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9-1 경영혁신 플랫폼기반 정보화지원 · 189
- 9-2 생산현장 디지털화 · 191
- 9-3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지원 · 194
- 9-4 기술유출 방지 · 196



## 9-1 경영혁신 플랫폼기반 정보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新T 기반 정보화솔루션 지원

중소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혁신을 위해 경영혁신플랫폼에 기반한 기업정보화 솔루션을 개발·제공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000개사(전체 예산 69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한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지원내용

- 개별 중소기업 또는 조합(단체) 등 동일·유사업종군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지원 솔루션(그룹웨어, 회계·인사·구매·자재·생산관리, 수·출입관리 등)을 발굴·개발하여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중소기업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솔루션 구축·유지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및 교육, 컨설팅도 지원 예정

**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

\* 신청방법은 플랫폼구축 이후 별도 공고 예정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 042-481-4400, 440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 02-3787-0471, 0473, 0481





## 9-2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중소기업 생산현장 정보화를 위한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생산공정의 비효율적인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업별 맞춤형 정보 시스템(POP, MES 등) 구축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20개사(전체 예산 70억원)

\* '12년 지원현황 : 129개사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제조 관련 설비를 2대 이상 보유한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상의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 \*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접합)에 해당하거나, 이와 연관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한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우대사항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각 2점)
- \* 가점은 참여기업에게만 적용하고 최대 5점, 2개까지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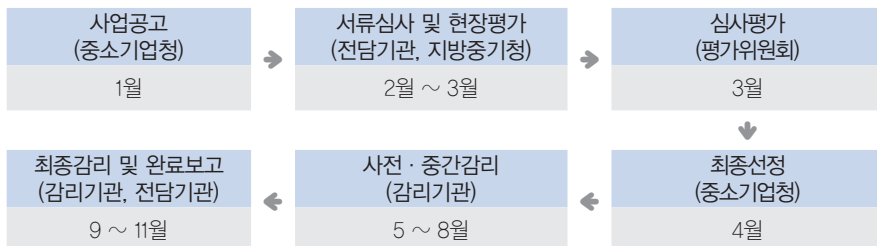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신규) 동 사업을 통한 정보시스템구축 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6,000만원)
- (개선)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또는 활용도 제고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4,000만원 1회에 한함)

### 신청·접수

- 기간 : '13. 1 ~ 2월중
-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b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ba.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 042-481-4400, 440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 02-3787-0474, 0478



## 용어 설명

-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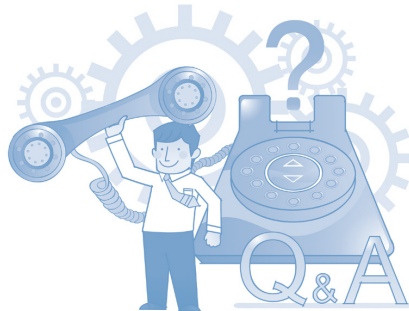
실시간 제조생산시점 관리 시스템으로 생산계획 및 작업지시에 따라, NETWORK를 통하여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 또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집계, 조회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계획대비 실적, 재고, 재공, 불출, 품질정보, 설비가동 정보 등의 라인별 공정별 생산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집계, 분석,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제조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 물류, 및 작업내역추적관리, 상태파악, 불량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현장에 국한 시키지 않고 On-line System을 이용하여 계층간 구성 요소들을 상호 교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이용자가 사용방법과 기호에 맞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정하거나 기능을 변경하는 것





## 9-3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중소기업 원산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지원

FTA 발효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원산지증명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200개사(전체 예산 20억원)

\* '12년 지원현황 : 134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한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우대사항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5점)
-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각 2점)
  - \* 가점은 참여기업에게만 적용하고 최대 2개까지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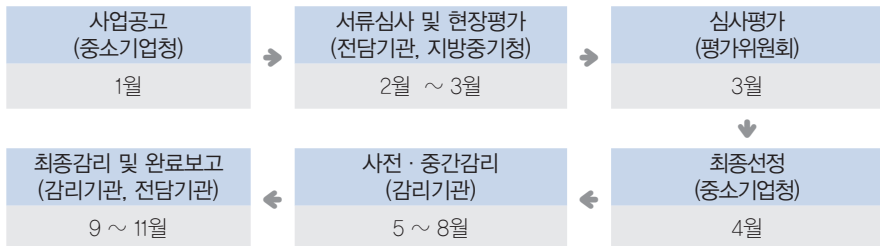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
  - \* ERP 등 정보시스템과 FTA-PASS, FTA-KOREA 연계모듈 구축, 1인용 PC형 버전을 다중 사용자용 서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서버일체형 시스템 구축 등

### 신청·접수

- 기간 : '13. 1 ~ 2월중
  -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b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ba.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 042-481-4400, 440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 02-3787-0474, 0478



## 9-4 기술유출 방지사업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상담 등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보호상담, 기술자료임치, 기술지킴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 1. 기술보호상담

#### 지원내용

-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대응 등을 위해 보안(기술) 진단, 법률, 신고·수사 등 분야별 전문상담 지원(기업당 최대 10일, 3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예산소진 시까지)

- \* 중소기업 기술보호통합사이트([www.tpcc.or.kr](http://www.tpcc.or.kr))를 통해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 042-481-4400, 440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 02-3787-0472, 0477

## 2. 기술자료임치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에 등록·보관함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임치기업의 도산·폐업 시 사용기업의 안정적인 기술 사용을 보장
  - \* 내부 임직원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개발기업은 임치물을 통해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 입증 가능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타 업체의 모방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에게 핵심 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IT)을 정부에 납품·용역하는 기업

### 임치대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영업비밀)
  - \* 단, 임치기업은 기술임치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신규 30만원/1년, 갱신 15만원/1년)

### 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

- \* 중소기업 기술보호통합사이트([www.tpcc.or.kr](http://www.tpcc.or.kr))를 통해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 042-481-4400, 4405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760, 8762

### 3. 기술지킴서비스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전산망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E-mail, USB 등)을 통한 기술유출이나 해킹, DDoS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지 및 대응 지원
  - \* 보안취약점 파악 등을 위한 보안수준 사전점검, 24시간×365일 실시간 네트워크 관제 및 트래픽 이벤트 등 취합·분석·평가, 보안사고 발생시 원인분석·대응솔루션 제공·현장대응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 기술부설연구소(또는 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국가 R&D 참여 중소기업, 기타 산업기술 보유 중소기업 등

#### 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

- \* 중소기업 기술보호통합사이트([www.tpcc.or.kr](http://www.tpcc.or.kr))를 통해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 042-481-4400, 4405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 02-3489-7051, 7053

## 4.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 \*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솔루션 등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한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신청·접수

- 기간 : '13. 1 ~ 2월중
  - \* 중소기업 기술보호통합사이트([www.tpcc.or.kr](http://www.tpcc.or.kr))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기술보호통합사이트([www.tpcc.or.kr](http://www.tpcc.or.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 : 042-481-4400, 4405

---

## 4부. 인력지원



S M A L L   A N D   M E D I U M   B U S I N E S S   A D M I N I S T R A T I O N

#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찾아드립니다.

<b>10</b>	<b>현업에 곧바로 활용하는 인재 교육</b>	<b>204</b>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 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 후 중소기업 채용 지원	205
	기술사관 육성 ·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	208
<b>11</b>	<b>재직자 직무교육 및 인력유입 촉진</b>	<b>210</b>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학위 취득 지원	211
	연수업체 인증 · 청년층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 및 취업기회 제공	214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취업지원 · 현장체험 등을 통해 취업 지원	217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특별공급 · 5년이상 근무시 국민주택 등 공급	220

- 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과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인력난 완화 및 취업을 지원 합니다.

사업명	사업내용	신청대상	예산(억원)
▶ 현업에 곧바로 활용하는 인재교육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이 특성화 고등학교와 연계해 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	특성화고 중소기업	270
기술사관 육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5~6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혁신형 전문인력을 체계적 양성	특성화고 전문대학교	48
▶ 재직자 직무교육 및 인력 유입 촉진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학위과정을 개설운영	중소기업 재직자	66
연수업체 인증제	특성화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지원, 우수기업은 연수업체로 인증	중소기업	12
북한이탈주민중소기업 취업 지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채용박람회, 중소기업 현장체험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지원	중소기업 북한이탈주민	10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특별공급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무자(무주택세대주)에게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주	-



###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인력지원 Q&A

- Q. 중소기업으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고 싶는데 중소기업 현장에 특성화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맞춤 인력을 교육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 A.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뿌리산업, 신성장 등 제조업 분야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특성화 전략이 분명하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 및 교육중인 특성화고를 선정하여 해당학교 특성화 분야별 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체업학습, 취업맞춤반, 1팀-1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기업이 필요한 기능을 재교육 없이도 즉시 현장투입이 가능하도록 교육 받고 있습니다.

Q. 뿌리산업 분야에 중시하는 중소기업인데 제조공정상에 간단한 결함을 자체적인 프로젝트로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시 특성화고 등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서는 1팀-1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구되는 공정개선, 제품 디자인, 신규 개발 아이템 일부분의 시제품 제작 등 특성화고 학생이 해결 가능한 수준의 과제를 기업, 교원, 학생 등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해결·개선하는 것으로 참여기업은 기업현장의 간단한 시제품 제작, 애로 등을 자체 해결할 수 있으며, 참여학생은 기업에서 요구되는 기본 소양기술을 사전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Q. 계약학과는 어떤걸 가르치는 학과인가요?

A.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이들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정규 학과를 말합니다. 크게 계약에 따라 졸업 후 정해진 기업에 취업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구분됩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경우 현재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운영중입니다.

Q.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참여하고 싶은 직장인인데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나요?

A.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의 제조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관련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중이셔야 하며,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되셔야 합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 외 자의적인 퇴사의 경우 재적처리 되오니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Q.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학생입니다. 특성화고 졸업 후 협약 대학으로 진학해야 되나요?

A. 기술사관 육성사업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을 연계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성화고 졸업 후 협약대학의 해당학과로 진학해야 됩니다. 또한, 전문대학 졸업 후에는 협약된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Q.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기술사관 사업에 참여하여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단과 협약된 기업은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참여학생을 채용한 경우에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되며, 참여학생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적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Q. 연수업체 인증제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혜택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연수업체 인증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교육시설 및 실습장비 구축을 위한 교육인프라 지원, 실습생 및 연수전담인력의 인건비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실습재료비 등의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를 거쳐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융자조건완화 및 중소기업 R&D 사업 등에 참여시 가점을 부여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특별분양은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건설업에 중시하는 데 업종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현재 지원대상업종이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관련 규정개정 등을 통해 서비스업종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13년 하반기중) 따라서, 대상이 확대되면 건설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0

## 현업에 곧바로 활용하는 인재 교육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0-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 205

10-2 기술사관 육성 · 208



## 10-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특성화고생 현장 맞춤형 교육 후 중소기업 취업 연계

중소기업이 특성화 고등학교와 연계해 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여 최소 2년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특성화고생 150,000명(전체 예산 270억원)

\* '12년 지원현황 : 특성화고생 69,000명 교육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부동산업 등 일부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대상
- 특성화고 : 제한 없음(단, 정부부처 특성화고 제외)
- 학생 : 특성화고생(1~3학년)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부동산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지 원 한도
특성화고	• 교과과정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교사기술연수비 등 지원	1.2억 ~1.8억 이내
학생	• 교육훈련비 및 훈련수당 • 중소기업 취업기간 중(24세 까지) 군 입영연기,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등	1인당(120만원) 훈련비 지원

### 신청·접수

- 중소기업 : '13. 2 ~ 3월 (<http://sanhakin.smba.go.kr>)
- 특성화고 : '13. 1 ~ 2월 (<http://sanhakin.smba.go.kr>)

### 신청서류

- 중소기업 :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 특성화고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신청 서류는 특성화고 인력양성 홈페이지([sanhakin.smba.go.kr](http://sanhakin.smba.go.kr))에서 다운로드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465/4539
-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시스템([sanhakin.smba.go.kr](http://sanhakin.smba.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역산업분야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전문기능인력 양성의 종합지원을 말하며 이를 위해 특성화고에 학교별 특성화 운영프로그램 개발지원, 산업체 현장체험,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중소기업관, 건전한 직업의식 확립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협약 기업에 채용하는 취업맞춤반 운영은 무엇인지요?

☞ 취업맞춤반 운영은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기업의 요구 → 학교 맞춤교육 → 학생 훈련실시 3자 협약을 통해 일련의 맞춤교육프로세스를 완료 후 해당기업에 바로 취업을 연계하며, 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를 반영하고, 기술인재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10-2 기술사관 육성사업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중소기업 중간 기술인력 양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5~6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혁신형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기술사관 육성사업 18개 사업단(전체 예산 96억원)

\* '12년 지원현황 : 18개 사업단 2,210명 교육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부동산업 등 일부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대상
- 사업단 :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사업단
- 학생 : 사업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학생 및 전문대학생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부동산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지원 내용

분야	내용
학교	• 교과과정 개발비, 강사비, 연수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
학생	• 직업교육, 졸업후 협약기업 취업 등
기업	•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전문인력 확보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465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3년 지원시책」 참조



## 궁금해요! 중기맨

-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협약 대학으로 진학해야 되나요?
  - ☞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협약되어 있는 대학 및 해당학과로 진학을 해야 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 기술사관육성사업 졸업자가 협약기업으로 취업할 경우 산업기능요원편입에 우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술사관 개설 현황

	기술사관육성 18개 사업단(전문대 18개 + 특성화고 37개)	
	전문대학(학과)	특성화고등학교
1	삼육보건대학교(의료정보시스템)	은평메디텍고, 영광여자메디텍고
2	동의과학대학교(컴퓨터응용기계)	동의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공고
3	부산과학기술대학교(전자통신)	대양전자정보고, 부일전자디자인고
4	영남이공대학교(기계)	경북공고, 대중금속공고, 대구서부공고
5	대덕대학교(정밀기계공학)	충남기계공고
6	울산과학기술대학교(환경생활화학)	울산공고
7	경기과학기술대학교(금형디자인)	부천공고, 평촌공고, 산본공고
8	두원공과대학교(기계)	안성두원공고, 시화공고, 삼일공고, 김포제일고
9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동통신)	서울북공고, 리라아트고, 서울디지털고, 상일미디어고
10	충청대학교(디지털전자통신)	충북전산기계고, 증평공고, 충북공고
11	공주영상대학교(영상연출)	공주정보고
12	청암대학교(신재생전기제어)	순천공고
13	구미대학교(컴퓨터정보전자)	흥해공고, 상산전자고
14	창원문성대학(기계설계)	창원공고
15	제주관광대학교(메카트로닉스)	한림공고
16	순천제일대학교(자동차기계)	광양실업고, 여수공고
17	백석문화대학교(스마트폰미디어)	천안천일고
18	경남정보대학교(전자정보)	금정전자공고, 부산디지털고

# 11

## 재직자 직무교육 및 인력유입 촉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 211
- 11-2 연수업체 인증제도 운영 · 214
- 11-3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취업지원 · 217
- 11-4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 220



## 11-1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학위 취득 지원

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및 선취업 후진학 지원을 위해 주말·야간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규모

중소기업 재직자 1,200명(전체 예산 66억원)

\* '12년 지원현황 : 21개 학과 1,011명 교육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고교 및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소속기업 등이 추천하는 자
  - \* 5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등 우선 선발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부동산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지원 내용

계약학과 설치·운영비의 70% 이내 정부 지원

\* 나머지 30%는 참여 학생 또는 소속기업 등에서 부담하되, 소속기업 또는 사업주 단체가 반드시 일정액(15% 이상)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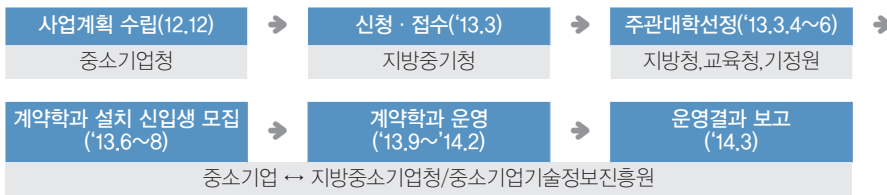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신규 개설하는 학과 : 대학과 기업(재직자)이 매칭하여 11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신청('13. 3월경)
- 기존 개설된 학과 : 기업(재직자)이 28개 대학 및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매년 12월~2월경)

## 신청서류

- 중소기업 : 참여기업 신청서 및 입학추천서
  - 대학 : 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 신청 서류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서 다운로드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4471
- 각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3년 지원시책」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증기맨

- 참여하고 싶은 직장인데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나요?
- ☞ 상시종업원 5인 이상의 제조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관련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중 이셔야 하며,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되셔야 합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 외 자의적인 퇴사의 경우 재적처리 되오니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어 설명

- 계약학과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이들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 분야의 정규 학과를 말합니다. 크게 계약에 따라 졸업 후 정해진 기업에 취업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직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구분됩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현재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운영중입니다.

###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설 현황

(2012년 기준)

지역	주 관 대 학	학 위	개 설 학 과
서울	한성대학교	석 사	융합기술학
	인덕대학	전문학사	에너지시스템
부산 울산	부산대학교	석 사	기계부품시스템학
	동아대학교	학 사	산업공학
	부경대학교	학 사	기계IT융합시스템
대구 경북	경일대학교	석 사	메카트로닉스공학
	영남이공대학	전문학사	로봇메카트로닉스
	대구대학교	학 사	IT융합
광주 전남	전남대학교	석 사	전기전자컴퓨터공학
	남부대학교	학 사	의료공학
	조선이공대학교	전문학사	하이테크 CAD/CAM
경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 사	전자제어공학
	두원공과대학	전문학사	융합비즈니스솔루션
	경기과학기술대학	전문학사	신소재나노융합
인천	재능대학	전문학사	표면처리
대전 충남	충남대학교	석 사	산업시스템공학
	공주대학교	학 사	반도체기계공학
강원	상지대학교	석 사	응용전자공학
	관동대학교	학 사	에너지플랜트
	한라대학교	학 사	컴퓨터신소재
충북	충북대학교	석 사	나노반도체공학
	한국교통대학교	학 사	IT융합응용
전북	전주대학교	석 사	탄소나노부품소재공학
	전주비전대학교	전문학사	그린수송기계시스템
경남	경상대학교	석 사	기계시스템공학
	한국국제대학교	학 사	그린수송시스템
	마산대학	전문학사	전기신재생에너지
	양산대학교	전문학사	IT융합기계



## 11-2 연수업체 인증제도 운영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현장실습비 25백만원 한도 내 지원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특성화고·대학생 등 미취업자에게 현장실습을 통한 직장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 우수 기업은 연수업체로 인증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35개사 내외, 현장실습생 100명 내외('13년 예산 12억원)

### 지원 대상

- 정부·지자체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중 연수내용과 연수환경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대학생 등 미취업자 중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

\* '취업하고 싶은 기업(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주관)' '일하기 좋은 으뜸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 등에서 선정한 우수기업과 연계·운영

### 지원 내용

현장실습생 규모에 따라 업체당 2,500만원 한도 내 지원

- \* 업체당 현장실습생 규모는 최대 5명 범위 내 운영
- (현장실습업체 지원) 현장실습기간 1개월 미만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 인건비(월 최대 80만원 한도) 전액,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은 최대 50%(월 최대 40만원 한도)까지 지원
- (전담지도자 인건비 및 멘토수당 지원) 현장실습생 전담지도자 배치시 인건비(최대 3개월간 270만원) 및 멘토수당(최대 3개월간 30만원) 지원
- 현장실습과정 및 현장실습터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현장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업체당 4백만원 한도 내 지원
- 교육공간 등 현장실습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업체당 10백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
- 연수업체 인증업체 : 정책자금 용자, R&D, 해외판로, 공공구매 등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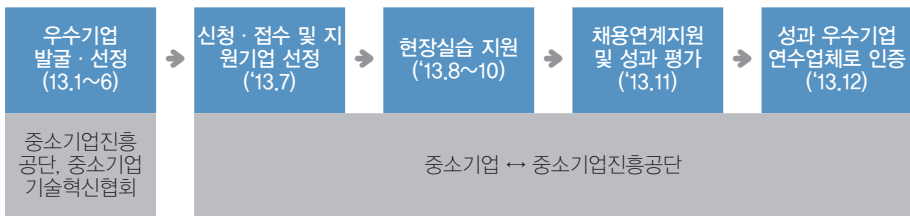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우수 중소기업 발굴·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994),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61)
- (현장실습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994)
- (연수업체 인증)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994)

### 제출 서류

- 신청서(연수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 상세 서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정보광장 → 각종서식에서 확인 후 첨부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042-481-4369)
-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994)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61)



## 궁금해요! 중기맨

### • 「연수업체 인증제」란 무엇입니까?

☞ 「연수업체 인증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 2(연수업체 인증 등) 및 제18조의 3(연수업체 인증 취소)에 따라 정부에서 현장연수에 적합한 우수 중소기업을 연수업체로 인증하여 교육-훈련-취업간 연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 (인증업체 지원) 현장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 (인증 유효기간) 3년
- (인증 취소 기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경우, 1년 이상 연수 실적이 없는 경우 등
- (인증 취소 절차) 중앙·지자체·해당기업 통보 및 중기청 홈페이지 공지
- (인증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기본요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인적 및 교육여건) 기술·기능 등 지식 전수를 위한 현장연수 전담인력 및 현장 교육·연수 및 취업 촉진 프로그램이 적절할 것
  - (물적요건) 효율적인 현장연수 업무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등 보유할 것
  - (실적요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한 현장연수 참여 실적 보유할 것





## 11-3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북한이탈주민의 중소기업 취업을 통한 인력난 해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채용박람회, 중소기업 현장체험 등 취업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200개사, 350명 취업 목표 (전체 예산 10억원)

\* '12년 지원현황 : 162개사, 275명 취업 ('12.11월말 기준)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북한이탈주민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소비·향락업체나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고용보험 미가입 및 고용보험 체납 사업장

###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하나원생 및 사회진출자에 대한 경제교육, 채용박람회, 중소기업 현장체험 등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
- 세부내역

분야	내용	예산규모
하나원생 경제교육 및 채용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원생 경제교육(13회)</li> <li>• 하나원생 채용박람회(6회, 180개사)</li> </ul>	3.0억원

분 야	내 용	예산규모
사회진출자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순회 중소기업 이해교육(22회, 880명)</li> <li>• 채용박람회 개최(22회, 220개사)</li> <li>• 중소기업 현장체험(250개사, 500명)</li> <li>• 채용기업 멘토지정 및 교육 제공(4회, 160명)</li> </ul>	4.5억원
채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우수사례 발굴 홍보</li> <li>• 북한이탈주민 취업사이트(<a href="http://www.nkjob.or.kr">www.nkjob.or.kr</a>)를 통한 상시취업 알선 지원</li> <li>• 경찰청, 하나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li> </ul>	2.5억원

###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접수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사업 홈페이지([www.nkjob.or.kr](http://www.nkjob.or.kr))에 접속하여 상기 사업 중 모집기간 내 온라인 신청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에 신청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처리 절차



- 하나원생 경제교육 및 채용박람회 : 매월(채용박람회는 격월)
- 사회진출자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 매월 2~3회 개최
- \* 전국순회 중소기업 이해교육 → 채용박람회 → 중소기업 현장체험 → 취업연계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493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02-2124-3381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2013년 지원시책」 참조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사업 홈페이지([www.nkjob.or.kr](http://www.nkjob.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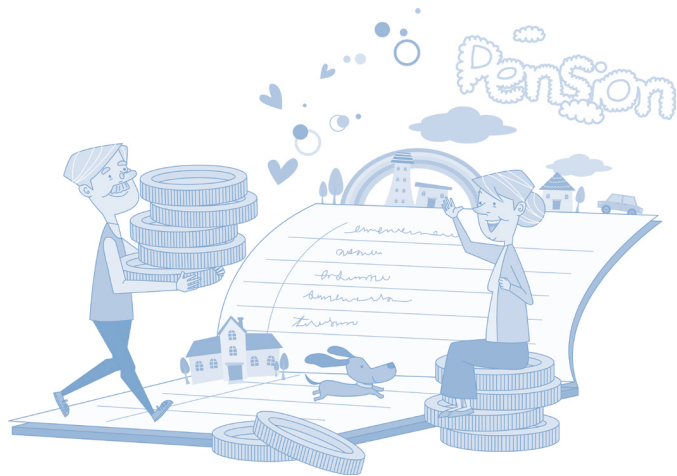
### 궁금해요! 중기맨

-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나요?  
 ☞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내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최대 3년까지 고용지원금(임금의 1/2내에서 최대50원~70만원)을 지원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용어 설명

- 하나원생 이란?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12주간의 사회적응교육(기초직업훈련 포함)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 사회진출자란?  
 하나원에서 교육수료 후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 11-4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주택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을 우선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500호 내외(주택공급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12년 지원현황 : 500호 확보 · 공급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단, 대표이사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부동산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유의사항

- 근무기간 산정시 전 직장경력을 포함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가능해야 함
- 분양주택의 경우 3년간 매매 · 증여 · 임대 등 불가(상속 · 저당 제외)
-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보유사실 은닉, 서류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

### 지원 내용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 분양 또는 임대

### 신청·접수

연중 수시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 우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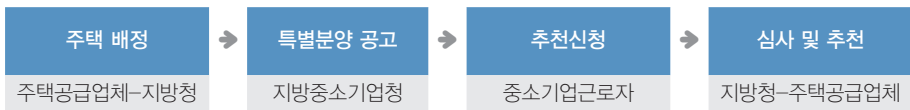
- 소기업 재직 근로자 별도 점수 부여
- 제조기반업종(뿌리산업)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등은 평가 우대

### 신청 서류

신청서, 서약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경력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424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 궁금해요! 중기맨

-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공급은 몇 번 신청 및 공급이 가능한가요?  
☞ 주택특별공급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규칙」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천이 되었더라도 사정상 주택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5부. 판로 지원

S M A L L A N D M E D I U M B U S I N E S S A D M I N I S T R A T I O N

# 전방위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b>12</b>	<b>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 제도</b>	<b>227</b>
	직접생산 확인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기관 납품 자격	228
	계약이행능력심사 · 예정가격의 85% 이상 낙찰가격보장	231
	적격조합 확인제도 · 영세 중소기업에 공공기관 입찰 참여자격 부여	233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제도 · 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기회 확대	235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중소기업만 수주하는 공공구매	237
	공공구매론 · 공공기관 낙찰 중소기업에 생산자금 대출지원	240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공공구매 시장 진출의 길라잡이	242
<b>13</b>	<b>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b>	<b>244</b>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10% 이상	245
	성능인증제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도록 인증 부여	247
	성능보험제도 · 납품한 기술개발제품 문제 발생시 손해배상	249
<b>14</b>	<b>마케팅, 홍보지원</b>	<b>250</b>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 언론매체, 인터넷 등 활용 1천여 제품 소개	251
	구매상담회 지원 · 국내 구매상담회 개최 및 참가 지원	254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 전국적 지점망을 이용하는 A/S 연계 시스템	257
	공동상표 지원 · 브랜드 인지도 높이는 공동상표 개발 · 홍보	260
	마케팅 기반 조성 · CEO 대상 맞춤형 마케팅 실전 교육	262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 소모성자재 종합 판로지원	265

-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납품제도 운영과 마케팅 활동 기반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 합니다.**

사업 및 제도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직접생산확인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액수의 계약 등에 참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일정한 납품가격 이상을 보장
적격조합확인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참여하는 조합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 지원
조합추천 소액수계약제도	공공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수주활동 지원
중기간경쟁 의무화 · 공사용자재직접구매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에 포함하고자 하는 조합 또는 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 지정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선급금을 제외하고 80%까지 대출 가능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공구매에 대한 정보획득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공공 입찰정보, 공공구매제도 안내 및 신청 등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하고 공공구매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
성능인증제도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성능인증
성능보증제도	기술개발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성능보증을 통해 문제 발생시 피해보상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제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지원
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지원	구매상담회 개최 단체 · 협회, 대형유통업체와 연계를 원하는 중소기업	상담회 개최 비용 지원 및 상담회 · 판매전 시행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독자적인 A/S망을 구축하기 힘든 중소기업	최대 3년간 공동 A/S센터 지원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공동상표를 도입 · 홍보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지원
중소기업마케팅 기반조성	마케팅역량강화를 원하는 중소기업	마케팅 관련 교육 및 코칭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정보제공, 전문교육, 상담 등 소모성자재 판로개척 종합지원



###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판로지원 Q&A

- Q. LED 조명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 A. LED조명은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후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해 보십시오.(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참조)
- Q.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직접생산 확인 현장 실태 조사에 번거로움이 있는데 매년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A. 과거에는 1년 단위로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매년 현장 실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0.10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직접생산 확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Q. 2008년부터 기능성 등산스틱을 생산해 온 기업입니다. 판로 확보가 어려워 등산관련 용품을 생산하는 몇 개 업체와 공동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 A. 공동상표를 개발하려는 기업이 5개 이상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표개발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해 드리며 공동상표의 홍보도 지원해 드립니다.(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참조)
- Q. LCD TV를 생산해 판매하는데 최근 판매가 늘면서 AS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 A. 중소기업의 공동 AS센터를 통해 AS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시면 전국의 141개 AS 지점망을 통해 AS센터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약 1,000여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 공동 AS센터 사업설명 참조)
- Q.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성능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구매담당자가 꺼려하네요.
- A. 공공기관에 납품된 중소기업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성능보험제도가 있습니다. EPC(성능인증),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정 받은 제품이 가입대상입니다. 성능인증을 받으셨으니 가입하실 수 있고, 보험료율은 보증보험 형식이어서 제품가격의 0.1~0.5% 정도로 저렴합니다.(성능보험제도 사업설명 참조)

Q. 퓨전소스를 개발해 프랜차이즈 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려니 인력이 부족한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언론매체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제품을 선정해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 프로그램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매년 1,000여개 제품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참조)

Q. 생활용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을 하고 싶는데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A. 중소기업 구매상담회에 참여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400여 업체와 500여명의 구매담당자가 상담을 하였으며, 1,000여개 업체가 입점 및 재상담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구매상담회 지원 사업설명 참조)

Q. 온라인 교육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마케팅 부분에 애로가 많습니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은데요.

A.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마케팅 실전 교육이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기획부터 상품 및 서비스 기획, 판로 개척 및 활성화 전략, 마케팅 문제해결 등 총 4 단계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중소기업 마케팅 기반조성 사업설명 참조)

# 12

##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 제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2-1 직접생산 확인제도 · 228
- 12-2 계약이행능력심사 · 231
- 12-3 적격조합 확인제도 · 233
- 12-4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제도 · 235
- 12-5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237
- 12-6 공공구매론 · 240
- 12-7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242



## 12-1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기관 납품 자격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및 1,000만원 이상의 소액 수의계약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 직접생산 확인 : ('10) 21,432건, ('11) 13,468건, ('12) 25,451건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1,491개 중 신규 501개사, 계속 472개사(과제당 2.3억원)

### 제도 활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계약
-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및 1,000만원 이상의 특정단체 등과의 수의계약

### 수의계약 대상자

- 특정단지·특별지원지역 입주공장, 국가유공자 복지공장, 특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인, 국가유공자 상이단체, 중증장애인 복지시설·단체 등에 한정

### 제도 내용

-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제도 이용가능
-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과 동일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하단에 상시 공고  
\* 레미콘, 아스콘 등 202개 품목

**신청 ·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g.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
  - \* 주요 확인 내용 : 생산공장 · 시설 · 인력 · 공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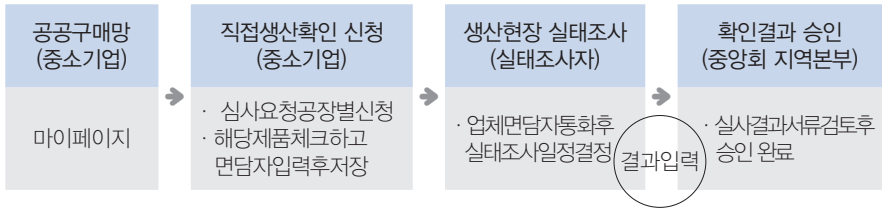
**제출 서류**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제시된 경우만 제출

- \* 주요 확인 내용 : 생산공장 · 시설 · 인력 · 공정 등

1. 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이내 발급분)
2.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 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
  - 기능사, 기사 보유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3. 생산설비 증빙서류 : 필수장비의 경우 구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 구입 후 장기간 보유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사진으로 대체 가능
4. 전기 사용실적 증빙서류 : 전기료 납부 영수증
5. 생산정보 증빙 서류(생산공장이 필수인 제조업의 경우)
  - ▶ 공장등록한 기업
    - 소유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임대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납입증명(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 공장등록 미대상 기업(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의 경우)
    - 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용도가 제조업소 또는 공장일 것)
  - ▶ 임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납입증명(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건축물관리대장(용도가 제조업소 또는 공장일 것)

**처리 절차**



##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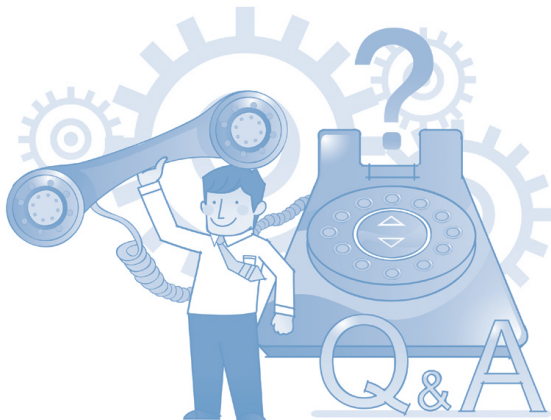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 042-481-8918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 : 02-2124-3120~5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pp.go.kr](http://www.smpp.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우측「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 직접생산확인시 소요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 ☞ 현장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대부분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실태조사 필요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 완비 후 약 1~2주 가량 소요 되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세요.





## 12-2 계약이행능력심사

예정가격의 85% 이상 낙찰가격보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02개)을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시 중소기업의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를 입찰심사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최저가 낙찰이 아니라 일정한 납품가격 이상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제도 내용

- 최저가로 응찰한 중소기업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로 구성
  - 10억원 미만 : 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 30점 비율로 평가
  - 10억원 이상 : 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신인도 +3~-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신용등급평가 면제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평가를 만점(3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70점), 신인도(+3~-2점), 결격사유(-30점)와 합산하여 평가

### 제출 서류

-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이행능력심사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 \* 위 서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심사시 요구됨

### 유의사항

- 신인도평가 등 심사관련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입찰 공고일 이후 제출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 042-481-8918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 : 02-2124-3116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pp.go.kr](http://www.smpp.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우측「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시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계약이행능력 심사로 결정해야 하나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계약 심사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매의 효율성 및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해 다수공급자 계약, 희망 수량경쟁입찰, 2단계 경쟁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 12-3 적격조합 확인제도

영세 중소기업에 공공기관 입찰 참여자격 부여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규모

- 적격조합 확인 : ('10) 177건, ('11) 51건, ('12) 11건

### 확인 요건

- 해당 조합 조합원의 1/2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허가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 관련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해당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일 것

### 유의사항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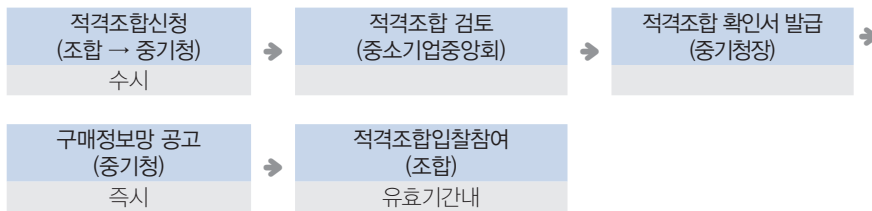
### 지원 내용

-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부여
- 조합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소속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

##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에 접수(수시)
  - \* 신청양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다운로드
  - \* 주요 확인 내용 : 직접생산확인 조합원사 비율, 조합의 시장점유율 등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 042-481-8995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 : 02-2124-3112~3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pp.go.kr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적격조합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 ☞ 독자적으로는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기 힘든 영세·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를 위해 해당 기업이 관련조합을 통해 공공시장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12-4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

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기회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품목

-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품목(제품 품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하단에 상시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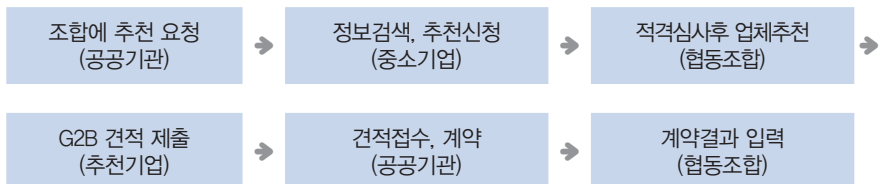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소액수의 계약시스템’에 신청

### 유의 사항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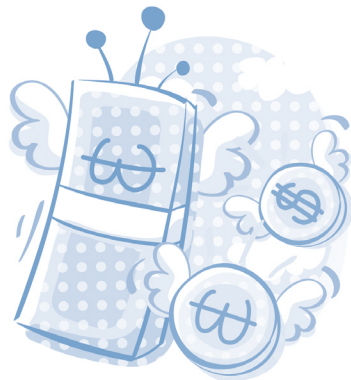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 042-481-4581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 : 02-2124-311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pp.go.kr](http://www.smpp.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우측「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pp.go.kr](http://www.smpp.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우측「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조합추천 소액 수익계약은 조합원사만 참여가능한가요?
  - ☞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관련 조합은 비조합원사를 최소한 1개 이상 포함하여 총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시 비조합원사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비조합원사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 12-5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만 수주하는 공공구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대상'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20억원 이상인 공사
  -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3년

### 지원 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 \* 대상제품 지정 현황('13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2개(레미콘, 아스콘 등)
-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 직접구매 제외 경우

-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기 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 ②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 ③ 그밖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 도서, 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특정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 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 신청·접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 \*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http://www.smpp.go.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지정'으로 검색 → 서식 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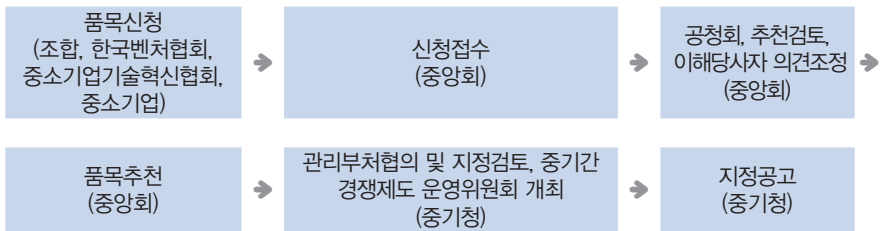
### 유의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등급, 직접생산확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미리 받아야함

## 제출 서류

- 지정추천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사본),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생산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 관련 증빙서), 직접 생산 확인기준

## 처리 절차



⑤ 판로 지원

- ▶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관계부처와 협의 후 지정

\* 현장실사 : 신청요건 및 대기업·수입유통업체로 인한 피해 여부 등 조사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 042-481-4546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 : 02-2124-3111~3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pp.go.kr](http://www.smpp.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우측「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기업과 수입 유통업체를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경쟁 입찰로 하여 중소기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12-6 공공구매론

공공기관 낙찰 중소기업에 생산자금 대출지원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 지원 규모

- 공공구매론 대출실적 : ('10) 820억원, ('11) 950억원, ('12) 1,106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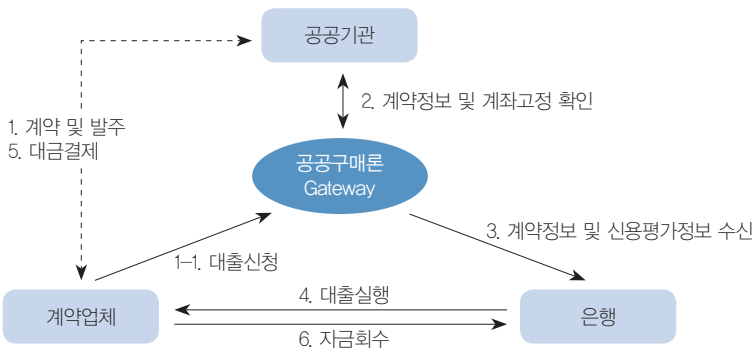
### 지원 대상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신용대출
- 선수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
- 온라인(www.smploan.com 접속)으로 신청

### 처리 절차



문의처

- 공공구매론 운영(한국기업데이터) : 02-3215-2545~2546, 2492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 042-481-4569

궁금해요! 중기맨

- 공공구매론은 시중의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가요?  
☞ 공공구매론은 현재 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총 5개 은행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참여은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12-7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공공구매 시장 진출의 길라잡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공공기관 입찰 정보와 기관별 발주명, 발주금액, 시기 등 세부 구매계획부터 입찰 참여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공공기관 입찰정보 포털 사이트입니다.

### 지원 내용

- 공공공구매계획 정보와 주요 공공기관 입찰정보 제공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 안내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생산기업 현황 정보 제공
- 성능인증,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기술개발제품 생산기업 현황 정보 제공
- 중소기업 신용평가정보, 기업일반현황(생산, 인력, 기술 인증) 등 정보 제공
- 공공기관 입찰시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종합정보망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회원가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해당 기술력, 기업특징의 인증 자료 사본
- 보유 면허증, 인가증 등 사본
- 생산정보 증명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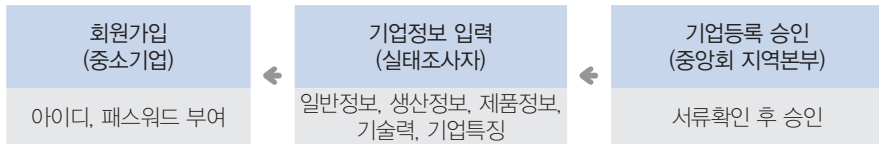
구분	소유	임대
제조업 (생산공장이 필수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등록 한 기업 : 공장등록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li> <li>• 공장등록 미대상 기업 :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 제조 또는 공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등록 한 기업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납입증명(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li> <li>• 공장등록 미대상 기업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납입증명서(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건축물관리대장(용도 : 제조 또는 공장)</li> </ul>

구분	소유	임대
제조업 외 (사업장 또는 작업장이 필수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납입증명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 유의사항

- 승인 요청 후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서류 미접수시 자동으로 '반려' 조치됨

### 회원가입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 콜센터 : 1577-7531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pg.go.kr](http://www.smpg.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우측「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입찰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한가요?  
☞ 중소기업청에서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제공하고 있는 입찰정보를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입찰·낙찰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13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3-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245
- 13-2 성능인증제도 · 247
- 13-3 성능보험제도 · 249



## 13-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EPC, GS, NEP, NET, 우수조달물품, 구매조건부사업 성공제품 등 6종)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11) 1.68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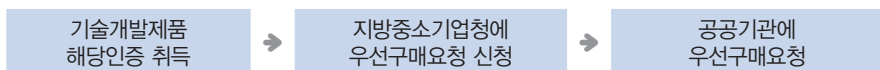
### 지원 대상

- NEP 및 GS(기술표준원), NET(과학기술NET : 기술표준원, 환경NET : 환경부, 건설NET : 국토해양부),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성능인증 및 구매조건부사업 성공제품(중소기업청) 중 하나의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NEP, NET, GS, EPC, 우수조달물품, 구매조건부사업 성공제품 등 6종)을 구매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
- 사업 참여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은 해당 제품의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에 구매를 요청함

### 처리 절차



- ▶ 우선구매요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http://www.smpp.go.kr)) 이용

**문의처**

• **관할 지역 지방중소기업청**

소 속	연 락 처	소 속	비 고
서울	02-509-6746	대전·충남	042-865-6150
부산·울산	051-601-5124	강원	033-260-1671
대구·경북	053-659-2233	충북	043-230-5370
광주·전남	062-360-914	전북	063-210-6412
경기	031-201-6934	경남	055-268-2543
인천	032- 450-1145		

•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인증종류	기 관	연 락 처	인증종류	기 관	연 락 처
NEP, NET(과학기술), GS	기술표준원	02-509-7286	우수조달물품	조달청	042-481-7285
NET(건설)	국토해양부	02-2110-6299	NET(환경)	환경부	02-2110-6727



**용어 설명**

- **EPC(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성능인증)**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의 품질과 생산 이행능력을 증명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 가능하게 인증하는 제도
- **GS(Good Software : 우수소프트웨어)**  
기술표준원이 우수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적용됨
-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인증)**  
기술표준원이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적용됨
-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인증)**  
기술표준원이 제품기술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적용됨
- **우수조달물품**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신기술, 우수품질 제품을 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이 해당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가능함



## 13-2 성능인증제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도록 인증 부여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합니다.(성능인증 취득과 동시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대상으로 편입)

### 지원 규모

- 성능인증 발급 누적건수 : ('10) 793건, ('11) 972건, ('12) 1,005건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지원내용과 동일

### 인증 대상 품목

- 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기술혁신형 기업 제품 등 17종
- 대상품목 상세내용은「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참조([www.smba.go.kr](http://www.smba.go.kr) → 정보마당 → 법률정보 → 현행고시에서 검색)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http://www.smp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 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직접 작성

- 성능인증신청서, 규격설명서
  - \* 직접 작성
- 안전 · 품질 · 환경 · 보건 분야 자격 증빙서류, 기술도면 등(필요시)
  - \* 성능인증신청서에 첨부

**처리 절차**



▶ 적합성검사 및 성능검사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 처리

**문의처**

- 각 지방 중소기업청

소 속	연 락 처	소 속	비 고
서울	02-509-6743	대전 · 충남	042-865-6142
부산 · 울산	051-601-5147	강원	033-260-1642
대구 · 경북	053-659-2504	충북	043-230-5334
광주 · 전남	062-360-9156	전북	063-210-6451
경기	031-201-6974	경남	055-268-2585
인천	032-450-1175	제주시험연구센터	064-723-2101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성능인증은 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중기지원 TIP!**



## 13-3 성능보증제도

납품한 기술개발제품 문제 발생시 손해배상

중소기업이 EPC, NEP, NET, GS, 우수조달물품 인증받은 제품을 성능보증에 가입하면, 납품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생긴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 지원 규모

보험 계약실적 : ('11년) 34건 24억원, ('12년) 3건 9억원

### 성능보증 운영 방식

- 보험형태 : 보험료가 저렴한 보증보험 형식
- 보험료율 : 제품가액의 0.1 ~ 0.5%
- 보험 담보범위 : 제품 자체의 교체 또는 수리가액 100% 전액 보증
- 보험가입 및 기간 : 공공기관과 계약전 보험사에 가입, 기간은 납품 후 1년이며 제품인증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보험가입 대상 제품 :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EPC,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
- 보험가입처 : 서울보증보험(02-3671-7000), 자본재공제조합(02-369-8500) 등

### 처리 절차

기술개발인증 취득



공공기관과 계약 전  
보험사에 신청



계약 전 보험가입예정서  
계약 후 보험증 발급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 042-481-4581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우측「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14

## 마케팅, 홍보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4-1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 251
- 14-2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 254
- 14-3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 257
- 14-4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 260
- 14-5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 조성 · 262
- 14-6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 265



## 14-1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언론 매체와 온라인을 활용한 1,400여 건의 제품 소개

품질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방송, 신문 및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제품 인지도 강화와 판로확대 자발적 마케팅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지원 규모** 1,400여개 제품 홍보

\* '12년 지원현황 : 1,200여개 제품 홍보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 제조 제품(소비재 완제품), IT기업은 서비스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제품 가능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국민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류, 건강보조/기능식품, 의약품
- 산업재, 중간재, 원부자재, 환경재, 기계설비류 등
- 공동상표 홍보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계생산지원사업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공동상표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의한 중소기업공동상표 대표자
  - 홍보지원은 정부가 개발지원한 상표 외에 자율적으로 개발·사용하는 상표도 법적 요건을 구비하면 신청 대상이 됨

### 우선 선정

-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정책(혁신형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KS, 특허, 실용신안 등 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제품
- 본사기준 수도권 이외 소재 중소기업, 창업초기기업, 마케팅 우수중소기업

### 지원 내용

- 방송, 신문, 잡지, 온라인(소셜커머스)를 활용하여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인지도 확대를 지원하고 마케팅 교육을 통해 자발적 마케팅 역량 확보를 지원
- 공동 상표홍보 : 예산과 지원수요를 감안하여 TV, 신문 등 광고매체를 정하고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
  - \* 지원금액과 대상매체는 선정심사 후 최종 결정

### 신청·접수

 연중수시(예산 소진시까지, 월 1회 홍보실무위원회 개최)

- 전용정보사이트(www.bizfind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홍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특허 및 인증서 사본, 제품 소개서(사진 2매 포함)

- \* 신청양식은 전용 정보사이트(www.bizfinder.go.kr)에 게재된 사업 안내 참조

### 처리 절차



- \* 사업실무처리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4376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02-6678-9322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홍보지원사업이란 제품의 광고를 대행해 주는 것인가요?
  - ☞ 일반 제품 광고와 같이 전문적인 광고를 대행하거나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매체별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는 코너를 활용하여 홍보지원사업에 선정된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 거랍니다.





## 14-2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국내 구매상담회 개최 단체 지원 및 상담회, 판매전 참가 지원

중소기업 제품들의 국내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구매상담회 개최(단체) 지원 및 중소기업과 전문 바이어와의 구매상담회를 지원합니다. 구매상담회 개최지원(단체), 상담회 참가지원(업체), 대형유통점 판매전 참가지원 등 다양한 판로지원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구매상담회 16회, 상품판매전 10회 진행

- \* '12년 지원현황 : 유통업체 상담회 (2회), 단체상담회 개최 지원 (10회), 중기우수상품전 (10회)
- \* '13년 지원계획 : 유통업체 상담회 (4회), 단체상담회 개최 지원 (12회), 중기우수상품전 (10회)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구분	내용
구매상담회 개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등</li> <li>•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관련 비영리 업종단체(협회) 및 기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단체</li> </ul>
대형유통업체 구매상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체</li> </ul>
우수 제품 특별 판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백화점 등에 판매 가능한 공산품)</li> </ul>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지식경제부 등 타 정부기관에서 중복으로 구매상담회 비용을 지원받는 주관단체

### 지원 내용

- 구매상담회 개최 지원 :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개최하는 구매상담회 지원 (10회 내외)
  - \* 임차료, 설치비, 홍보비 등 행사 예산의 70% 이내 지원(30,000천원 이내)
- 구매상담회 지원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기업간의 상담회(2회) 개최
- 특별판매전 지원 :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활용한 판매행사(70회) 진행
  - \*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 판매전(1회), 지방자치단체 연계 판매전(2회) 등 포함
- 대형유통망 진출 및 입점전략 세미나(4회)

### 신청 · 접수

매년 초 공고 후 접수(1월 ~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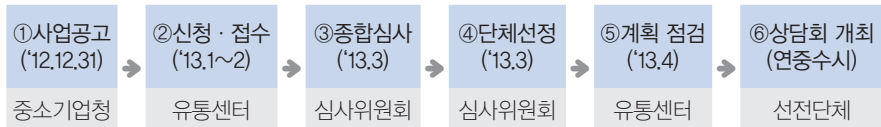
- 온라인신청([www.bizfinder.go.kr](http://www.bizfinder.go.kr))

### 신청 서류

- 구매상담회 개최지원 : 지원신청서, 개최 계획서, 보조금사용 계획서, 서약서
- 대형유통업체 구매상담회 : 지원 신청서, 제품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 우수제품 특별 판매전 : 지원 신청서, 제품 소개서, 판매 계약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 \* 신청양식 : 마케팅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bizfinder.go.kr](http://www.bizfinder.go.kr))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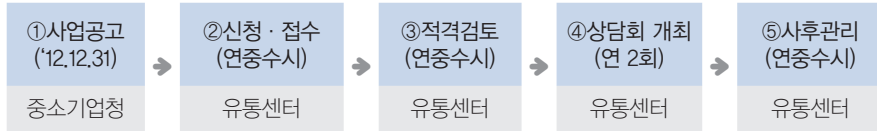
### 처리 절차

- 구매상담회 개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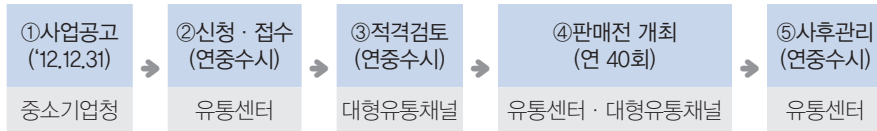


\* 사업 실무담당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대형유통업체 구매상담회



• 우수제품 특별 판매전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8950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02-6678-9313, 9321
- 전용정보사이트 : [www.bizfinder.go.kr](http://www.bizfind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개별 기업의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비용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 구매상담회 지원 사업은 구매상담회를 개최하는 단체를 지원하여 해당 구매상담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직접 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대형유통바이어간에 구매상담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가비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기관으로 문의해주세요.



## 14-3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통합 콜센터와 전국 A/S 지점망을 이용한 중소기업 A/S 지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A/S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공동 콜센터와 전국적 A/S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의 A/S를 지원하여 제품의 시장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 강화를 도와드립니다.

### 지원 규모

1,000여 개 중소제조업체 A/S제공

\* '12년 지원현황 : 163개 기업 신청접수, 154개 기업 지원

### 지원 대상

- 국내 공장에서 일반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A/S 지원이 필요한 13개 제품군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소모품 생활 소비재 등
-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수요가 적은 제품, 외국 생산 제품 등

### 우선선정

-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정책(혁신형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KS, 특허, 실용신안 등 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제품
- 본사기준 수도권 이외 소재 중소기업, 창업초기기업, 마케팅 우수중소기업

### 지원 내용

- 통합 콜센터와 전문 상담요원을 운영하여 제품 사용안내, 구매 문의, 불만처리
-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A/S시스템 구축을 위해 콜센터 장비 및 시스템 무료이용
- A/S대행사를 통한 제품 수리·교환·반품요구에 대한 A/S 실시
- 참여업체가 제품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A/S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상담 자료를 DB화하여 제조업체에 제공
- A/S에 관련한 각종 서비스 교육 및 기술 교육을 지원하여 실무능력 배양
- A/S 비용 및 통신료 등은 업체 부담

### 신청·접수

연중수시(신청업체에 한하여 월 1회 심사위원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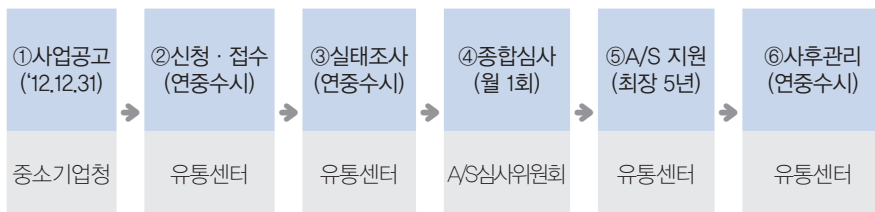
- 온라인 신청([www.askorea.or.kr](http://www.askorea.or.kr), [www.bizfinder.go.kr](http://www.bizfinder.go.kr))

### 신청 서류

중소기업공동A/S센터 신청서, 기업현황, A/S희망제품 설명서 등

\* 신청양식은 마케팅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bizfinder.go.kr](http://www.bizfinder.go.kr)) 및 공동A/S센터 홈페이지([www.askorea.or.kr](http://www.askorea.or.kr)) 참조

### 처리 절차



\* 사업 실무담당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4376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02-6678-9312, 9391, 9395, 9396
- 전용정보사이트 : [www.bizfinder.go.kr](http://www.bizfind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공동 A/S 참가할 수 있는 A/S 품목군 13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참여하실 수 있는 A/S 품목군에는 생활가전군, 주방가전군, AV기기군, PC군, 멀티미디어군, 차량용품군, 조명기기군, 가구군, 의료기기군, 유아용품군, 스포츠용품군, 소프트웨어군, 산업용장비군이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동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14-4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브랜드 인지도 높이는 공동상표 개발 · 홍보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하여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상표개발비를 지원하고, 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언론매체 홍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상표개발 3개

- \* '12년 지원현황 : 개발 3개, 홍보 9개 상표 선정 지원
- \* '13년 지원계획 : 공동상표 개발 지원( 3개 상표)

### 지원 대상

- 공동상표 개발지원 : 공동상표를 도입 · 이용하고자 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의 상표 대표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을 선도하여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무도장 · 골프장 · 스키장 · 도박장 · 주점 또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기업

### 지원 내용

- 공동 상표개발 : 상표개발 및 컨설팅 비용의 70%, 상표당 5,000만원 한도

### 신청 · 접수 1~2월 중

- 온라인신청([www.bizfinder.go.kr](http://www.bizfinde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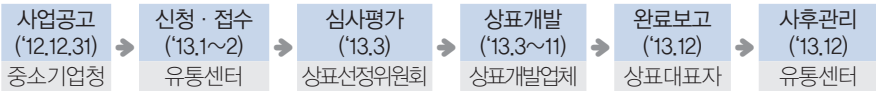
## 신청 서류

- 공동상표 개발 지원신청서, 공동상표사업추진계획서, 공동상표규약서, 참여업체 재무제표, 공동상표부착대상품목, 특허청상표등록서, 품질통제 기준 및 시스템

\* 신청양식 : 마케팅정보시스템(www.bizfinde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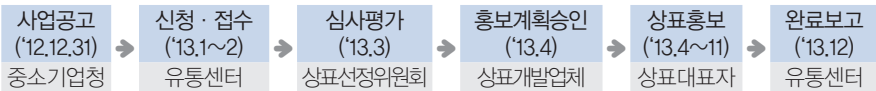
## 처리 절차

- 공동상표 개발 지원



\* 사업실무처리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공동상표 홍보 지원



\* 사업실무처리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8950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팀 : 02-6678-9345
- 마케팅정보시스템 : www.bizfind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중기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현재 활동 중인 주요 공동상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썬키스트가 미국 오렌지 재배농가의 공동상표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들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상표를 지속적으로 개발·육성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동상표로는 펌프로(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겨비(한국한복공업협동조합), 실라리안(경북도우수기업브랜드) 등이 있고, 이외에도 케이폴, 첸슬러 등 다양한 공동상표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14-5 마케팅 기반 조성사업

전문가코칭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대형유통망 개척활동 지원

내수 소비 침체로 유통망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기반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형유통사 MD의 현장방문 코칭을 통하여 마케팅애로사항을 코칭하고 유통망 개척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e-러닝 과정, 코칭지원 등을 통한 500여개 기업 지원

- \* '12년 지원현황 : 전문가코칭 (211개사), 온, 오프라인 교육(405개사)
- \* '13년 지원계획 : e-러닝 과정 (300개사), 상품성 코칭지원(140개사)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국내 유통망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휴 · 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우선 선정

- HIT 500 선정기업, 건강진단사업 추천기업 등

### 지원 내용

- 롯데마트, 현대홈쇼핑, e-Bay, 등 대형유통망 현업 근무 MD를 통한 현장방문 코칭과 마케팅/영업/유통 등 온, 오프라인 교육지원

●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코칭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별 코칭프로그램</li> <li>①(소비재)(1)기초진단→(2)상품성향상코칭(Ⅰ,Ⅱ)→(3)연계지원</li> <li>②(생산재)(1)기초진단→(2)전략코칭→(3)연계지원</li> <li>○ 수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li> <li>○ 코칭기간 : 4주</li> <li>○ 코칭비용 :120만원(30만원/1회)</li> </ul>	코칭비용의 80%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러닝 교육) 마케팅·영업·무역·물류 등 129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강과목 : 2개 과정, 수강기간 : 30일/1개 과정</li> <li>- 교육기관 : 중소기업연수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무역협회</li> <li>- 교육비 : 10만원 내외 * 단, 미수료시 자부담</li> </ul> </li> <li>○ (오프라인) 마케팅 분야 전문강사 초청 강연(지역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최시기 : 연중 수시, 교육비 무료</li> </ul> </li> </ul>	교육비용의 100%

⑤ 판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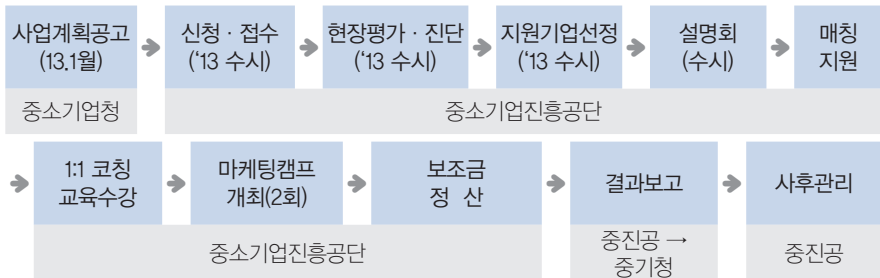
● 신청·접수 '13. 1월부터 연중 수시

- 마케팅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bizfind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www.bizfinder.go.kr)에 게재된 양식 다운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4376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 : 02-769-6724, 02-769-6596
- 전용정보사이트 : ([www.bizfinder.go.kr](http://www.bizfinder.go.kr)) 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2013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마케팅기반조성사업 내 전문가 코칭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 ☞ 전문가 코칭사업은 대형유통사 현업에서 근무하는 전문 MD를 기업 현장에 파견하여 가격정책과 디자인, 패키지구성, 유통망 입점절차 등 신제품을 런칭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코칭하여 드립니다.
- 온라인(e-러닝)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싶는데 비용은 없나요?
  - ☞ 온라인(e-러닝)교육은 100%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100% 자분담하셔야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6 중소기업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

국내 중소기업 MRO관련 중소기업업체 종합판로지원

종합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센터로서 실태조사, 마케팅지원, 공동 MRO물 시스템을 통한 구매대행사업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500개사(전체 예산 10억원)

\* '12년 지원현황 : 300개사 선정, 39억원 판로지원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중소납품업체, 중소기업 구매대행사 등)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

### 지원 내용

- 실태조사, 마케팅 지원(MRO교육, 홍보지원, MRO정보강화 등) 및 판로 지원(공동MRO물 시스템, 물류지원 등)을 통한 입체적 중소기업업체 지원서비스 제공
- 세부사업 내역

분야	내용	지원 한도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태조사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수집 및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함</li> <li>실태조사 주요 조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모성자재 납품업 시장환경 및 현황 조사</li> <li>- MRO물 시스템 운영현황 조사</li> <li>-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 관련 애로사항 및 필요정책 구상</li> <li>- 중소기업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의 체계적 육성방안수립</li> </ul> </li> </ul>	격년제 조사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중소납품업체 발굴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 MRO물 시스템내 중소기업업체 Pool등록을 통한 신규 중소기업업체 발굴로 다수의 중소기업업체에게 고른 판로기회 제공</li> </ul>	
홍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지원센터 및 우수중소기업업체 홍보를 통한 중소기업업체의 판로확대 기회 제공</li> <li>주요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렉토리북 제작 및 배포</li> <li>- 주요 언론매체 홍보</li> <li>- 기타 중소기업업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li> </ul> </li> </ul>	-
정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매기관 소모성자재 입찰정보 및 중소기업업체 현황, 취급제품 등 납품·구매와 관련된 종합 정보를 지원</li> </ul>	-
전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RO관련 교육을 통하여, 중소기업업체의 업무역량을 배양시키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li> <li>주요교육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참여방법, 구매대행상품 기획 및 영업방법</li> <li>- 구매대행 물류처리 및 MRO시스템 운영방법 등</li> </ul> </li> </ul>	회당 선착순 50개 업체
상담 및 기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오프라인을 통한 중소기업업체 애로상담, 법률자문 및 신규 지원사업 개발 등 다양한 상담과 자문을 통한 중소기업업체 지원</li> </ul>	
중소기업 공동MRO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매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 MRO물 시스템을 통한 구매대행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업체가 공공기관 및 민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li> <li>MRO 물품 인터넷 구매대행 서비스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화된 전문 MRO시스템, 전문 구매인력 보유</li> <li>- 양질의 중소기업업체 상품 소싱, 물류 인프라 구축 등</li> </ul> </li> </ul>	중소기업업체 Pool등록업체 우선선정

## 신청·접수 년중 상시

- 세부 사업별로 신청·접수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사전문의 필수

##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등

- \* 세부신청서류는 지원사업별로 상이함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http://www.sbmro.or.kr))에 게재된 세부공지사항 참고

## 처리 절차



\* 세부지원사업별로 처리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에 게재된 세부공지사항 참고

## 문의처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bmro.or.kr) 및 대표전화(1544-0906)



### 궁금해요! 중기맨

- 중소기업업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존 중소기업자는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라 해도 “독과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 계열회사인 경우 중소기업업체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용어 설명

- MRO  
Maintenance(유지), Repair(보수) and Operation(운영)의 약자로, 기업과 직접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자재와 간접 자재를 통칭하는 것으로, 기업 시설의 유지와 보수 등에 필요한 모든 간접 자재와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구, 모터, 베어링 등 전기 자재와 각종 기계 부품, 문구류, 청소용품 등 수많은 종류의 제품이 MRO에 해당합니다.

---

## 6부. 수출 지원



S M A L L   A N D   M E D I U M   B U S I N E S S   A D M I N I S T R A T I O N

# 수출 첫걸음부터 글로벌 마케팅까지

<b>15</b>	<b>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 지원</b>	<b>273</b>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 수출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74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278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 자금 · 보증 · 해외마케팅 지원시 우대	281
	무역촉진단 파견 ·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 및 수출컨소시엄 사업	289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 해외인증마크 획득비용 업체당 6개까지 지원	296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 · 해외 현지 컨설팅 서비스 이용료 80%까지 지원	300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시 임차료 지원	303

-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및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성장 단계에 따른 수출 역량강화,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사업명	
수출역량강화지원	①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1)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100만불 이하) (2) 수출 유망 중소기업(100~500만불 이하) (3) 글로벌강소기업(500~5,000만불 이하)
	②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③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 수출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수출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④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 해외인증마크 획득비용 업체당 6개 인증까지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⑤ 무역촉진단 파견 -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업종별 컨소시엄 구성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
	⑥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 해외 현지 컨설팅 서비스 이용료 70%까지 지원
	⑦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시 임차료 감면



###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수출지원 Q&A

- Q. 국내시장의 포화 및 FTA체결로 기회가 확대된 시장을 진출해보고자 합니다.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고 싶은데 지원사업은 없나요?
- A. 해외전시회를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참여방식에 따라 두가지 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별기업별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시어 개별전시회 지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업종별 단체전시회의 구성원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참여하시면 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부스비용 등을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설명 참조)
- Q. 미국 및 EU 등 거대선진권과의 FTA가 이슈입니다. 그러나,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FTA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이지 막막합니다. FTA활용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나요?
- A.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시면 FTA교육 및 컨설팅을 받으실수 있으며 또한 수출컨설팅사업을 활용하시면 FTA전문가를 통해 원산지 인증획득 등 FTA활용 방법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설명 참조)
- Q. 수출 300만불 정도인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입니다. 시장다변화를 위해 사업을 지원받고 싶은데 직접지원사업은 없나요?
- A. 2011년 직수출 100~500만불인 수출기업이고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시장다변화를 위한 심층시장조사, 해외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제품디자인 개발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기업중 20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설명 참조)
- Q. 교효를 전기장판 업체입니다. 국내시장의 포화 및 중국저가제품의 진입으로 판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A.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을 통해 해외바이어를 직접 발굴하거나, 대형 유통기업의 해외지사를 활용한 수출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망국가를 찾으실수 있으며 제품의 특성상 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해 수출을 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적합한 진출 방식에 관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즈니스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사업설명 참조)

Q. 의료기기를 유럽에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고가인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판매후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이번에 해외 지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요?

A. 해외 현지에 있는 '수출 인큐베이터'나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7개 수출인큐베이터를 통해 현지에서 저렴한 사무실을 제공받아 해외지사 설립 준비를 하실수 있으며, 131개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시면 해외현지 컨설팅전문가를 통해 현지 법인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수출인큐베이터 운영,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사업설명 참조)

Q.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수출 초보기업입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해외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요?

A. 해외 현지의 민간 컨설팅, 마케팅 회사 등을 통해 컨설팅을 받으록 도와드리며, 소요비용의 50~7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한도는 북미·유럽이 2,000만원, 중국 등 기타 지역이 1,500만원입니다.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사업설명 참조)

Q. 이번에 SASO 인증을 갱신하는데 인증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인증 받은 후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기 전에 해야 하는 건가요?

A. 신규로 획득하려고 하는 규격인증만 지원하므로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갱신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규획득의 경우에도 규격인증을 획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전에 규격인증을 획득한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설명 참조)

Q. X선 제너레이터 개발 기업입니다. 제너레이터 모델이 용량(kw)별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A, B, C 각 모델별에 대해 동일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내용 중 A, B, C 모델 각각에 대하여 테스트와 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2개 인증만 신청 가능하며, 위와 다르게 A, B, C 모델이 시리즈 모델로 인증서를 하나로 발급 받으려면 1개 인증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설명 참조)

# 15

##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5-1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 274
- 15-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278
- 15-3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 281
- 15-4 무역촉진단 파견 · 289
- 15-5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 296
- 15-6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 · 300
- 15-7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303



## 15-1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수출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규모와 역량에 따라 예비수출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수출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꼼꼼히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389개사(전체 예산 279.9억원)

- 예비수출기업 : 410개사
- 수출유망기업 : 879개사
- 글로벌 강소기업 : 100개사
  -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12년 지원현황 : 1,569개 기업(초보 1,237개, 유망 235개, 강소 97개)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예비수출기업은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만불 이하인 기업
- 수출 유망기업은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만불 초과 ~ 500만불 미만인 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은 직수출실적이 500만불 초과 ~ 5,000만불 이하인 기업으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은 100만불로 예외요건 적용)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계에 3회 참여한 기업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상위단계에 1회 이상 참여한 기업이 하위단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 우선 선정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출유망중소기업” 또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전년도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한 결과 “우수기업”으로 평가된 기업

### 지원 내용

- 수출교육, 홍보 디자인개발, 해외시장 정보 및 수출마케팅 지원 등 4개 분야 20여개 세부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의 90%~50%(2,000만원~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
- 세부사업 내역

구분 (지원비율)	항목	내용	정부지원한도
예비 (90%)	수출교육	무역실무 과정, 온라인 무역실무 기초과정, 전략시장 진출과정, 국제무역 전문가 과정	2,000만원
	홍보용 디자인 개발	외국어 전자·종이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시장조사, 온라인 수출지원, 해외신용조사, 국내외 홍보전문지 활용 상품홍보, 무역비용규제 시뮬레이션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전시회 마케팅 대행,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	
유망 (70%)	수출교육	국제무역 전문가 과정, 전략시장 진출과정, 국제무역 전문가 과정	3,000만원
	홍보용 디자인 개발	외국어 전자·종이 카탈로그, 외국어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외국어 동영상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심층조사, 온라인 수출지원, 전자무역서비스 제공, 해외신용조사, 국내외 홍보전문지 활용 상품홍보, 공중파 해외광고(arirang TV),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무역비용규제 시뮬레이션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검색엔진등록지원, 글로벌 브랜드 개발,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	
글로벌 강소 (50%)	제품 및 홍보용 디자인 개발	외국어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5,000만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글로벌 브랜드 개발, 홈쇼핑 동영상 제작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단계별 지원에 “예비수출기업”(내수 및 수출 10만불이하 기업) 신설
- 단계별 구분기준 선(수출실적) 변경

구분		비고
구분	지원한도	
수출초보(100만불이하)	90%(20백만원)	① 예비수출기업(10만불이하) 90%(20백만원)
수출유망(100~500만불)	70%(30백만원)	② 수출유망(10만~50만불 미만) 70%(30백만원)
글로벌강소(500~5,000만불)	50%(50백만원)	③ 글로벌강소(500~5,000만불) 50%(5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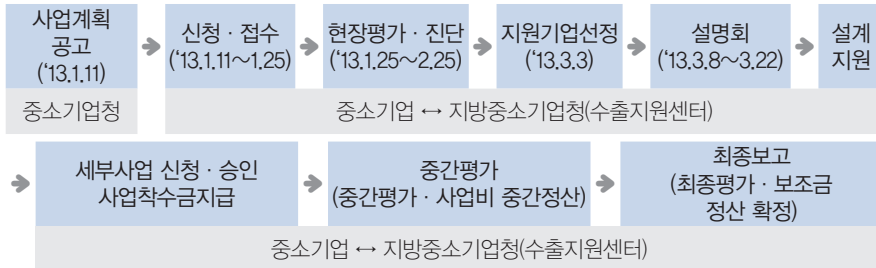
### 신청·접수 '13. 1. 11 ~ 1. 25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진단 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신청·접수일은 변동가능하므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 처리 절차



\* 상기일정은 변동 가능하므로 홈페이지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355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2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은 어느 시점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수출역량강화사업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별도의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정부보조금은 사후정산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 긴급한 회사 경영사정으로 사업추진 이행계획서에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 승인받은 이행계획서 변경은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재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글로벌강소기업은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 초보 및 유망기업은 단년도로 운영되며, 강소기업은 선정후 3년내에 개별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5-2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수출 500만불이상 기업 중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역량진단부터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규모

300여개사

\* 현재 총184개사(11~12년 선정) 지원 중, 100여개 추가선정 예정(1월중 완료)

###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 내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 경험이 있는 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휴 · 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시 정하는 업종별 부채비율을 초과한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업체 등

### 우대 사항

- 벤처 또는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기업이면서 R&D투자비율 5%이상인 경우는 수출 1백만불 이상으로 신청요건 완화

### 지원 내용

글로벌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직접 및 연계 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 (글로벌 역량진단) 마케팅 · 품목별 민간 전문가와 기업담당자 공동으로, 재무현황 및 마케팅 준비도, 제품 경쟁력 평가 등을 통해 해외진출 로드맵 및 연계사업 참여 계획 수립
- (전용 해외마케팅)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을 활용, 연간 5천만원 한도, 3년간 총 1억원 규모의 전용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명	연간 지원한도	비 고
글로벌 브랜드 개발 또는 글로벌 컨설팅(글로벌컨설팅 회사 활용)	5천만원	지원비율 : 50%  3년간 지원 보조금 총액 1억원 이내 자율 선택
프로젝트형 자율 마케팅	통합한도 2천만원	
해외 진출전략 컨설팅	2천만원	
제품 및 포장디자인	3천만원	
해외 전시회 참가	통합한도 1천만원	

### 글로벌 강소기업 연계지원 프로그램

- ① 수출 R&D 연계지원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 \* 사업공고 : '13년 1월경 예정 (기간, 지원조건 등은 달라질수 있음)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까지 지원
  - 우대내용 : 신청자격 부여, 가점부여, 참여횟수 제한(4회) 예외 인정
    - \* 신청자격 : 중기청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또는 전년도 직접 수출액기준 300만불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3%이상인 기

- ② 중소기업청 해외마케팅 연계지원 (총 1억원 규모 전용바우처 제공)

구 분	사업명	우대사항	지원한도
1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우선선정	2천만원
2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우선선정	인증비용의 60% 지원
3	글로벌 검색엔진 마케팅	우선선정	600만원
4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지원	가점(5점) 부여 * 단, 공실규모 및 신청기업수 등을 감안 우선 입주 추진	임대료 지원 1년차 80%
5	무역촉진단 파견지원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가점(6점) 부여	1천만원

- \* 3년간 지원횟수 제한없이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자율 선택
- \* 단, 개별사업별 지원한도 및 비율 등은 사업별 2012년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③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우대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금융’ 대출한도 확대 : 10억원→30억원
- 기업은행, 우리은행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 향후 타 금융권 등과 협약을 거쳐 추가 우대 상품 제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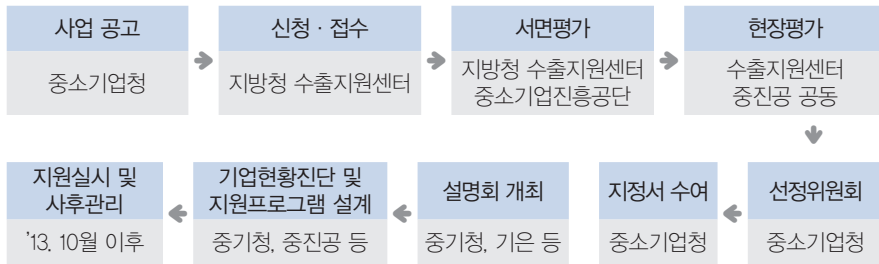
**신청·접수** '12. 12월(기선정) 완료, 2014년 대상기업은 2013년 3분기경 선정 예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서 출력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1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3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15-3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자금 · 보증 · 해외마케팅 지원시 우대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보증,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기업이 참여 할 수 있으며, 중기청,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22개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규모

2,000개사 내외(상 · 하반기 2회 선정)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1,893개사 중 1,147개사 지원

### 지원 대상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붙임1 참조)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기업(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휴 · 폐업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 기타 사업공고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평가, 혁신성 등
  - 재무과다, 자본잠식 등 기업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경우 지원불가

### 지원 내용

- 해외마케팅 지원참여 우대 : 수출역량강화사업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발굴, 상담대행 등
- 금융 및 보증지원 : 무역금융지원, 신용·기술보증(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 등
- 서비스업 지원 : 문화산업완성보증 비율우대, 지식문화동반성장프로그램 보증료 감면,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재방식) 보험료할인 등
- 기타 :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서비스 무료이용 등

\* 주요기관별 지원내용(붙임2 참조)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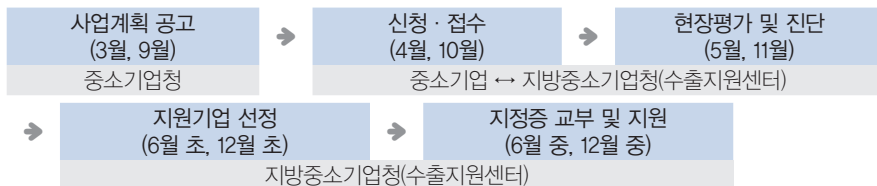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 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인터넷 접수),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인터넷 접수), 전년도 및 신청년도의 수출실적증명원(현장 확인), 전년도 재무제표(현장 확인)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8935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3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좋나요?
  - ☞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22개 수출지원 유관기관 사업참여시 가점 또는 우대지원(붙임2 참조)을 받습니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각종 수수료 및 대출금리인하 혜택등을 받으며, 국방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우선 추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수출유망중소기업은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 ☞ 지정후 2년동안 유효하며, 2회에 한합니다. 다만, 수출증가율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 ☞ 물론입니다. '11년 하반기부터 서비스업종 사업참여 및 지정율을 높이기 위해 업종을 37개에서 40개로 추가하고(붙임1 참조), 평가지표도 개선하였습니다.



## 용어 설명

-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문화산업완성보증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문화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09년부터 시행된 보증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3년간 200억 원을 출연하여 대출운용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
- 지식문화동반성장프로그램  
지식문화서비스 산업 영위기업 지원을 위해 '10년 9월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된 단계별 보증지원제도

[붙임1]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	
번호	업종명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수출업에 한함)
47911	전자상거래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헝람 서비스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565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 [붙임2]

## 주요기관 우대지원내용

## [중소기업청]

1. 수출역량강화사업(수출유망단계) 대상자 선정시 별도 선정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배점 5점 부여
3. 전시회 참가자 선정시 배점 5점 부여
4.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시 배점 5점 부여
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0.5점 가점

## [방위사업청]

1.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우선 추천
2. 절충교역시 중소기업 대응 수출의 가치를 수출액의 3배까지 인정
3. 방산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선정, 추천(책자발간 및 홈페이지 게재)

## [중소기업진흥공단]

1.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입주 신청시 가점 5점이내 부여 (김윤일 02-769-6729)
2.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선정평가시 가점 3점 부여 (최재훈 02-769-6703)

## [한국무역보험공사]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2. 수출신용보증(Nego)
3. 단기 수출보험/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 [KOTRA]

1.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업체 선정시 우대 (정다운 대리 02-3460-7675)
2. kotra 보증브랜드 선정시 우대 (송지영 과장 02-3460-7297)
3. kotra 지사화사업 선정시 우대 (채승완 차장 02-3460-7452)
4. FTA Express 300 선정시 우대(김준한 과장 02-3460-7829)

## [한국무역협회]

1. 무역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평가시 5점 가점부여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 해외전시 및 판로지원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2. 이노비즈 협회 자문위원 우선상담

### [신용보증기금]

1. 보증한도 우대
  -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우대, 신용도 취약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제한 배제, 운전자금 보증한도(매출액한도) 우대, 운전자금 보증한도(자기자본한도) 우대
2. 보증료 차감 우대 : 보증료 0.1%p 차감 우대

### [기술보증기금]

1. 보증한도 우대적용 : 수출자금에 대해 같은 기업당 70억원까지 보증지
2. 보증비율 우대
3. 우대보증 대상으로 지정하여 보증심사시 우대
4. 지식문화동반성장프로그램 우대 : 보증료 감면(최대 0.5% 감면), 보증비율 우대
5.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우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KISTI-과학기술정보협의회 위원자격 부여 및 KISTI 주요 연구사업 참여 기회 제공
2. KISTI 주요 연구사업 참여 기회 제공
3. 기업방문 니즈조사
4. 맞춤형 중소기업 정보지원
5. 슈퍼컴 활용교육

### [한국수출입은행]

1. 수출입금융 및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2. 포괄금융 지원시 수출실적 대비 대출비율 우대
3.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 심사 등 우대
4. 환위험 관리 지원
5.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우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해외 기술시장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해외 현지 네트워크 연계지원
2.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가능 기술이 DB로 구축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기업은행]**

1. 한국무역보험공사 협약 수출입금융 지원
2. “수출기업 육성자금대출” 지원
3. “수출입기업 지원자금 대출” 지원
4.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서비스
5. ‘참! 좋은 무료컨설팅’ 서비스
6. 원자재수입/구매를 위한 지급보증, 무역금융, 수출환어음매입 등 수출금융지원
7. 수출입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수출입 관련업무 상담 지원

**[국민은행]**

1. 기업신용 평가시 정성적 평가항목 중 기술, 품질 평가시 반영
2. 무역금융 지원시 금리 우대
3.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4.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
5. 전자무역(EDI) 거래시
6.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농협중앙회]**

1. 수출입대금 환전수수료 우대 : 50% 이내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 영업점장 전결범위내
3. 수출용원자재 수입관련 외국환 수수료율 우대 : 영업점장 전결범위내 우대

**[신한은행]**

1. 수출입대금 환율 우대 : 50%이내 우대
2.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 우대
3.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상담 및 교육 지원대

**[씨티은행]**

1. 무역금융 및 여신지원시 금리우대
2. 수출대금 환전수수료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거시경제 및 자본시장관련 씨티그룹 고유 금융정보 제공
4.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및 금융지원

### [외환은행]

1. 무역협회와 업무제휴를 통한 우대서비스 제공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 영업점장 전결 범위내
3.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 영업점장 전결 범위내
4. 외국환 최고 은행인 외환은행이 주관하는 수출입 아카데미와 수출입 세미나 참가 기회 제공(참가비 무료)

### [우리은행]

1.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유망중소기업”선정시 평가항목에 반영 우대
2. 환가료 우대 및 수출선적서류 당일발송 서비스
3. 우수중소기업고객 지원제도인「우리 베스트 멤버스」‘우리 Trade Focus 멤버’ 선정 신청 시 우대

### [하나은행]

1. 수출환어음 매입 환가료 우대
2. 전자방식(EDI, EDMS, CBS) 외환거래시 우대
3. 무역금융지원시 금리우대
4. 경영컨설팅 우대지원(수수료 50%이상 감면) 추가

### [부산은행]

1. 무역금융 및 여신지원시 금리 우대
2. 기업신용평가지 우대
3. 여신 우대 : 여신심사 시 우대 및 한국은행 C2 자금 지원
4.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5. 기타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

### [경남은행]

1. 무역금융지원시 우대
2. 신용평가등급 산정시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영업위험항목을 상위등급으로 부여
3.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여부를 대출심사 평가항목에 반영
4.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5. 기타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



## 15-4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 및 수출컨소시엄 사업

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및 수출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시부스 임차료부터 장치비, 운송료, 통역비, 홍보비, 바이어 발굴비용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1. 해외전시회 참가

#### 지원 규모

2,400개사, 업체당 1,00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무역촉진단 활동을 주관하는 단체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종별 협회 및 수출유관기관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식경제부 등 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업체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다음 항목 지원

지원 항목	지원 기준
부스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 1부스 이내 임차료의 50%(전시회에 따라 최대 3부스까지 지원)</li> <li>* 1부스당 최대 12㎡까지 인정하되, 초과부분은 50%이내 지원(1부스당 27㎡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지원에서 제외)</li> <li>* 임차료에는 보험료, 등록료 등 포함</li> </ul>
장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TRA 전시회별 산정금액의 50%</li> <li>* 보석, 화장품, 공예, 패션, 멀티미디어 업종은 80%까지 지원</li> </ul>
운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CBM이내 편도운송료의 50%</li> <li>* 대형전시물의 경우 2CBM까지</li> <li>* 참가업체가 직접 운송할 경우, 추가 운임비 일부(1CBM, 편도, 50%이내)</li> <li>* 항공운송료의 경우, '선박운송경비'에 준하여 지원</li> </ul>
홍보부스 (공동홍보부스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료 : 1부스이내(최대 12㎡까지 인정, 100%)</li> <li>● 장치비 : 100%(KOTRA지역별 단가 적용)</li> <li>● 통역지원 : 5업체당 1인(KOTRA지역별 단가 적용)</li> <li>* 비영어권 지역은 1인 추가지원</li> <li>● 안내요원 지원 : 1인(KOTRA지역별 단가 적용)</li> <li>● 홍보비(홍보물제작 등) : 업체당 30만원 이내(정액제)</li> <li>● 화선 임차료 : 인터넷 2, FAX 1</li> </ul>
바이어 초청 간담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 5만원 한도 내 지원</li> </ul>
항공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주관단체 1인에 한함)</li> </ul>
사전간담회 등 운영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만원 이내(전시회 1회 기준)</li> </ul>
전시장 내 컨퍼런스 등 부대행사 개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당 50만원(전시회당 최대 10백만원) 이내</li> </ul>

\* 1CBM(Cubic Meter) : 가로/세로/높이가 각 1m 이내의 부피

### 우대 지원

- 글로벌전략품목 주관단체, FTA 체결 및 협상 진행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공통비용의 60% 까지 지원
- 고용창출 100대기업(노동부 지정), 승인받은 협업기업, 수위탁거래 우수 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신성장기업, 연수인증업체, 글로벌강소기업 등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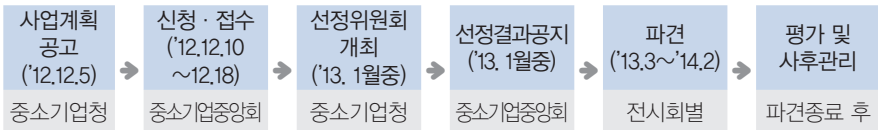
- 해외전시 포털(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중소기업중앙회 접수)

## 제출 서류

신청서(계획안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전시회 파견업체 명단 및 후속 Follow-up 실적
    - 파견 이후 현재까지 파견성과 평가자료(업체별 수출실적 등)
  -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m<sup>2</sup>(전시회 브로셔 등), 부스 임차계약서(사전임차의 경우), 전시 물품 운송료 표준단가표 등 예산지원액 결정을 위한 각종 참고자료 첨부
    -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전시회는 관련 증빙자료를 2012년 기준으로 제출
- \* 참가기업 확정시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제출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3980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진흥부 : 02-2124-3226/8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 초기화면 상단(전시회 정보)

## 2.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규모** 400개사, 기업당 1,000만원 이내

\* '12년 지원현황 : 515개사, 업체당 평균 137만원

### 지원 대상

- 무역촉진단 활동을 주관하는 단체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종별 협회 및 수출유관기관

### 우대 지원

- 글로벌전략품목 주관단체, FTA 체결 및 협상 진행국, FTA 피해품목 대체 신흥시장이 진출대상인 경우
-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공통비용의 60% 까지 지원
- 고용창출 100대기업(노동부 지정), 승인받은 협업기업,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신성장기업, 연수인증업체, 글로벌 강소기업 등

### 지원 내용

- 업체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다음 항목 지원

#### 항목별 지원기준

- KOTRA의 시장개척단 지역별 기준단가표의 범위 내에서 아래 항목을 지원
  - 상담장, 장치 및 현지 차량임차료
  - 바이어 섭외비 등
  - 현지 N/W구축을 위한 활동비
  - 통역비 및 광고비, 기업 IR비용 등
  - 항공료(주관단체 1인에 한함) : 100%
  - 사전간담회 등 운영경비 50만원 이내
- 세미나, 포럼, 로드쇼 등 바이어 초청 행사 및 선진 수출시스템 벤치마킹 등 : 업체당 50만원(시개단 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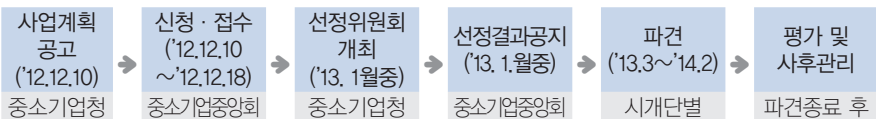
### 신청 · 접수

- 해외전시 포털(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중소기업중앙회 접수)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 상담장 및 현지 차량 임차료계약서(사전 임차의 경우), 바이어 섭외비, 통역비 및 광고비 등 예산지원액 결정을 위한 각종 참고자료 첨부
  - 시가단 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상담장 임차료 등이 신청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시장개척단은 관련 증빙자료를 2012년 기준으로 제출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3980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진흥부 : 02-2124-3226/8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 초기화면 상단(전시회정보)

## 3. 수출컨소시엄

**지원 규모** 25개 컨소시엄(300개사)

###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종별 협회 및 수출유관기관 등

### 우대 지원

- 글로벌전략품목 주관단체, FTA 체결국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등
- 고용창출 100대기업(노동부 지정), 승인받은 협업기업,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녹색·신성장기업, 연수인증업체, 글로벌강소기업 등

### 지원 내용

- 컨소시엄당 2억원 이내에서 다음항목을 지원

단 계	집행항목	비 율	한 도	비 고
사전준비 단계	■ 타깃시장 조사	100%	-	-
	■ 해외마케팅·홍보	70%	-	-
	■ 외국어공동홍보물제작		-	-
	■ 해외시장 개척 컨설팅		-	-
현지활동 단계	■ 전시·상담장 임차	70%	-	· 해외 상담활동기간에 한함
	■ 전시·상담장 장치		-	· 해외 상담활동기간에 한함
	■ 차량 임차		-	· 해외 상담활동기간에 한함
	■ 현지바이어 발굴·매칭		-	· 해외 상담활동기간에 한함
	■ 상담·통역		-	· 해외 상담활동기간에 한함
	■ 물품운송료		-	· 전시·상담물품에 한함
	■ 전시·상담소모품구입		-	· 컴퓨터·전화기등자산취득용제외
	■ 현지 홍보 ■ 기타 마케팅 활동		-	· on-off line 해외홍보·광고 · 세미나, 컨퍼런스 등 개최
사후관리 단계	■ 초청바이어 항공료	70%	-	· economy class 왕복 1명 기준
	■ 초청바이어국내활동비	-	15만원/일	· 국내상담활동기간에 한함.
	■ 상담장·차량 임차	70%	-	· 실비 기준
	■ 바이어 신용조사비		-	· 공인기관 모두 인정
	■ 수출전문가 컨설팅비		-	· 필요성 입증시 인정
	■ 통역비		-	· 통번역센터 활용
구성운영 단계	■ 주관단체 항공료, 출장비	100%	-	· 공무원(5급) 출장 기준(인1회)
	■ 간담회비(국내/국외)		5만원/업체	· 컨소시엄구성·운영회의포함
	■ 통신비	100%	-	· 현지 파견기간에 한함
	■ 기타 운영비	100%	-	· 입증자료 제출(승인범위내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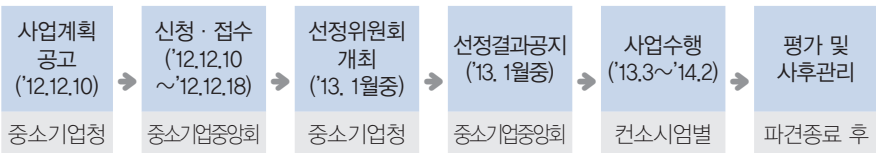
### 신청 · 접수

- 해외전시 포털(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중소기업중앙회 접수)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 처리 절차



⑥  
수출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3980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진흥부 : 02-2124-3226/8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 초기화면 상단(전시회정보)



## 15-5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인증 및 시험비용 지원

해외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CE, NRTL 등 세계 182개 인증획득 비용의 50 ~ 90%를 지원합니다. 또한, 간접지원으로 해외규격원문보급 및 번역정보도 온라인 헬프데스크를 통해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500여개사 (전체예산 106.9억원)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3,098개사중 1,830업체 지원, 업체당 546백만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 포함)
  - 우선선정 :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주관단체 확인서 첨부), 건강관리 추천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
  -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해외규격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최근 5년간 지원금액 1억 5,000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 인증획득 수 20회 이상을 받은 기업
-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 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2억 5,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지원 내용

- 기업규모별,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 지원
  - 예비수출기업(내수기업 및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 90%
  - 수출유망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 500만불 미만) : 70%
  - 글로벌강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 5,000만불 미만) : 50%
- 업체당 1회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최근 2년간 3회 참여가능)
- CE(유럽), NRTL(미국) 등 180개 제품인증 획득비용의 50~90% 지원

## 신청 · 접수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접수	2.1~2.28	4.1~4.30	6.1~6.30	8.1~8.31	10.1~10.31
확정	3.1~3.20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	3.21~3.31	5.21~5.31	7.21~7.31	9.21~9.30	11.21~11.30

\* 지원차수는 지원수요에 따라 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신청업체가 인증획득 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을 거친 후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기재된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것에 한함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해당기업에 한함)
  - \* 싱글PPM, KS, ISO, TL9000, GMP, KGMP, HACCP 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1부

- \* 해외규격이 요구하는 기업증빙서류(해외규격획득을 요구한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서 등 수출증빙서류)
- \* 주문 등 바이어가 요구한 자료

##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	▶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신청서 접수	지방청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또는 공장등록증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지방중기청에 접수
신청업체 평가	지방청	▶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및 지원 우선순위 결정
지원대상 업체 선정	중기청 (선정위원회)	▶ 지원대상 업체 선정 ▶ 과제 중복, 인증획득 가능성, 비용적정성 등 심의
협약체결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업 협약 체결
인증획득 추진	주관기관 (컨설팅기관)	▶ 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준비 등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지방청, 관리기관	▶ 과제추진 상황 및 비용지출 확인 ▶ 인증획득 가능성 점검 등
완료보고	주관기업	▶ 인증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보고
인증사실 확인 출연금 지급	주관기업	▶ 인증사실확인 ▶ 정부출연금 정산 지급



### 궁금해요! 중기맨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은 어느 시점에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 동 사업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해외규격 획득을 완료하신 후에 완료 보고를 해주시면 지급 됩니다



### 용어 설명

- CE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
- NRTL  
미국의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품에 대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27개 분야에 대해 공인시험소의 인증이 요구됨





## 15-6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해외 현지 컨설팅 서비스 이용료 80%까지 지원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민간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현지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지원해 드립니다.

\* 전문서비스 제공 내역 : 마케팅 전략수립 및 마케팅 툴 개발, 바이어 발굴, 시장정보 제공, 해외투자 타당성 조사, 기술제휴, 투자유치 등

### 지원 규모

350여개사 (60억원)

\* '12년 지원현황 : 43개국 132개 민간네트워크 지정·운영, 410개사 지원

### 지원 대상

-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중소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기업 또는 대표가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식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은 예외

### 지원 내용

- 해외 현지의 민간 컨설팅, 마케팅 회사 등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고 지원 대상 업체와 매칭, 소요 컨설팅 비용의 50~80% 지원
  - 국가별 15~20백만원 한도, 수출역량 및 사업참여년차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한도

국가 구분	지원 한도 금액
북미, 유럽, 러시아, CIS, 일본, 싱가포르, 대양주,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업체당 년 2,000만원
중국, 동서남아, 중남미(기타) 등 지역 1외 지역	업체당 월 1,500만원

## 지원비율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지원 한도 금액
500 만불 이상	50%	40%	30%	기존, 동일 국가 최대 3년간 참여가능, 지원비율 차등 없음
500 만불 미만	70%	60%	50%	

\* 단, 기존 기업당 참여가능년도(5년)은 유지, 동 기간내 국가 변경시 1년차 기준부터 신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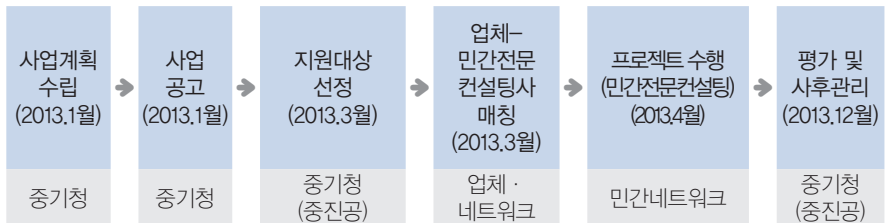
## 신청 · 접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

##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서(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요청서) 작성 후 업로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인증서류는 스캔 후 업로드

## 처리 절차



\* 단기 컨설팅 프로그램은 5월 이후 예산 소진시까지 선정후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02-769-6856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해외 민간네트워크와 함께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조언을 한다면?  
☞ 공짜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업에 참여하든 기업도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짜로 진행하다 보면 '해외 거래선을 확보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자세가 되기 쉬우며, 민간네트워크에게도 적극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간 부담될 정도의 비용은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에게도 민간네트워크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 해외민간네트워크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한 해외에 거점이 있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컨설팅사



## 15-7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시 임차료 일부지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규모

251개 기업 입주실(11개국 17개 지역)

- \* 미국(뉴욕, 시카고, 워싱턴, LA), 브라질(상파울루),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베트남(호치민), 싱가포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 지원 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하려는 중소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 기업주 포함)

### 우대사항

- 기존 거래처, 기타 수요처에서 발급한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과제
- 중소기업형 유망기술(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신제조기반 등)에 부합하는 과제

###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 수출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 신청·접수

- '13.1.1부터 인큐베이터별 공실발생시, 수시모집·선정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http://www.sbc-kbdc.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증빙자료는 온라인 신청 후 우편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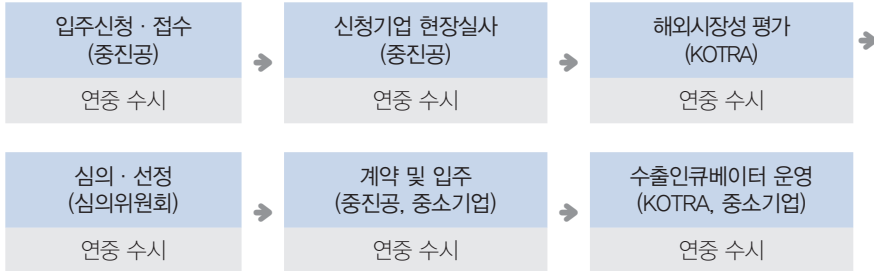
### 신청 서류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이력서, 입주 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홈텍스 출력본)
  - \* 수출실적증명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증빙서류,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자료, 국제규격 자료 등은 해당기업에 한함

### 평가기준

- 경영평가(25%), 제품의 시장성(30%), 현지진출지원 인프라 구축(25%), 수출인큐베이터 지원효과(20%)
- 글로벌강소, 수출유망중소기업, 혁신형 기업(Inno-Biz, 벤처기업 등) 등은 평가 시 가점 5점 부여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02-769-6955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

⑥ 수출 지원



---

## 7부. 건강진단 및 컨설팅



S M A L L   A N D   M E D I U M   B U S I N E S S   A D M I N I S T R A T I O N

# 중소기업의 건강을 진단하고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b>16</b>	<b>외부 전문가 노하우를 활용하세요</b>	<b>310</b>
	중소기업 건강관리 지원 · 진단, 컨설팅, 정책지원 연계 도우미	311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지원 · 진단진단을 통한 컨설팅 연계 지원	323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 · 창업기업 조기안정화 및 중소기업 지속성장 지원	325
	기업회생컨설팅 지원 · 부실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비 90%지원	328
	녹색경영 평가, 그린비즈 컨설팅 ·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저감을 위한 녹색경영 길잡이	330
	중소기업간 해외녹색규제 협력대응지원 · 해외 녹색규제 대응 지원	333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지원단 · 중소기업 고민해결사	335

• 중소기업의 건강진단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지 원 한 도
중소기업 건강관리 지원	• 상시근로자 5인이상으로 일시적 경영애로 또는 성장통을 겪는 기업	• 기업건강 진단 → 처방전 발급 → 맞춤형 치유	
건강관리 연계 공정혁신 지원	• 건강진단 결과 “공정혁신” 처방을 받은 기업	• 경영·기술 분야에 대한 컨설팅 -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마케팅 등	• 최대 3천만원 • 30~50% 한도
지속성장 컨설팅	• 중소기업 - 업력·업종 제한 없음	• 경영·기술 분야에 대한 컨설팅 -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마케팅 등	• 최대 3천만원 • 30~50% 한도
창업컨설팅	• 업력 5년 미만 기업	• 경영·기술 분야에 대한 컨설팅	• 최대 2천만원 • 65%한도
원스톱 창업지원	• 업력 5년 미만 기업	• 사업성 검토, 공장설립, 경영교육 등	• 최대 1,2천만원 • 65%한도
기업회생 컨설팅	•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또는 신청예정기업	• 회생계획안 • 경영정상화 계획안	• 18백만원 한도 • 90%
그린비즈 컨설팅	• 10인 이상 기업 • 제조업	• 녹색경영 평가·진단 • 녹색경영 개선 프로그램 지원	• 1000만원 한도 • 65%
중소기업간 해외녹색규제 협력대응지원	• 협력업체 10개 내외를 보유한 수출 기업	• 기후변화 대응, 제품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현장진단, 공정개선 등	• 1,5억원 한도 • 60%
비즈니스 지원단	• 전문가상담 :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관련자 등 • 현장클리닉 : 상시고용인 50인 미만 중소기업	• 전문가 상담 • 현장 클리닉	



##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건강관리 · 컨설팅 Q&A

Q. 중소기업 건강관리 지원시스템이 무엇인가요?

A. 사람이 병원 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듯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전문 기관의 진단, 처방 및 치료의「병원식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건강한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입니다. 기존 지원 시스템은 자금, 인력 등 중소기업 신청에 의한 개별 지원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건강관리지원 시스템은 기업경영 전반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핵심역량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처방전을 제시하여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 인력, R&D, 공정혁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 입니다.

Q. 중소기업 건강관리는 받으면 어떤 점이 중소기업에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기업경영 전반에 관해 외부 기술 및 경영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기 때문에, 현재 기업의 위치, 경쟁력 상태 및 보완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처방전에 따라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 인력, R&D,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교육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경쟁업체들이 생겨나 경영에 애로가 많은데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A. 경영전문가가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조언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속성장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업체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55%를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기악화로 인해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작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할 듯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전문 컨설팅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기업회생컨설팅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면 업체당 1,800만원 이내에서 총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해 드립니다.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채무재조정과 M&A 등 자발적인 회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Q. 각국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해 중소기업도 녹색경영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녹색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A.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수준은 S,A,B,C,D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녹색정보사이트(www.greenbiz.go.kr)의 자가진단을 통해 자체적으로 녹색경영 수준을 평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녹색경영 평가' 또는 '그린비즈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전문가의 정밀한 평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이제 1년 된 중소기업인데 금융, 법률, 마케팅 등은 사내에 전문가가 없어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A.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회계, 금융, 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늘 대기하고 있으니 국번없이 1357로 전화하시거나 각 지방중소기업청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 16

## 외부 전문가 노하우 활용하세요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6-1 중소기업 건강관리 지원 · 311
  - 16-2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지원 · 323
  - 16-3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 · 325
  - 16-4 기업회생 컨설팅 지원 · 328
  - 16-5 녹색경영 평가, 그린비즈 컨설팅 · 330
  - 16-6 중소기업간 해외녹색규제 협력대응 지원 · 333
  - 16-7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지원단 · 335
- 
- 우수지원사례 (주)다이테크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 337
  - 우수지원사례 (주)민진 – 컨설팅지원사업 · 339



## 16-1 중소기업 건강관리 지원

진단, 컨설팅, 정책지원 연계 도우미

경영·기술 진단전문가가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분석, 제시된 처방전에 따라 해당치유 기관에서 자금·인력·R&D·공정혁신·국내외 마케팅·사업전환 등을 맞춤형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통을 치유합니다.

**지원 규모** 7,500개사(99.5억원)

\* '12년 지원현황(11월 말 기준) : 신청기업 6,068개사 중 5,715개사 진단완료

**지원 대상**

-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진단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또는 기업성장통(痛)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 기업주 포함) 등

### 건강관리시스템 지원체계

종합병원식 건강검진 체계와 같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하여 「진단→처방→치유」 3단계 방식으로 기업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치유

#### 기업건강 진단

- 기업경영전반 분석
- 위기관리역량진단

기술·경영전문가

#### 처방전 발급

- 종합진단표 작성
- 성장로드맵·처방전 작성

진단기관

#### 맞춤형 치유

- 자금, 보증, R&D, 마케팅
- 공정혁신, 정보화, 사업전환 등

지원기관

### 지원 내용

- 진단내용 :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 기술·산업 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등
  - 기업 성장통 원인, 위기관리역량 저해 요인 및 개선 포인트 도출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제시
- 중소기업 기업건강 진단시 소요되는 비용(30만원/1MD기준) 지원
  - 진단 일수는 하루 8Man-Hour 기준, 최대 6Man-Day 원칙으로 진단기관이 정함
  - 3MD 이내 진단기관 부담, 4MD 이상은 신청기업이 부담
- 기업의 건강진단 후 처방전 추천치유 결과에 따라 11개기관 34개사업을 연계·치유

**신청·접수** 매월 1일부터 10일, 4개 진단기관의 접수창구(붙임 참조) 방문 신청

진단 기관	신청·접수
지방중소기업청	2013년 1월~10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2013년 2월~10월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제출서류**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월), 재무제표(최근 3개년, 온라인 제출)

**처리 절차** 처리기간 30일 이내



## 문의처

- 4개 진단기관의 영업점 등 접수창구(붙임 참조)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건강관리팀 : 042-481-8965~6
- 중소기업진흥공단 진단사업처 : 02-769-6977, 6987
- 신용보증기금 기업지원부 : 02-710-4651
- 기술보증기금 창업지원부 : 051-606-7647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bizdoctor.go.kr](http://www.bizdocto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2013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궁금해요! 증기맨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의 ‘건강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 중소기업 건강진단은 중소기업의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것으로 기업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다면 어떤 위기에 처해있는지, 그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가 기술산업 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등 기업경영 전반에 관해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위기관리 역량의 저해요인 또는 기업성장통의 원인을 도출하고 처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 기업성장 로드맵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정부시책과 연계된 맞춤형 건강관리 치유사업 과제와 건강진단 기업 스스로 치유해야 하는 자체 개선과제 도출도 수반됩니다.

● 중소기업 건강진단을 통한 맞춤형 치유와, 기업이 기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현행 중소기업 지원시스템(130여개 기관, 203개 사업)은 칸막이 식으로 운영되어 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사업별 단순 지원시스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은 각 사업이 중심이 되어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중심이 되어 건강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처방하고, 각 기관에서 시행중인 34개 지원사업(자금, 보증, R&D 등)을 연계하여 맞춤형 치유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 [별표 1]

##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

신청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번호)	신청대상 제외
①제조업(10~33), 광업(05~08), 운수업(49~5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
②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37~39)	-
③도매 및 소매업(45~47)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소매업(47)	
④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58~63)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⑤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
⑥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별표 2]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한 기업

- ①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치유를 받은 회수가 4회 이상인 기업
- ②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대표자 변경 등 진단기업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③ 진단기관에서 진단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그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④ 휴·폐업중인 기업
- ⑤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 제외함
- ⑥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⑧ 진단 신청일 현재,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단, 진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나.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다.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붙임]

## 기업건강 상담·신청 및 접수처

## ● 지방중소기업청

지 역	담당자 연락처	e-mail
서울청	02-509-6722	ssh5286@smba.go.kr
부산·울산청	051-601-5109	mundahong@smba.go.kr
대구·경북청	053-659-2209	hyunsu25@smba.go.kr
광주·전남청	062-360-9113	paper144@smba.go.kr
경기청	031-201-6906	kdnam@smba.go.kr
인천청	032-450-1115	sungwonkang@smba.go.kr
대전·충남청	042-865-6193	clotholove@smba.go.kr
강원청	033-260-1613	cms1022@smba.go.kr
충북청	043-230-5325	sss1122@smba.go.kr
전북청	063-210-6411	kyungwoo@smba.go.kr
경남청	055-268-2581	jskang@smba.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서울	서울지역본부	02-6678-4131
	서울동남부지부	02-2156-2201
	서울북부지부	02-769-6821
부산·울산	부산지역본부	051-630-7450
	부산동부지부	051-712-9672
	울산지역본부	052-703-1130
대구·경북	대구지역본부	053-601-5281
	경북지역본부	054-476-9321
	경북동부지부	054-223-2050
	경북남부지부	053-212-3321
광주·전남	광주지역본부	062-600-3030
	전남지역본부	061-280-8020
	전남동부지부	061-724-1058
	제주지역본부	064-751-2061
경기	경기지역본부	031-259-7910
	경기동부지부	031-259-7941
	경기서부지부	031-496-1472
	경기북부지부	031-920-6731
인천	인천지역본부	032-450-0530
	인천서부지부	032-450-0561
대전·충남	대전지역본부	042-866-0130
	충남지역본부	041-621-3681
강원	강원지역본부	033-259-7631
	강원영동지부	033-655-8873
충북	충북지역본부	043-230-6811
	충북북부지부	043-841-3611
전북	전북지역본부	063-210-9921
	전북서부지부	063-460-9820
경남	경남지역본부	055-212-1371
	경남동부지부	055-310-6611
	경남서부지부	055-756-3062

● 신용보증기금

지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서울	기업지원부	02-710-4651
	정책보증센터	02-710-4155
	서울서부영업본부	02-2077-6753
	마포지점	02-710-4525
	영등포지점	02-2165-5622
	제주지점	064-740-9422
	광화문지점	02-311-4222
	구로지점	02-2107-4223
	남대문지점	02-3709-7032
	서울디지털지점	02-2109-4742
	강서지점	02-3660-1422
	김포지점	031-980-4921
	고양지점	031-909-6132
	방배지점	02-3489-5221
	파주지점	031-956-3212
	서귀포지점	064-763-8064
	서울동부영업본부	02-2141-3342
	동대문지점	02-2250-5232
	광진지점	02-2204-6242
	강남지점	02-2141-3221
	강북지점	02-3499-7223
	삼성지점	02-2194-2912
	의정부지점	031-828-1712
	강동지점	02-2041-9212
	구리지점	031-560-6612
	테헤란로지점	02-3420-4212
하남지점	031-790-9612	
송파지점	02-710-4357	
양재지점	02-3460-5423	
포천지점	031-543-7687	
부산·울산	부산경남영업본부	051-605-3122
	부산지점	051-605-3021
	사상지점	051-310-9622
	울산지점	052-226-7822
	동래지점	051-580-4213
	사하지점	051-200-9612
	부산중앙지점	051-660-5023
	녹산지점	051-974-6622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대구 · 경북	대구경북영업본부	053-430-8913
	대구지점	053-430-8822
	대구서지점	053-560-5022
	포항지점	054-271-6412
	구미지점	054-450-2512
	대구동지점	053-757-5813
	대구북지점	053-350-8832
	성서지점	053-589-6523
	경산지점	053-810-0912
	안동지점	054-840-8612
	영주지점	054-639-1511
	경주지점	054-749-5067
칠곡지점	054-975-3295	
광주 · 전남	호남영업본부	062-607-9184
	광주지점	062-607-9122
	여수지점	061-640-2621
	목포지점	061-280-9112
	광주남지점	062-600-1512
	순천지점	061-729-1312
	광산지점	062-949-0122
	광주북지점	062-520-2022
경기	경기영업본부	031-230-1582
	수원지점	031-230-1522
	안양지점	031-389-9732
	성남지점	031-725-5522
	평택지점	031-650-0822
	이천지점	031-630-0113
	용인지점	031-288-1822
	군포지점	031-450-6413
	화성지점	031-350-9314
	경안지점	031-799-0221
	화성서지점	031-8059-8513
오산지점	031-371-6114	
인천	인천영업본부	032-450-1673
	인천지점	032-880-3022
	반월지점	031-490-0422
	인천중앙지점	032-450-1612
	부평지점	032-500-2713
	안산지점	031-412-0522
	남동지점	032-810-5212
	부천중앙지점	032-650-6513
	시화지점	031-488-3213
	인천서지점	032-580-1432
	시흥지점	032-620-2213

지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대전·충남	충청영업본부	042-539-5606
	대전지점	042-250-2022
	천안지점	041-550-8022
	서산지점	041-661-5222
	대전중앙지점	042-539-5642
	대덕지점	042-620-5332
	아산지점	041-548-7601
	보령지점	041-936-9162
강원	서울동부영업본부	02-2141-3342
	춘천지점	033-250-2512
	강릉지점	033-650-8012
	원주지점	033-749-1342
	속초지점	033-638-0163
	동해지점	033-531-9094
충북	충청영업본부	042-539-5606
	청주지점	043-261-9332
	충주지점	043-840-1522
	증평지점	043-820-2505
	제천지점	043-645-9135
전북	호남영업본부	062-607-9184
	전주지점	063-230-2512
	군산지점	063-460-1513
	익산지점	063-830-3322
	정읍지점	063-531-1613
경남	부산경남영업본부	051-605-3122
	창원지점	055-269-0232
	진주지점	055-760-7613
	마산지점	055-240-5913
	김해지점	055-320-2731
	통영지점	055-640-6512
	양산지점	055-371-3111

### ● 기술보증기금

지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서울	서울본부	02-785-2040 [160]
	종로기평	02-738-7980 [701]
	구로기평	02-859-4321 [120]
	가산기평	02-818-4310
	의정부기평	031-820-0300 [340]
	강남본부	02-563-4020 [270]
	서초기평	02-3476-7265 [130]
	송파기평	02-3400-7950
	성남본부	031-781-1011 [201]

지 역	지점명	담당자 연락처
부산울산	부산본부	051-606-7689
	동래기평	051-517-6070 [201]
	사상기평	051-327-8771 [201]
	사하기평	051-207-2501 [101]
	울산기평	052-268-8721 [101]
	녹산기평	051-832-0460 (101)
대구경북	대구본부	053-251-5651
	대구서기평	053-652-1861 [301]
	대구북기평	053-356-0421 [201]
	구미기평	054-455-7881 [201]
	포항기평	054-275-3961 [201]
광주전남	광주본부	062-361-1134 [130]
	제주출장소	064-727-0271 [100]
	광주서기평	062-941-6833 [101]
	목포기평	061-284-0394 [101]
	순천기평	061-724-7231 [101]
경기	수원본부	031-8006-1510
	안양기평	031-459-2071 [201]
	안산기평	031-401-0260 [201]
	시화기평	031-432-6541 [201]
	평택기평	031-656-7221 [201]
	화성기평	031-366-4411 [501]
인천	인천본부	032-429-5813 [200]
	인천중앙기평	032-814-1101 [101]
	부평기평	032-623-6140 [301]
	부천기평	032-327-1451 [130]
	일산기평	031-932-9211 [301]
대전충남	김포기평	031-986-2053 [101]
	대전본부	042-483-7451 [650]
	대전동기평	042-254-6457 [201]
	천안기평	041-629-5920
강원	아산기평	041-541-2211 [101]
	춘천기평	033-241-7161 [201]
	원주기평	033-730-8320
충북	강릉기평	033-642-1021 [101]
	청주기평	043-290-9510
전북	충주기평	043-842-1591 [101]
	전주기평	063-251-9890 [101]
경남	익산기평	063-853-2151 [200]
	창원본부	055-289-8401 [110]
	진주기평	055-746-8401 [101]
	김해기평	055-321-0840 [110]
	양산기평	055-387-6571 [201]



## 16-2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지원사업

건강진단을 통한 컨설팅 연계 지원

“중소기업 건강진단”의 연계과정으로 진단결과 “공정혁신 처방”을 받은 기업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과제 규모에 따라 소요비용의 30 ~ 50%를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28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전체 예산 54억원)

\* 컨설팅 과제 규모(최대 1억원 미만)에 따라 30 ~ 50%(최대 3천만원) 정부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건강진단” 결과 “공정혁신” 처방을 받은 기업
  -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농공상융합기업, HACCP(GMP), 수출유망기업 등 가점 우대(최대 5점)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기 지원 여부 등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 항목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 과제로 판명
  -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컨설팅 지원사업을 기 수행중인 기업 등
-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항목(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자)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컨설팅 비용의 30~50%를 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정부지원금)

분야	지원 조건	컨설팅 내용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력 및 업종 제한 없음</li> <li>• 총 사업비의 30 ~ 50% 한도</li> <li>•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컨설팅 과제 규모 1억원 미만,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혁신” 처방전에 제시된 치유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경영·기술 전 분야)</li> <li>•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공정개선, 원가절감, 인사, 재무, 마케팅, 조직운영, 전략수립 등</li> </ul>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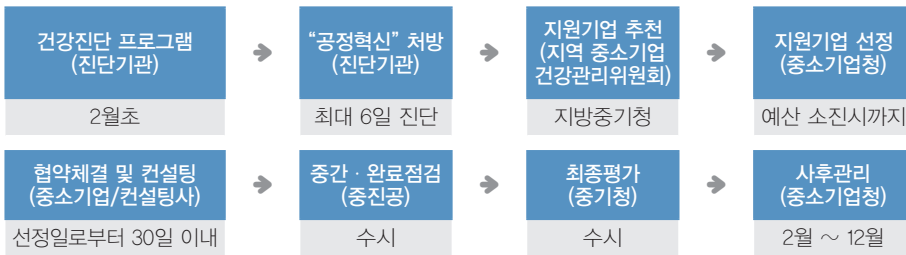
13년 2월 부터 ~ 예산 소진시 까지(별도 공고)

- 중소기업컨설팅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 서류

- 추천서, 공정혁신 컨설팅사업 참여신청서(온라인 www.smbacon.go.kr 제출), 컨설팅 수행계획서(컨설팅사)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8909, 4523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기술처 : 02-769-6671, 667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bacon.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3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 16-3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

창업기업의 조기안정화 및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외부 전문가의 진단·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및 기술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과제 규모에 따라 소요비용의 30 ~ 65%를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40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전체 예산 71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자(5년미만)
  -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농공상용합기업, HACCP(GMP), 수출유망기업 등 가점 우대(최대 5점)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기 지원 여부 등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 항목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 과제로 판명
  -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컨설팅 지원사업을 기 수행중인 기업 등
-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항목(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자)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컨설팅 비용의 30 ~ 50%를 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정부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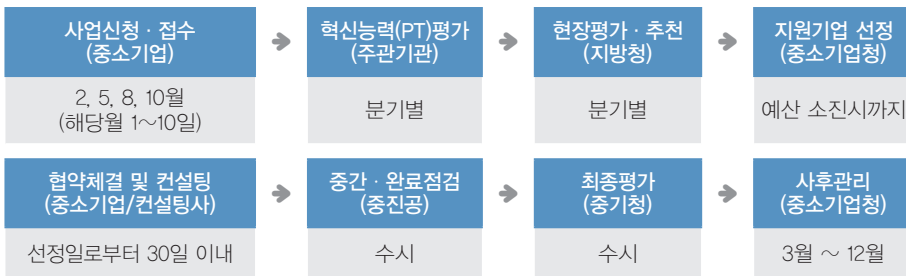
분야	지원 조건	컨설팅 내용
지속성장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력·업종 제한 없음</li> <li>• 총 사업비의 30 ~ 50% 한도</li> <li>• 사업기간: 최대 6개월 이내</li> <li>• 컨설팅 과제 규모 1억원 미만</li> <li>•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기술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li> <li>•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선, 원가절감, R&amp;D사업화, 재무, 노무·인사, 마케팅전략,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화 등</li> </ul>
창업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력 5년 미만</li> <li>• 총 사업비의 65% 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성장 컨설팅과 동일</li> </ul>
원스톱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최대 6개월 이내</li> <li>• 정부지원한도: 창업컨설팅 최대 2천만원, 원스톱창업지원 최대 1,2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타당성 검토, 법인설립·공장설립 절차대행, 법인전환 대행, 경영교육 등</li> </ul>

### 신청·접수

‘13년 2월, 5월, 8월, 10월(해당월 1~10일까지 신청·접수)

- \* 지속성장(창업) 컨설팅은 연 4회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 조기소진시 별도 공지예정
  - \* 원스톱 창업지원은 연중 수시·신청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중소기업컨설팅 홈페이지([www.smbacon.go.kr](http://www.smbacon.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8909, 452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 02-3787-0431, 0444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2013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16-4 기업회생컨설팅 지원

부실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비 90%지원

채무불이행과 워크아웃 등의 상태에 있는 부실 중소기업의 조기 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회생을 위해 컨설팅 비용의 90%를 업체당 1,8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규모

15개사, 업체당 1,800만원 이내(전체예산 2억원)

\*2012년 지원 현황 : 23개사 지원, 업체당 1,300만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혹은 신청예정인 기업

\* 본 사업은 재정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한(6개월 이상)의 운전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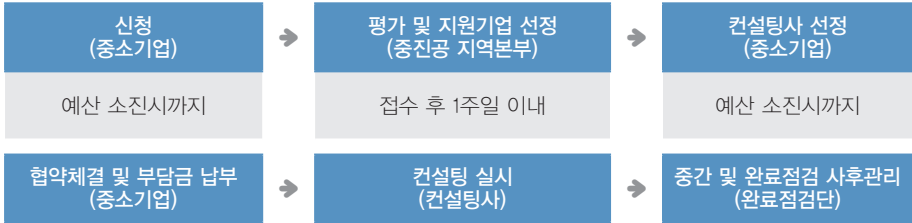
### 지원 내용

- 컨설팅 비용의 90%를 업체당 18백만원 한도내에서 1~6개월간 지원
- 회생계획안 또는 경영정상화계획안 수립 및 절차 컨설팅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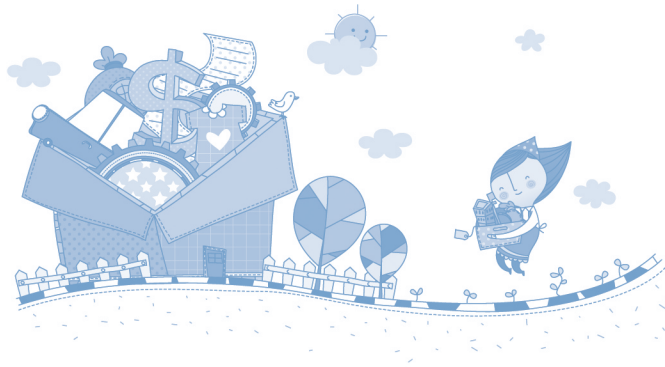
- 중소기업 회생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revive.or.kr](http://www.revive.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530
-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www.revive.or.kr) : 02-769-6804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3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 비즈인포(www.bizinfo.go.kr)





## 16-5 녹색경영 평가, 그린비즈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녹색경영 길잡이

녹색경영 전문가(평가, 진단·개선)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전반에 대한 녹색경영 수준을 평가 또는 진단하고, 기업의 규모와 사업특성에 맞는 녹색경영 개선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500개사(전체 예산 18억원)

\* 녹색경영 평가 300개사, 녹색경영 진단·개선 200개사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신청·접수** '12. 3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중소기업 그린넷 홈페이지([www.greenbiz.go.kr](http://www.greenbiz.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 내용

#### [ 녹색경영 평가 ]

- 녹색경영 평가지표(5대분류 20개 평가항목)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활동수준을 평가하여 녹색경영 등급 확인서를 발급(S, A~D등급)

- 평가결과 S, A 등급은 우수 그린비즈(Green-Biz)로 선정하고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
- 정부지원 : 총 평가비용의 65% 이내, 52만원 한도(2 Man of Day)

[ 그린비즈 컨설팅 ]

-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평가결과를 토대로 취약부분을 심층 진단하여 녹색 경영 개선전략 제시
  - 녹색경영 진단결과 정량적 개선효과가 높은 과제 위주로 개선 지원
    - 우수 Green-Biz 선정을 위한 녹색경영시스템 구축
  - 총 비용의 65% 이내, 1,000만원 한도(6개월, 10~20MD)
- 우대 지원** \* 각 호별 1점씩 3개까지 가점 인정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출 서류

사업명	제출서류
녹색경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 접수시 : 녹색경영현황서</li> <li>· 현장 평가시 확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ISO 14001 인증서 사본 (해당기업의 경우)</li> </ul>
그린비즈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 접수시 : 수행계획서(수행기관 작성)</li> <li>· 현장 평가시 확인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4대보험 납입증명서,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기업)</li> </ul>

처리 절차

\* (예시) 녹색경영 평가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녹색성장팀 : 042-481-4508, 각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경영확산지원단 : 02-769-6913/6918
- 한국표준협회 그린경영팀 : 02-2624-0158
- 중소기업 그린넷(www.greenbiz.go.kr)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녹색경영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 ☞ 녹색경영 평가전문가가 평가지표(5대분류 20개 항목)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전략, 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사회·윤리적 책임 수행정도를 평가한 후 점수에 따라 5개 등급(S, A~D)을 매깁니다.
- 우수 Green-Biz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 기기 고효율화, 설비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 우대, 중기청 R&D사업 참여시 가점,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공공기관 납품 및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평가 우대 등 중기시책 참여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용어 설명

- 녹색경영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합니다.



## 16-6 중소기업간 해외녹색규제 협력대응지원

중소기업간 해외 녹색규제 상생 대응

완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에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중간모기업)과 협력기업간 녹색공급망관리(SCM)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수출중소기업의 해외 녹색규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사업입니다.

### 지원 규모

10개 주관기업(전체 예산 17억원)

### 지원대상

- 완제품 또는 부품·소재를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10개 내외의 협력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주관기업
- 주관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및 수출비중 20% 이상
- 협력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 종업원 5인 이상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지식경제부 그린파트너십 사업의 지원을 받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 협력사

### 지원 내용

- 기후변화 대응, 제품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환경경영 교육 및 전문가 양성, 환경경영시스템 현장진단, 생산설비 공정진단·개선,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총 비용의 65% 이내, 1.5억원 한도(8개월 이내)
  - \* 단, 기업부담금은 현금 15% 이상, 현물 10% 이내이어야 함

### 신청·접수 '12. 3월

- 중소기업 그린넷 홈페이지(www.greenbiz.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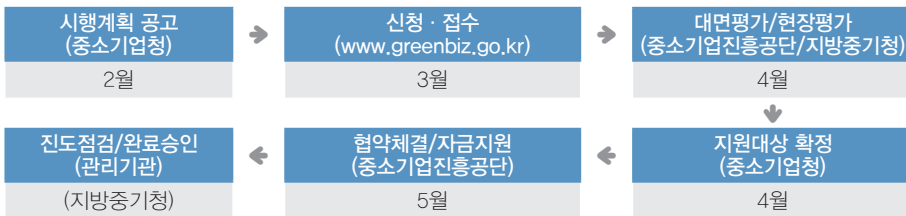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 관련 서식 : 중소기업 그린넷(www.greenbiz.go.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현장평가 시 제출서류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4대 보험 납입 증명서(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녹색성장팀 : 042-481-4508, 각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경영확산지원단 : 02-769-6915
- 중소기업 그린넷(www.greenbiz.go.kr)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 용어 설명

- 그린 SCM  
중소·중견 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녹색경영체제 구축 노하우, 청정생산 기술 등을 협력기업에 제공하여 녹색경영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system 구축을 지원하는 Supply Chain Management의 약어



## 16-7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지원단

중소기업 고민해결사

중소기업 전문상담 자격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상시 상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금융, 법률, 마케팅, 기술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며, 단순자문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드립니다.

### 지원규모

전체 40.5억원(전문가 상담 24.2억원, 현장클리닉 지원 16.3억원)

\* '12년 지원현황 : 전문가 상담 91,501개사, 현장클리닉 2,212개사

### 지원 대상

- 전문가 상담 : 지원 대상 제한 없음
- 현장클리닉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 제외

- 세무조정(기장) 대행, 특허출원 및 등록 대행, 산재소송 관련 업무대행, 인증 등관련 분야에 대한 대행 업무 지원 불가
-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 절차 대행, 이익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환급 청구대리 등 수출입 관련 대행 업무 지원 불가
-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유사사례 대규모 소송 관련 대행 업무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전문가 상담 :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운영중인 비즈니스지원단의 분야별 전문가를 상시 배치하여 온라인상담(www.bizinfo.go.kr), 전화상담(☎ 1357), 방문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 현장클리닉 지원 : 전문가 상담으로 해소되지 않는 단기 애로에 대해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단기간(3일 이내)에 애로 해결
  - ▶ 지원기준(정부 70%, 기업부담 30%) : 1일 40만원, 2일 75만원, 3일 105만원

● 현장클리닉 지원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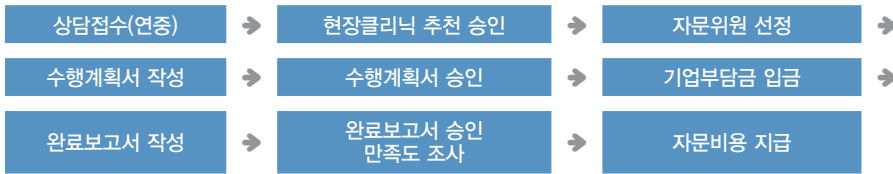
지원분야	세부지원내용
창업/벤처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벤처 등록 등
법무/규제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등
금융/환위험관리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노무	인사관리,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노동조합관리 등
세무/회계	재무분석, 세무/회계관리,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등
경영전략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등
기술/특허	기술자문, 기술동향,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강화 등
정보화/융합기술	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정보화교육, 정보화 융합기술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작업개선, 품질개선, 원가관리, 공정개선 등
마케팅/수출	마케팅전략, 시장조사, 수출정보, 수출입관련정보, 관세법, FTA 활용 등

- ▶ 세부지원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심의 후 지원 가능
- ▶ 지원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 주류·담배증개업, 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 신청·접수

- 온라인 상담 : 중소기업종합지원서비스 Bizinfo(www.bizinfo.go.kr)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방문상담 : 가까운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 처리 절차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현장클리닉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592, 4397
-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중기맨이  
떴다!

우수지원사례 (주)다이테크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 업체현황
  - 설립일 : 1997년 8월
  - 대표자 : 조규성
  - 주요생산품목 : 금형제조
  - 임직원 수 : 63명
  - 매출규모 : 187억원
  - 소재지 : 경남 양산시

경남 양산시에 있는 금형제조업체 (주)다이테크는 1991년 설립하여 프랑스, 멕시코, 미국, 터키, 태국, 일본, 러시아 등에 자동차 차체 부품 금형 및 몰드 금형을 납품하는 100% 수출기업으로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완비한 견실한 업체이다.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고자 2009년에 현재 공장을 매입, 확장 이전하여 단계별로 생산 공정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업무 관련 서류 및 데이터 관리의 부재로 인해 업무 공정 진전에 차질을 빚고 있었고 자재 재고 및 불량률의 관리에 낭비되는 시간적 소비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회사의 원가손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 회사는 공정혁신에서 재무관리까지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에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알게 되면서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건강진단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공정 개선분야에 대한 해결방안을 들을 수 있었다.



경영성과분석을 통해 높은 경비율(43.7%)을 점검하여 그 동안 수출시 놓치고 있던 관세 환급부분을 지적받고, 관세사를 통해 수출품목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HS코드를 정확히 분류하여 관세를 환급(1억2천만원) 받게 되었고, 주거래은행 대출요건 재검토를 통해 금융비용 1억5백만원 절감(연간)할 수 있었다.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을 통한 ERP구축으로 데이터도입시간 및 서류시간 85% 단축, 제품 및 자재재고 55% 감소, 노동생산성 15%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금형제작 공정 중 사상연마작업 최소화를 위해 공정혁신을 지원받아 기술 인력의 이직을 막고, 공기 중 분진오염도와 분진가루를 줄여 클린사업장을 구현함으로써 근로자의 폐질환 및 산재발생을 줄여 간접비용(198백만원)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조규성 (주)다이테크 대표는 “이번 건강진단으로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공정혁신과 체계적인 재무관리를 통해 운영비용이 절감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고 말했다.

중기맨이  
떴다!

우수지원사례 (주)민진 - 컨설팅지원사업



- 업체현황
  - 설립일 : 2000년 1월
  - 대표자 : 기근서
  - 주요생산품목 : 화장품용기
  - 임직원 수 : 76명
  - 매출규모 : 87억원
  - 소재지 : 경기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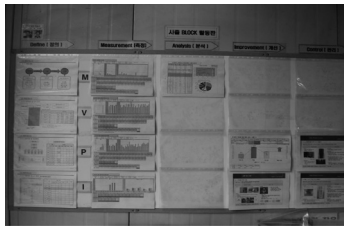
(주)민진은 2000년 설립하여 화장품 용기 및 부자재를 생산해왔으며, 2010년 기준 자산총계 11,834백만원, 매출액 8,706백만원의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화장품 부자재를 개발 및 생산함으로써 기술적 기반을 확립, 동종업계 5위의 대외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의 성숙기로 수요창출에 한계를 느껴 해외로 진출하기위한 총체적인 진단과 해결이 필요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찾은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이 해답을 제시 해 주었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느끼는 막연함을 세분화시키고 그 안에서 다시 목표를 정립하도록 이끌었다. 종합적으로는 생산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생산성과 품질관리 체제를 강화하며 자재수불 관리, 적정재고 관리와 협력사 관리체제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 목표는 다시 생산관리 부문, 자재관리, 품질관리, 생산성 향상, 영업부문, 공장 청정 등의 8가지 세부 부문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 각 부문별로 기준이나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협력해야 할 부서나 업체별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공통적인 문제였다. 생산관리 부문에서는 수주 후 관련부문 간 진척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 납기준수율이 미흡해 기업의 신뢰도가 낮아질 위험이 있었다. 납기 준수여지가 부족하고, 일정관리가 미흡하며 사내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판재회의체를 시행해 대표이사가 주관하는 일일생판 재회의를 운영하고, 생산진행관리표 일일 시트를 사용해 생산부문 공정별 진척관리를 운용하기로 했다. 일일납품계획대비 준수건수에 대한 관리와 월 집계관리를 통해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고 유형별로 관리함으로써 미납요인을 알고 향상대책을 세울 수 있는 프로세스로 변화를 꾀했다. 자재의 입불출관리가 미흡하고, 적정 재고량 관리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으며, 사출협력업체와 정보교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자재 일일입불출관리표를 적용하고, 사출 부문에 대한 재료 사양별 원재료 입고 관리체제를 만들어 적정 재고량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도출과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통해 사출기 후가공 불량률 개선하는 작업과 작업 표준서를 적용해 매일 사출기별로 성형조건표에 의한 집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성형 자주 검사시트에 의해 점검한 후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부서 간에도 소통이 원활하도록 했다. 성형 자주 검사시트에 의해 점검한 후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부서 간에도 소통이 원활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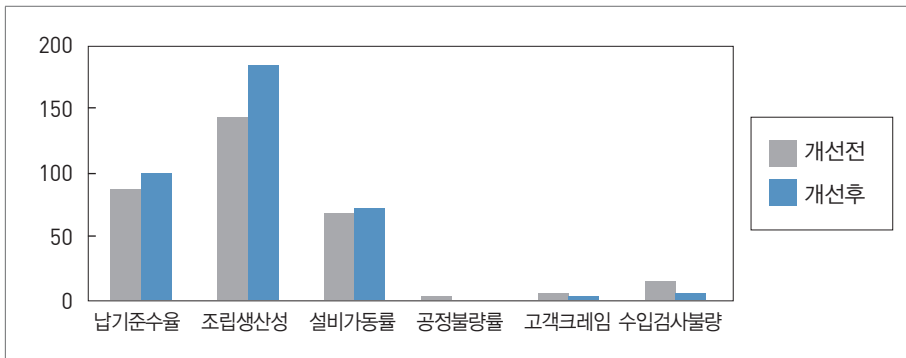
한 번 들어온 클레임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발생 공정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통해 개선하는 작업도 필요했다. 설비관리 상태가 미흡해 사출 10호기에 대한 일일가동 관리표를 운용하며 설비자주점검표를 현장에 부착해 관리하고, 설비 5S활동을 추진했다.



현장관리가 미흡해 부품, 파렛트 등의 정위치가 불량한 부분과 출입문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외관상 혐오스러웠던 부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사내청소활동과 기초질서에 관한 규정을 수립해 사원들의 책임감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표와 점수관리표를 만들었으며, 인센티브제 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불량률이 69%가 감소하였고 고객크레임도 52%감소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 컨설팅 효과

구 분	개선전	개선후	개선효과율
납기준수율	89.4%	97.8%	9.3% 향상
조립생산성	144 EA/시간	185 EA/시간	28.4% 향상
설비가동율	67.5%	74.5%	10.3% 향상
공정불량률	2.9%	0.9%	68.9% 감소
고객크레임	5.7%	2.7%	52.6% 감소
수입검사불량	14.9%	6.0%	59.7% 감소



## 8부. 소상공인 · 전통시장

S M A L L A N D M E D I U M B U S I N E S S A D M I N I S T R A T I O N

# 소상공인·전통시장 멋지게 변신하세요.

<b>17</b>	<b>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b>	<b>346</b>
	소상공인 창업교육 · 현장에서 배우는 자영업 창업 교육	347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 업종 고급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배우는 교육	349
	소상공인 e-러닝교육 ·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무료 교육	350
	소상공인 교육장 지원 · 소상공인이라면 야간 · 주말 언제라도 무료로 이용 가능	352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자영업자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354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사업 ·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356
	소상공인방송(yestv) · TV 보고 성공하기	358
	상권정보시스템 · 발품 팔지 않고 한눈에 보는 상권정보	360
<b>18</b>	<b>맞춤형 경영개선과 협업화 지원</b>	<b>362</b>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363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 중소소매업의 물류 공동화 지원	365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가맹본부의 시스템 수준을 평가	368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본부로 발전하도록 지원	370
	소상공인 자금 지원 · 경영개선과 나들가게, 협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371
	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 소상공인의 든든한 후원자	376
<b>19</b>	<b>대형할인점 부럽지 않은 고객중심형 전통시장</b>	<b>378</b>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 편리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만들기	379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볼거리가 있어 더욱 가고 싶은 전통시장	382
	시장경영 혁신지원 · 변해야 이길 수 있다	38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 · 전국 어느 전통시장에서나 이거 하나면 OK!	388



###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소상공인 · 전통시장Q&A

Q. 지금 영업하는 슈퍼마켓을 그만두고 음식점을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교육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지요?

A. 업종전환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업종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업종전환교육(8시간)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창업 전과정을 6단계로 나누어 창업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 및 현장 실습을 종합적으로 교육 및 지원하는 실천창업교육(80시간)은 5만원을 부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창업 · 직업교육 사업설명 참조)

Q. 8년째 동네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100m 이내에 미용실이 10개나 되다 보니 단골손님까지 뺏기고 있네요. 경쟁력 있는 점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A. 장사가 잘되는 점포로 변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소상공인경영개선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시간 이내의 단기교육인 기본교육과 20시간 내외의 전문교육으로 운영됩니다. (소상공인경영개선교육 사업설명 참조)

Q. 치킨점을 운영하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와 달리 요즘에는 많이 힘이 듭니다. 만약 문을 닫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70만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고, 연 복리이자율이 적용됩니다.(소상공인 공제제도 사업설명 참조)

Q. 인천 지역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볼까 하는데 상권분석에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자주 가볼 수도 없는 형편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상권정보시스템(<http://sg.smba.go.kr>)에 접속하시면 전국 1,500대 상권의 상세한 상권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점포, 인구(유동인구 포함), 시설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47종의 정보가 수록돼있고,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돼 원하시는 지역의 상권을 편리하게 분석해보실 수 있습니다.(상권정보시스템 사업설명 참조)

Q. 장사를 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이 너무 낡아 방문객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싶지만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공동화장실,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 편의시설 설치와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등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이내에서 민간이 자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설명 참조)

Q. 충북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입니다. 시장에 입주한 258개 점포의 상인들에게 상인 교육을 할 예정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상인대학, 단기특강 형식의 맞춤형 교육, 전문교육, 정보화 교육 등을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무료입니다.(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설명 참조)

# 17

##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7-1 소상공인 창업교육 · 347
- 17-2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 349
- 17-3 소상공인 e-러닝교육 · 350
- 17-4 소상공인 교육장 지원 · 352
- 17-5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354
- 17-6 소상공인 무료 법률 구조 · 356
- 17-7 소상공인방송(yestv) · 358
- 17-8 상권정보시스템 · 360



## 17-1 소상공인 창업교육

현장에서 배우는 자영업 창업 교육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론교육, 현장실습 및 인턴체험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 지원 규모

24,440여명 (실전창업교육 4,340명, 업종전환교육 20,000명 등)

###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폐업자, 업종전환 예정자 포함)

### 지원 내용

- 실전창업교육(130시간)
  - 창업 전과정을 6단계로 나누어 창업준비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실무를 종합적으로 교육
  - 창업공통교육→전문교육→창업인턴근무→워크샵→사후관리
  - \* 교육생 부담금 50,000원(현장실습비)
- 업종전환교육(8시간)
  - 업종전환자 및 폐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신업종으로의 전환 및 재창업 유도를 위한 교육

### 신청·접수

'13. 2월 ~ 11월

####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 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eduinfo.seda.or.kr) → 교육신청 → 창업(학교)교육 → 지역별 교육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 교육 절차



###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원(www.seda.or.kr) : 042-363-7762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30



#### 궁금해요! 중기맨

- 창업교육은 자부담금이 얼마인가요?  
☞ 창업교육(130시간)은 현장실습비 5만원의 교육생 부담금이 있습니다. 업종전환교육(8시간)은 자부담금이 없는 무료교육입니다.



## 17-2 소상공인 경영개선교육

업종 고급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배우는 교육

소규모 자영업자가 주변 상권에 맞는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상권분석 방법,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한 기술교육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53,600명(7,802백만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존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업종 및 지역별 특성화된 교육지원

- 경영기본과정 : 경영자 마인드, 고객서비스 등 단시간 특강형 대규모 교육
- 업종전문과정 : 업종별 기술 실습, 전문경영지식 전달 등 소규모 전문교육
- 지역특화과정 : 지역별 상권분석, 마케팅 관련 세미나, 토론 등 참여식 교육

**신청 · 접수**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13. 2월 ~ 11월)

\* 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eduinfo.seda.or.kr) → 교육신청 → 경영개선교육 → 지역별 교육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교육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원(www.seda.or.kr) : 042-363-7764~5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30



궁금해요! 중기맨

- 경영개선교육을 받으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12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시면 정책자금(우선지원자금)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 소상공인경영개선교육은 국비지원 무료교육입니다.



## 17-3 소상공인 e-러닝교육

언제 ·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무료 교육

집합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인터넷을 통해 맞춤형 경영개선 및 창업교육을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회원가입만 하시면 누구든 수강가능

### 지원내용

- 부담없는 학습을 위해 30분 이내의 동영상, 만화 및 미니드라마로 구성  
(e-러닝콘텐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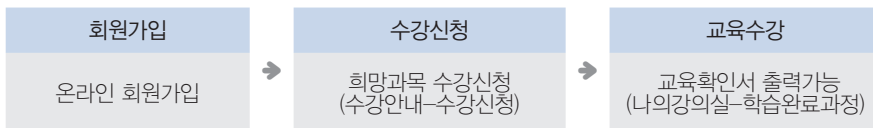
구분	과정	과목	주요 내용
창업공통	34	87	· 창업실무 및 준비사항, 아이템 선정, 상권분석 등 창업에 필수적인 내용 및 미니드라마형 사례 과정
실전창업	18	56	· 커피전문점, 폼아트, 선물포장, 인터넷창업 등 업종별 창업 준비 과정으로 구성('11:그린PC방, 전통공예 등 추가)
경영교육	37	117	· 음식, 슈퍼·체인,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화훼, 화장품, 제과업, 프랜차이즈 등 업종별 경영 전문 과정으로 구성
합계	89	260	· 원하는 과정만 선택적으로 수강 가능

### 교육 신청

'13.1.3~12.31

- 소상공인 e-러닝센터(<http://edu.seda.or.kr>)으로 접속

### 교육신청 절차



### 문의처

- 소상공인 e-러닝센터 : 1577-5302
- 소상공인지원센터(www.seda.or.kr) : 042-363-7642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30



### 궁금해요! 중기맨

- 소상공인 e-러닝센터! 교육수강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회원가입만 하시면 누구든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언제라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7-4 소상공인 교육장 지원

소상공인이라면 야간·주말 언제라도 무료로 이용 가능

최신교육기자재가 설치된 전용교육장을 무료로 제공하여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외계층 및 직장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소상공인, 업종별단체, 교육기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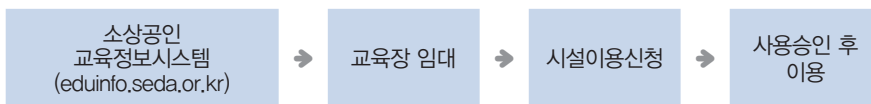
### 이용내용

- 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18:00, 야간·주말 이용가능)
- 이용목적 : 비영리 목적의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직원교육, 연수, 워크샵 등

〈소상공인전용교육장 현황〉

구분	주소	수용인원	전화번호
대 전	서구 둔산 2동 1032 동서빌딩 6층	120명	042-363-7792
서 울	종로구 견지동 110-22번지 대성스카이렉스빌딩 101동 309호	80명	02-723-0173
광 주	서구 농성동 260 상록회관 5층	80명	062-367-0135
부 산	중구 중앙동 3가 1 우체국보험 부산회관 12층	90명	051-463-0212
대 구	북구 칠성동 2가 2-13 리치프라자 2층	130명	053-353-7667
청 주	흥덕구 가경동 1042 신한은행 3층	106명	043-234-1095
충 주	성서동 1번지 신한은행 3층	40명	043-854-3616
제 천	제천시 명동 4-16번지 신한은행 2층	40명	043-652-1781

**이용신청** 연중 상시 신청



###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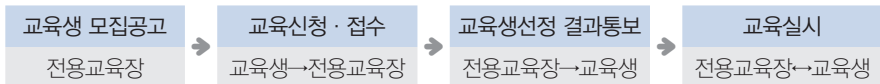
- 특화전문교육 : 소상공인 영업현장에서 겪게 되는 세금, 무역, 산업재해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교육
- 소외계층교육 : 재소자·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창업 및 실무 교육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등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 야간·주말교육 : 주간에 교육받기 어려운 직장인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

### 교육 신청

연중 상시 신청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http://eduinfo.seda.or.kr>)으로 접속 → 교육신청 클릭

### 교육 절차



###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원([www.seda.or.kr](http://www.seda.or.kr)) : 042-363-7642
- 소상공인진흥원([www.seda.or.kr](http://www.seda.or.kr)) → 진흥원 소개 → 찾아오시는 길(전국교육센터)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30



### 궁금해요! 중기맨

- 소상공인전용교육장 교육장임대는 소상공인이거나 무료로 빌릴수 있나요??  
☞ 네, 소상공인이거나 언제든지 무료로 임대 가능합니다.



## 17-5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자영업자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 업종전환 등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5,600건(전체 예산 59억원)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근로자 10인 미만
-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한 자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지원 내용

- 자영업 건강진단 및 컨설팅 코디네이터를 통한 고객맞춤형 컨설팅 유형 처방
- 경영·업종전환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전문인력을 사업장에 파견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
  - \* 컨설팅 지원비용은 전체비용의 9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
  - \*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컨설팅의 경우 지급비용 환수,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
- 세부사업내용

구분	수행	일수 (기간)	컨설팅 내용	자부담금
소상공인 희망컨설팅	컨설팅기관	1~5일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장기 집중관리 컨설팅 지원 *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무료

구분	수행	일수 (기간)	컨설팅 내용	자부담금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비법전수 전문가/ 컨설팅기관	1~5일	업종별 명장 · 기능장 등 노하우 비법전수컨설팅(1: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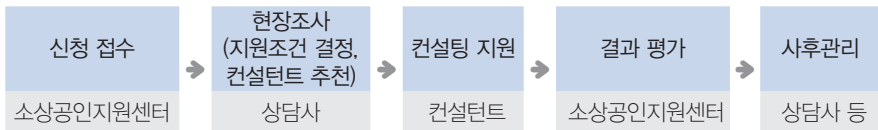
### 신청 · 접수 '13. 3월 ~ (자금소진시까지)

-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eda.or.kr>) 또는 자영업컨설팅 홈페이지(<http://con.sed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공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온라인 등록)
- 기존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예비창업자 : 사업자 등록증, 점포 임대차 계약서

### 처리 절차



###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원 : 지역센터 1588-5302, 교육지원부 042-363-7621~4
-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 : <http://con.seda.or.kr>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30

### 궁금해요! 중기맨

- 컨설팅 업체부담금은 어느 시점에 납부해야 하나요?  
☞ 컨설팅 코디네이터(상담사)와 함께 컨설팅 지원내용을 협의한 후 컨설팅 지원유형이 결정이 되면, 자부담금 납부관련 안내문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드립니다.



## 17-6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700건(전체 예산 1.6억원)

\* '12년 지원현황(12.11월말 기준) : 324개 업체 지원

**지원 대상**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근로자 10인 미만
-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한 자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승소가액 2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접수** 연중 수시 신청(자금소진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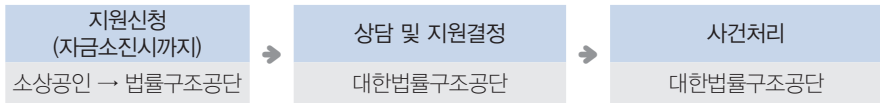
-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 제출 서류

구분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li> <li>·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li> <li>·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li> <li>· 사업자등록증</li> <li>· 사업자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세무서)</li> <li>·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li> </ul>
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사업자가입자 증명 등 &lt;국민연금공단&gt;</li> <li>·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원본대조필)</li> <li>· 임금지급대장(대표자 직인 날인) 등 → 상시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1개 서류만 제출</li> </ul>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 처리 절차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621~4)



## 17-7 소상공인방송(yes-TV)

소상공인의 성공을 돕는 방송 yesTV

「소상공인방송 yes-TV」는 국내 유일의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채널입니다. TV,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 내용

- 연간 4,000여편의 소상공인 관련 업종별 창업 및 경영정보 프로그램 방영
  - 지역별 채널번호는 소상공인방송(yesTV) 홈페이지 시청안내 참조
  - 소상공인방송(yesTV) 홈페이지 주소 : [www.yestv.or.kr](http://www.yestv.or.kr)
-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방송프로그램별 다시보기(VOD)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이용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소상공인방송' 검색 후 전용 어플 다운로드
-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예비창업자 창업준비 지원을 위해 방송출연 기회 제공

### 주요 프로그램

분 야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편수
종합 정보	생생창업정보쇼	데일리 종합정보 프로그램	87
	소상공인플러스PM8		220
	소상공인플러스PM830		215
	오아시스		478
	성공예감 Yes I Can		478
	왕중군 이세진의 성공을 부르는 밤		215
	왕중군 이세진의 성공파트너		239
	힐링타임 100% 중전쇼		86
	소상공인		220
창업 정보	나홀로창업	관심분야를 특화시켜 성공을 이룬 소상공인 소개	18
	성공을 여는 아침	창업에 대한 전문가의 노하우 강좌 프로그램	87
	창업컨설팅 1357특공대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컨설팅 버라이어티	18
	창업다이어리	창업을 위한 준비부터 오픈까지의 실속 정보 제공	17
	손에 잡히는 프랜차이즈	유망 프랜차이즈 소개 및 성공요인 분석	87
	스마트촌(村)	농어촌에서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한 소상공인 탐방	43
컨설팅	소자본창업	소자본 창업아이템 소개	44
	불황타파 터닝포인트	업종변경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의 맞춤 컨설팅	17
	WOW 컨설팅 플래너	창업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컨설팅 정보 제공	8
	도와침요 WOW 창업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1:1 컨설팅 제공	10
컨설팅	성공레시피	요식업분야의 메뉴컨설팅 및 추천 레시피 제공	44
	행복한 성공예감	의뢰인의 고민을 듣고 컨설턴트의 TV컨설팅	26
	소상공인 닥터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133
	전화위복 러브콜	소상공인과 직접 전화연결하여 고민상담 및 문제해결	153

분야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편수
상권 분석	도시락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 본 소상공 점포 분석	87
	팔도소상공인	전국팔도 이색 소상공인 소개	66
	돈이 보이는 상권	국내 도시별 대표적인 상권 소개	22
성공 노하우	대박가게의 비밀	남들이 모르는 성공 소상공인의 비법 소개	17
	프랜차이즈 명품백서	유망 프랜차이즈 성공노하우 제공	18
	錢(전)모양저	가정과 직장에서 성공을 이룬 여성소상공인 소개	17
	박정윤의 성공노트	성공한 CEO의 인생 노하우를 들어보는 토크쇼	17
	박정윤의 더리더스	성공한 CEO와 경제기자의 성공노하우 분석	44
	대박 노하우	성공 소상공인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휴먼다큐	44
	문전성시24시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 점포의 비결 공개	87
	경제다큐 명인	성공한 소상공 명인의 성공스토리	17
	경제다큐 비밀	성공 소상공인을 조명한 휴먼다큐멘터리 프로그램	44
	고수 vs 맞수	유사업종 성공 소상공인 2인의 비법대결	22
	가업을 잇는 DNA	세대를 넘어 한 길을 걷고있는 소상공인 일가 소개	22
	성공인 소공인	전통을 고수하며 묵묵히 살아오는 우리시대 소공인을 조명	31
	Best 셀러	유통과 판매에 유능한 소상공 점포의 비결 공개	31
현장 탐방	맛따라 길따라	잘나가는 대박 외식업 중심의 매장 운영 노하우 전수	48
	스타 창업 스토리 OnAir	스타들의 창업 성공기 소개	17
	Soul In Korea	외국인 진행자가 찾아가는 한국 소상공업 기행	44
	로드다큐 상인기행	쇠퇴해가는 전통 상권의 일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65
	원조탐험대	기발한 아이디어로 지방에서 화제가 되고있는 점포 소개	65
	희망나눔, 착한가게	함께 하는 것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착한가게 소개	65
제품 소개	떠나자 녹색충전	여가 레저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소상공인들의 이야기	48
	박 vs 박		18
	소상공인 유레카	생활 속의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 및 발명품 소개	44
해외사례	생활 속 명품의 재발견		44
	소상공인 아시아	아시아 소상공인 성공사례, 창업아이템 등을 소개	88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565
- 소상공인진흥원(www.seda.or.kr) : 042-363-7731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 비즈인포(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소상공인방송에 출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소상공인방송 각 프로그램의 PD와 작가가 방송 소재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출연자 섭외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송 출연을 원하신다면 방송홈페이지(www.yestv.or.kr) 출연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방송에 출연한 업체 연락처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소상공인방송 출연업체 연락처는 방송홈페이지(www.yestv.or.kr) 다시보기 페이지 내 방송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출연업체명을 입력하시면 연락처를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17-8 상권정보시스템

발품을 팔지 않고 한눈에 보는 상권정보

점포, 인구, 주요시설, 유동인구, 매출정보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32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49종의 상권분석 정보를 보고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지역별 · 업종별 상권분석 정보 제공
  - 지도상에서 지역과 업종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업종별 인구, 주요시설, 경쟁업소 현황 및 유동인구, 매출 등 49종의 상권분석정보를 보고서로 제공
- 시군구 상권정보 제공
  - 행정동별로 기본적인 지역정보와 업종정보를 통해 상권분석 전 예비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업종밀집정보 제공
  - 전국 주요상권내 50개 업종에 대한 밀집도 지수를 시각화(낮음~매우 높음)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선택상권의 업종별 밀집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제공
- 유동인구 맵
  - 시간대별 평균 유동인구를 도로상에 5단계로 표현하여 제공
- 상권로드 뷰
  - 상권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 골목 구석구석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업종밀집정보 시각화 제공
  - 전국 1,200대 주요상권을 대상으로 50개 업종에 대하여 전국대비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밀집지수를 시각화하여 제공
- 유동인구맵 제공
  - 상권내 도로위에 인구 통행량이 많고 적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색상으로 시각화하여 제공
- 모바일앱 제공
  - 웹에서 제공되는 49종의 상권정보 서비스중에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필수 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제공

## 이용방법

- 인터넷 이용
  -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seda.or.kr) 회원가입 후 이용
- 모바일 이용
  - 안드로이드 마켓 및 앱 스토어에서 '상권정보' 검색 후 전용어플 다운로드 후 이용

## 문의처

- 콜센터(1644-5302)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565
- 소상공인진흥원 방송정보부 : 042-363-7645



## 궁금해요! 중기맨

- 상권정보시스템 데이터는 어떻게 구축되며 언제 갱신되나요??
  - ☞ 상권DB는 32개 데이터생산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상권정보시스템에 수록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뒤 제공됩니다. 갱신주기는 생산기관 주기와 일치하며, 업소 데이터는 매일, 기타 데이터는 월 또는 년 단위로 갱신되어 상권정보시스템에 수록됩니다. 데이터의 출처와 갱신안내는 상권분석 화면의 각 테이블 상단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 용어 설명

- 주요시설, 집객시설
  - ☞ 주요시설 : 일정한 유동인구를 규칙적으로 발생시키는 시설, 공공기관, 은행, 병원, 학교 등
  - ☞ 집객시설 : 시기, 유행, 이벤트에 따라서 불규칙적이거나 유동인구의 발생이 많은 시설, 백화점, 영화관, 대형쇼핑시설, 숙박시설, 스포츠경기장 등
- 업종밀집정보
  - ☞ 다른 지역에 비해 선택상권의 업종별 밀집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
- 브랜드지수
  - ☞ 상권의 발달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상권내 유명브랜드의 입점 수준을 평균적인 수준과 비교하여 얼마나 많고 적은지를 지수로 표현

# 18

## 맞춤형 경영개선, 협업화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8-1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 363
- 18-2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 365
- 18-3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 368
- 18-4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 370
- 18-5 소상공인 자금 지원 · 371
- 18-6 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 376



## 18-1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의 협업사업 지원

\*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은 국내외 대형업체 진출 등에 대응하고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협업사업(공동 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등) 추진 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 지원 규모

300개 협업체(협동조합 우선), 예산 307억원

\* '13년 시범사업

### 지원 대상

5인 이상의 동업종 및 이업종간 자발적 협업체(협동조합)

- 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12121 시행)에 따른 조합이며, 구성원의 8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함(단, 대기업 참여 배제)
- 소상공인 정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자임

###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참조)
- 접수일 현재 참여업체 구성원 또는 참여업체 대표자가 아래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 ① 기업의 부도
  -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③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규제 중인 경우
  -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지원 내용

- 공동장비, 공동브랜드,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공동시설(창고), 업무전산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 지원비율 : 정부(80%), 자부담(20%, 현금출자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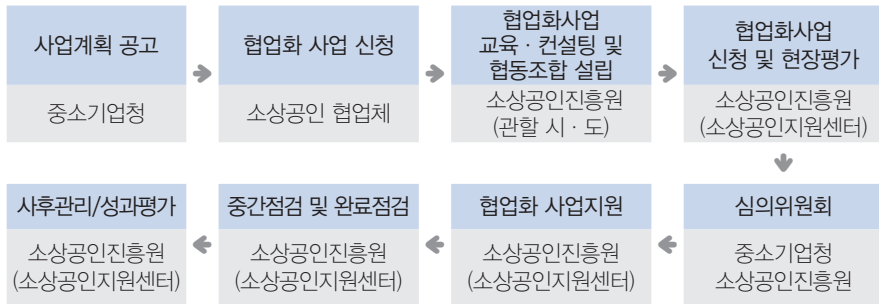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연중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 처리 절차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 소상공인지원원(042-363-7681~4), 홈페이지(www.seda.or.kr)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1)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3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협동조합이란?**
  -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 **협동조합 종류는?**
  - ☞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보건 의료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생산자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생산자협동조합) 임



## 18-2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유통·물류 공동화를 통한 중소기업 가격경쟁력 제고

공동구매 등 유통·물류 효율화를 통하여 상품공급가격을 낮추고, 골목수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단체의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3년도 7개 센터(계속 6개, 신규 1개, 전체 예산 161억원)

\* '13년도 지원규모는 '12년에 신청·심의하여 확정하였고 '14년도 지원은 '13년에 신청·심의

**지원 대상**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단체

-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50명 이상 소매업자 단체
-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10명 이상 도매·중개업자 단체

### 지원이 안되는 단체

-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지원 내용**

- 부지매입비, 건축비, 장비구입비 등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제반 비용
- 지원비율은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부담 10%

**신청·접수** '13. 1. 2 ~ 2. 28

- 신청방법 : 사업참여 의사가 있는 중소기업단체는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받은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역시, 시·군 기초지자체에 제출

**신청 서류**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사업계획서

**처리 절차**

	예산편성단계	보조금교부단계	
2월 중	사업신청 (유통 단체 → 시, 시·군)	보조사업계획 수립 (중기청)	1월
	↓	↓	
3월 중	시·군·구 예산안 제출 (시·군 → 도)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시·군 → 시·도 → 중기청)	1~2월
	↓	↓	
4월 중	합동현지 실태조사 (지방중기청, 시·도)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중기청 → 시·도 → 시·군·구)	2~3월
	↓	↓	
5.31일 까지	시·도 예산안 제출 (시·도 → 중기청)	보조금 교부 (중기청 → 시·도 → 시·군·구)	2~3월 부터
	↓	↓	
6월	사업 타당성 검토 (중기청)	보조사업 수행 (광역시, 시·군)	2~3월 부터
	↓	↓	
6.30일 까지	예산안 검토의견 제출 (중기청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실적보고 (시·군 → 시·도 → 중기청)	매분기
	↓	↓	
12월	예산 확정 (국회)	보조사업 완료보고 (시·군 → 시·도 → 중기청)	사업 완료시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0
- 각 지자체 유통담당 부서



## 궁금해요! 중기맨

### ● 개별 물류센터의 규모는 어떻게 되며, 최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물류센터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지역의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최대 60%까지이며,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건립중인 물류센터의 평균 연면적은 약 3,000㎡이고 건립비는 약 50억원 규모입니다.

### ● 신청에 대한 선정방법과 지원가능성은 높은가요?

☞ 신청에 대한 심의는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 중기청 순서로 진행되지만예산편성 권한은 광역지자체에 있어 광역지자체 물류계획에 따라 지원여부가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각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 지자체의 유통담당부서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명	부서명	전 화
서울	창업소상공인과	02-2133-5557
부산	경제정책과	051-888-3045
대구	경제정책과	053-803-3227
인천	경제수도정책과	032-440-4212
광주	경제정책과	062-613-3751
대전	경제정책과	042-270-3532
울산	경제정책과	052-229-2731
경기	경제정책과	031-8008-4583
강원	경제정책과	033-249-3212
충북	생활경제과	043-220-3222
충남	일자리경제정책과	041-635-3318
전북	민생경제과	063-280-3785
전남	경제통상과	061-286-3753
경북	민생경제교통과	053-950-3231
경남	민생경제과	055-211-3143
제주	경제정책과	064-710-3073



## 18-3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가맹본부의 시스템 수준을 평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시스템 수준을 평가합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간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6개 범주, 150여개 평가 문항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시스템 고도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평가 대상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50개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평가는 대기업도 가능)

\* '12년 지원현황 : 110개 신청 브랜드 중 78개 브랜드 평가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 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 내용

- 프랜차이즈 특성 감안한 6개 범주(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 · 계약 · 시스템 · 관계 · 성과)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
- 평가 점수에 따라 I 등급(80점 이상), II 등급(70점 이상~80점 미만), III 등급(60점 이상~70점 미만), IV 등급(60점 미만)의 4단계로 평가

### 지원 내용

- 평가결과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

### ● 수준별 맞춤형 지원내용

등 급	지 원 내 용	비 고
I · II 등급	· 브랜드·디자인 R&D지원 ·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 해외진출 연계지원 · 우수프랜차이즈 홍보 · 가맹본부 임직원 및 가맹점주 교육 등	우수프랜차이즈로 지정
III · IV 등급	· 브랜드·디자인 R&D지원 ·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III등급 이상) · 시스템 구축 및 가맹점 경영지도(II등급 이하) · 가맹본부 임직원 및 가맹점주 교육 등	

\*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업체에 엠블럼 수여

### ● 신청·접수

상·하반기 시행(13. 3~5월, 7~10월)

-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eda.or.kr)를 통한 신청 및 접수  
(평가비용 : 220만원)

### ● 제출 서류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재무제표 1부  
\*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확인 대체 가능
- 현장진단 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처리 절차



###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소상공인진흥원 금융지원팀 : 042-363-7741~3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3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18-4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본부로 발전하도록 지원

유망한 아이템을 지닌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매뉴얼 및 시스템 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 가맹본부로 발전하도록 초기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규모** 20개 업체 (전체 4억원)

**지원 대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발전을 희망하는 예비프랜차이저와 신규프랜차이저(가맹점 10개 미만)

업종	직영점업력
외식업	직영점포가 2개 이상이며, 2호점 업력이 최소 1년 이상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직영점포가 1개 이상이며, 1호점 업력이 최소 1년 이상

### 지원 내용

-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매뉴얼 및 시스템 개발비) 및 사후 컨설팅 비용의 70% 지원(20백만원 한도)
- 디자인 개발(BI·CI, 캐릭터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비용의 70% 지원(20백만원 한도)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소상공인진흥원 금융지원팀 : 042-363-7741~3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2013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18-5 소상공인지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

소상공인의 사업경영 개선과 협업화, 나들가게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7,500억원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지금(5,000억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 ·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 용자제외 대상업종(별표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소상공인 일반자금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자영업컨설팅 수혜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화자금 :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장애인기업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등
  -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중 협업화 지원대상으로 선정
- 소공인특화자금(2,500억원)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
  - \*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용자공고 상 별표1)에 해당하거나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인 MR6등급 기업은 용자대상에서 제외

## 지원 범위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협업화, 나들가게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및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 조건

- 소상공인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중진채 조달금리에서 0.8%p차감(기준금리)
  - \* 단, 재해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한도 : 7천만원
  - \* 단, 나들가게, 장애인기업의 대출한도는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단,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연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 단,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 기업, 신한,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탁중앙회
-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중진채 조달금리에서 0.8%p차감(기준금리)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취급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 절차

### ● 소상공인자금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 소공인특화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소공인특화자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연락처는 부록 참조)

[별표]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증개업
46109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증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중	귀금속 도매업
46722 중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5	숙박업 (단, 생계형은 지원가능)
561 중	연면적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주차장 면적 포함)
5621	주점업(단, 기타 주점업(56219)은 생계형 지원가능)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증개업, 게임 아바타 증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증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증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부동산컨설팅업 (예: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익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501	일반 교과 학원 (예: 과외학원, 입시학원, 대입학원 등)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단, 생계형은 지원가능)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플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 생계형 기준은 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89,079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숙박업(55), 주점업(5621), 식당업(561중), 일반교과학원(85501), 무도장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을 용자대상에 포함(단, 주점업 중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용자 허용)



## 18-6 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든든한 후원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 소기업 :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등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그외 업종 10인 미만)
- 소상공인 :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외 업종은 5인 미만)

### 가입 방법

- 우편 송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 취급은행(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은행) 방문
- 가입금액 : 월 최저 5만원부터 최고 70만원(1만원 단위)
  - \*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 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 공제금 지급

- 지급 사유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
- 지급 금액 : 적절한 부금에 연 기준이자율(폐업 · 사망시 + 0.3%)을 적용한 금액

### 가입자 혜택

- 12개월 이상 납부시 누적 납입금액을 한도로 대출 지원
-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내 추가 공제)
-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및 양도 금지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 [www.8899.or.kr](http://www.8899.or.kr). 국번없이 1666-9988, 전화 02-2124-3240 ~ 6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83



### 궁금해요! 중기맨

- 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일반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 ☞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지급시기나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보완합니다. 또한 부금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하고 공제 가입후 2년내 가입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부금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원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9

## 대형할인점 부럽지 않은 전통시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 379
- 19-2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382
- 19-3 시장경영 혁신 지원 · 384
- 19-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 · 388



## 1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편리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만들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과 고객편의시설 등의 개선을 지원 합니다.

### 지원 규모

308개 시장(1,430억원)

- \* '12년 지원현황 : 330개 시장(1,606억원)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중 시·도자율편성 사업으로 매년 각 시·도의 예산편성 금액에 따라 달라짐.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구역 중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

### 지원 제외시장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각호
  - \* 농수산물공판장, 가족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의시장 등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 또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

### 우선지원 대상시장

-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및 문화관광형시장, 현대식 공설시장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 지원 내용

- 주차장, 진입도로, 아케이드 등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 설치
- 시설물 개보수(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교체·개량) 등 노후시설 개선
-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거리정비, 홍보·상징조형물 등) 설치
- 배달센터(택배시설), 고객쉼터, 자전거보관소 등 문화·편의시설 설치

### 신청·접수('14년 지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에 신청
- 신청기한 : '13. 1. 2 ~ 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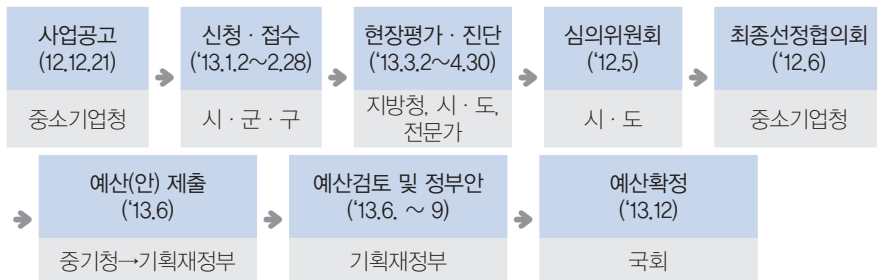
### 심사·평가내용

- 사업추진의 필요성·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우선순위, 집행의 적정성, 사업효과 등

###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연구용역 및 컨설팅 보고서, 견적서, 시장·상인회 등록증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재된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첨부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16, 4574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궁금해요! 중기맨

-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30%), 민간부담(1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5%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 가능합니다.
  - ☞ 다만, 주차장 및 화장실, 진입도로, 상·하수도, 안전시설, 고객편의시설, 공동물류창고 등은 민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19-2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 더욱 가보고 싶은 시장 만들기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합니다.

### 지원 규모

35개(신규 21, 계속 15) 시장(전체예산 157억원)

\* '12년 지원현황 : 23개(신규15, 계속8)시장, 시장당 평균 12억원 지원(국비50%, 지방비50%)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서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특성화시장으로 발전가능한 시장

\* 상인조직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법인

### 지원 내용

- 시장 고유의 특성을 발굴·개발지원
  - (문화관광형시장) 지역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가 가능한 시장과 평창 등 국제행사 인근 시장을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있는 시장으로 조성
  - (국제명소시장)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의 시장을 외국인이 쉽게 찾고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
  - (민속5일장) 역사·전통이 있는 5일장에 대해 축제행사, 시장투어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지원
- 지원규모 : 국비기준 2년간 10억원 한도 지원(예산 등을 감안하여 우수시장을 선정하여 3년차 지원)

\* 지원비율 : 1·2년차(국비50%, 지방비50%), 3년차(국비30%, 지방비·자부담70%)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신청주체 변경 : 민간 사업자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 접수** ~ '13.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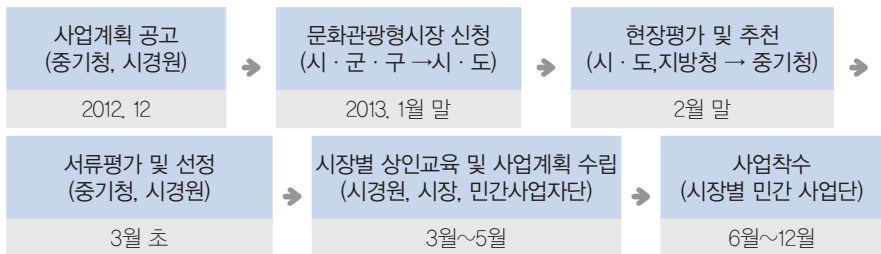
-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 현장평가는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중기청 합동으로 실시
- 광역자치단체 → 중소기업청
  - \* 현장평가결과를 첨부하여 문화관광형시장

**심사 · 평가내용**

-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의 다양한 특성
- 연계 가능한 문화 · 관광 등의 자원
- 상인조직의 사업추진 역량
-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 시장활성화 수준, 시장선진화 수준, 상인회 조직화 수준 등

**신청 서류** 문화관광형시장 신청서

- \* 신청양식은 시장경영진흥원 홈페이지([www.sijang.or.kr](http://www.sijang.or.kr))에 게시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335
- 시장경영진흥원([www.sijang.or.kr](http://www.sijang.or.kr)) : 02-2174-4352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19-3 시장경영 혁신 지원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영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 등을 통해 마케팅, 상인교육, 전문인력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전체 예산 674억원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우선선정

- 사업추진 능력은 있으나 그 동안 경영지원사업 또는 해당 신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신청 시장(우선)
- 특성화시장 등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시장(우선)
- 최근 3년내 정부포상실적(중기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우대)
  - \* '우선'은 타시장보다 우선하여 선정하고 '우대'는 평가시 가점적용

### 지원 내용

- 마케팅, 상인교육, 유통전문인력 지원 등 세부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의 30~100% 지원
- 세부사업 내역
  - 마케팅 :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및 특가판매, 시장투어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지역상품전 개최 및 시장정보지 발간 등 홍보
  - 상인대학원,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 정보화교육 등 상인교육
  - 행정·유통분야 전문인력을 상인회에 지원

### 신청·접수 '13. 1. 2 ~ 1. 31

- 시장경영진흥원(www.sijang.or.kr) : 02-2174-4352

### 심사·평가내용

- 시장활성화수준, 사업수행능력, 시장선진화(월산지표시율 등), 상인회 조직화 등

###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 \* 신청양식은 시장경영진흥원 홈페이지(www.sijang.or.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 처리 절차



\* 전문기관 : 시장경영진흥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47
- 시장경영진흥원 : 02-2192-43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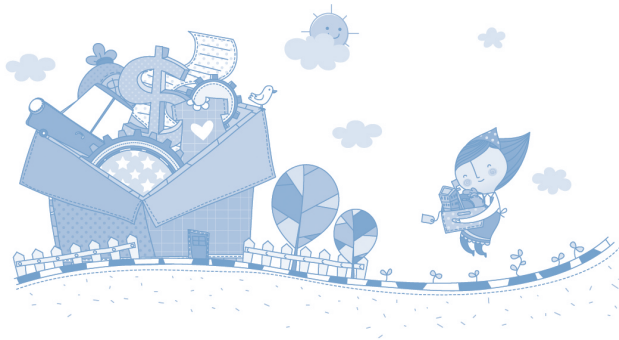
## 궁금해요! 중기맨

- 공동마케팅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세일·경품행사, 예술작품 전시회 개최, 유·청소년 대상 전통시장 체험학습, 공동 쿠폰사업, 공동포인트 제작 지원, 시장 홍보물 제작 및 송출, 홍보전단, 홈페이지 제작, BI·CI개발, 테마골목 브랜드, 패션쇼 등 시장 특성에 맞는 형태가 있어요



## 용어 설명

- 상인대학  
상인대학은 교육기관이 해당 시장을 찾아가 시장상인 의식혁신, 고객만족, 판매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붙임]

##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공동마케팅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 공동쿠폰 발행, 세일 · 경품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	시장당 1,080만원 ~ 6,030만원	국비 90% 상인 10%
특가판매	공동구매 · 판매행사 홍보판촉비 지원 등	시장당 20회 이내, 회당 50만원 이내 지원	국비 90% 상인 10%
시장투어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 운영, 시장투어 차량비 및 여행자보험료 지원 * 단, 상인회는 시장팜플렛 및 시장안내(2시간 내외)	시장당 버스 34대 이내	국비 100%
시장정보지 발간	시장 및 상점가, 점포 우수사례소개, 우수상품 발굴 · 홍보 및 시장정보지 발송	회당 6만부, 4,500곳 내외	국비 100%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역 우수상품 및 특산품 판매, 전시회 개최 비용	5,000만원 이내	국비 70% 상인 · 지자체 30% (10개 이상, 상인 50인 이상 참가시)
상인조직 역량강화	시장매니저를 상인회에 채용하여 상인조직을 육성하려는 시장에 보조	49~155만원 (월/인)	국비 30~70% 상인 30~70%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
상인 교육 연수	고객관리, 마케팅, 상품개선, 의식혁신, 전문기술 등 교육지원 (상인대학, 맞춤형교육(단기 · 특강), 전문교육, 해외연수, 정보화교육 등)	시장당 20~25일 (40~50시간)	국비 100%
시장자문 점포지도	○ 자문 :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상권개발, 시장정비사업 자문 ○ 지도 : 상품디스플레이, 점포인테리어 등 지도	전액보조	자문 : 연 8일 이내 지도 : 연 2회 이내



## 19-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상점가) 어느 곳에서나 OK!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매출 촉진을 위해 발행한 상품권으로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상점가 포함)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행 규모** 5,000억원 (전체 예산 246억원)

### 온누리상품권 종류

- 종이 온누리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 전자 온누리상품권 : 5만원권, 10만원권

###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사용처

- 구매처 : 우체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 개인은 현금, 법인은 현금 및 법인카드로 구매 가능
-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의 가맹점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http://www.onnurigift.co.kr>)에서 확인 가능
  -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 전자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 가맹점 및 온라인 쇼핑몰(우체국 쇼핑몰의 전통시장관, 제주전통시장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

### 온누리상품권의 특징

- 상품권 판매 · 회수 수수료 전액을 국비 지원(상인 부담 없음)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위 · 변조가 어렵고, 보안성 · 안전성 확보

### 온누리상품권 가맹방법

-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http://www.onnurigift.co.kr>)를 통해 가맹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한 후 상인회 및 개별 점포가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신청
-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제한업종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
  - 제한업종 : 주점업,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60, 4561
- 시장경영진흥원 : 상품권 콜센터(1544-4090)
  - 시장경영진흥원 홈페이지([www.sijang.or.kr](http://www.sijang.or.kr)) 및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www.onnurigift.or.kr](http://www.onnurigift.or.kr))를 참고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사진

일만원권(앞면)



일만원권(뒷면)



오천원권(앞면)



오천원권(뒷면)



십만원권(앞면)



십만원권(뒷면)



오만원권(앞면)



오만원권(뒷면)



---

## 9부.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지원



S M A L L   A N D   M E D I U M   B U S I N E S S   A D M I N I S T R A T I O N

<b>20</b>	<b>여성기업 창업, 경영지원</b>	<b>393</b>
	여성전문분야 창업교육 · 실전창업스쿨	394
	여성CEO MBA 교육 · 여성경제인 경영역량 업그레이드	396
	전국여성CEO 경영연수 · 여성기업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398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 여성기업 토탈 도우미	399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402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404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 여성 신진디자이너 창업 및 취업 기반제공	406
	여성기업 해외진출지원 ·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409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임대보증금 최대 3천만원 지원	411
<b>21</b>	<b>장애인기업 창업지원, 경쟁력 강화</b>	<b>413</b>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 점포임대 및 창업컨설팅	414
	장애인 원스탑 창업교육 · 우수한 장애인기업 만들기	417
	장애인특화 창업보육실 운영 · 창업초기 장애인기업 창업보육	419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 전시회 참가비, 산업재산권 등록비 보조 등	422



##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여성·장애인가기업Q&A

Q. 액세서리나 패션 주얼리 등 공예품 쪽으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A. 공예나 디자인 등 여성들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의 실전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여성 전문분야 창업교육이 있습니다. 실습 위주의 교육이고, 수료 후에는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지원정보 제공 등 혜택도 있으니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여성전문분야 창업교육 사업설명 참조)

Q. 여성기업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A.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해당지회에서 발급해드립니다. 여성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경영해 참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한후 10일내에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회에 제출하면 해당지회에서 5일 이내 현장실사를 통해 여성기업 확인여부를 결정하여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사업설명 참조)

Q. 취미로 쿨트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판매하라는 요청이 많아 하나둘 팔다보니 매장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저렴하게 매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A.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이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쇼핑몰(10평)”내 매장을 사용하고 있고, 매장관리비,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므로 저렴하게 입점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사업설명 참조)

Q. 후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나이도 젊는데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창업을 해보려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안마나 역술, 의류리폼 사업 등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구요. 관련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면 원스톱 장애인 창업교육을 신청하셔서 창업기초교육과 특화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원스톱 장애인 창업교육 사업설명 참조)

Q. 청각장애인인데 작은 국수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해볼까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A. 우수 장애인가업을 발굴해 국내외 전시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전시회의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산업재산권 출원과 홍보 브로셔, 제품 카탈로그 제작 등 홍보도 지원해 드려니 이용해보세요.(장애인가업 경쟁력 강화 사업설명 참조)

# 20

## 여성기업 창업, 경영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20-1 여성전문분야 창업교육 · 394
- 20-2 여성CEO MBA 교육 · 396
- 20-3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398
- 20-4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 399
- 20-5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402
- 20-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 404
- 20-7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 406
- 20-8 여성기업 해외진출지원 · 409
- 20-9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411



## 20-1 여성전문분야 창업교육

실전창업스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여성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식·감성 기반서비스, 유망분야 창업역량 및 기술교육 등을 통해 여성 창업 촉진 및 1인 창조 기업 육성으로 여성경제활동에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41회 교육개최, 1,025명 교육

\* '12년 지원현황 : 전국 13개 지역 52회 교육 개최, 수료생 1,325명

**지원 대상** 예비여성창업자

\* 실습 인원의 한정 등으로 수강인원을 초과할 경우 창업의지 및 계획에 따라 우선선발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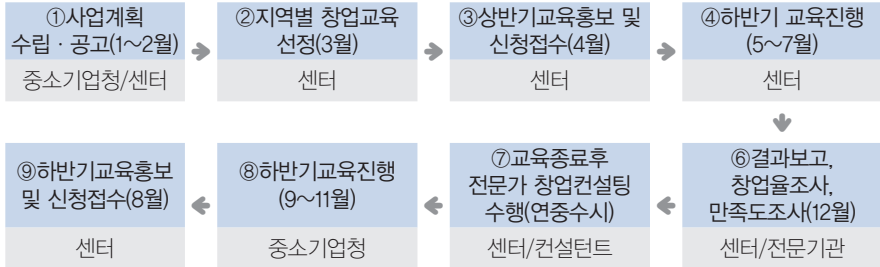
- 창업교육 경비의 약 80% 지원, 실습비 수강생 자부담(과정별 차등)
- 수료후 총 4회 분야별 전문가 무료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

- 홈페이지(www.w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전국 각 지역센터 전화문의 및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제출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4398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11, [www.wesc.or.kr](http://www.wesc.or.kr)
- 실전창업스쿨 홈페이지([www.wbiz.co.kr](http://www.wbiz.co.kr))
- 지역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중앙	(02) 369-0911	135-514)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33-24 7층
서울	(02) 702-4244	133-020)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866-2 삼협빌딩 5층
부산	(051) 465-1001	601-837)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8-8 극동빌딩
대구경북	(053) 742-5192	706-803)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1341-5 5층
광주전남	(062) 523-6028	500-060)광주시 북구 신안동 133-1번지 2층
대전충남	(042) 526-2862	302-711)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33-1 미건테크노월드7차c동 219호
인천	(032) 260-3600	405-817)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36번지 64BL-1LT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울산	(052) 998-8585	683-805)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강원	(033) 241-3475	200-959)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726-3
경기	(031) 211-0292	442-833)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3 DSD빌딩 3층
충북	(043) 236-6561	361-818)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890 4층
경남	(055) 212-1241	641-200)경남 창원시 대원동 123번지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전북	(063) 272-9973	560-821)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70-4 2층
제주	(064) 726-4467	690-827)제주시 이도2동 1185-9 아천빌딩 6층



## 20-2 여성 CEO MBA 교육

여성경제인 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경영 교육 지원

여성 경영가로서 자질 향상 및 혁신마인드 형성의 기회가 부족한 여성기업인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여성경제인이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 규모** 11개 지역, 여성 CEO 330명

\* '12년 지원현황 : 11개 지역, 여성 CEO 347명

**지원 대상** 여성CEO 및 여성기업 임직원이면 누구나 가능

### 지원 내용

- 기업 운영시 여성 CEO에게 필요한 경영 교육을 총30시간, 3개월 이내로 지원하고, 교육 종료 후 전 기수간 통합 워크숍을 개최
- 교육 내용
  - 실제 사례 공유
    - \* 선배 CEO, 혹은 중소기업 운영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향후 멘토링까지 연계 가능 기회 제공
  - 기업운영 법무 및 세무교육
    - \* 기업운영 법무 및 세무 교육을 추가하여 실제 기업운영시 접목 가능토록 연계지원
  - 정부시책안내
    - \* 정부 및 지자체의 여성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시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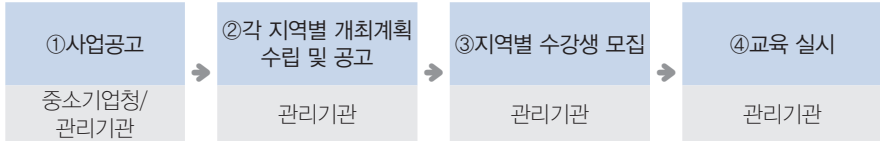
### 신청·접수

- 12. 2. ~ 10. (각 개최지역별 상이하며,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내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여성 CEO MBA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4398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



## 궁금해요! 중기맨

- 여성 CEO MBA 교육을 수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지역별로 개최 일자가 상이한 관계로, 해당 지역의 지회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 혹은 '13년도 개설되는 여성기업통합정보망([www.wbiz.or.kr](http://www.wbiz.or.kr)) 공지 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 <여성기업통합정보망([www.wbiz.or.kr](http://www.wbiz.or.kr)) 온라인 신청(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 수강료 입금>하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완료 후 해당 지회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 CEO MBA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 ☞ 기본적으로 여성 CEO 이시면 누구나 수강 가능하시고, 여성기업의 임직원일 경우에도 물론 가능합니다.



## 20-3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전국 여성경제인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전국 여성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 업종 및 지역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전국 여성CEO 600여명

\* '12년 지원현황 : 전국 여성CEO 500명 지원

**지원 대상** 전국 여성CEO 누구나 참여가능

**지원 내용** 강사료, 교재비, 홍보비, 장소임차료 등 공통경비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 지역 및 업종 간 활발한 교류를 위한 간담회 마련

**신청·접수** 행사 공고일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

- 여성기업 포털사이트(www.w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를 통한 신청 가능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

\* 신청양식은 포털사이트(www.wbiz.or.kr)에 게재된 신청서에 작성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4398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2

## 20-4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여성 창업 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보육공간과 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4개 지역센터 186개(예정) 창업보육실 운영

\* '12년 14개 지역센터 168개 창업보육실 운영

**지원 대상** 창업 2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지원 내용

- 창업보육실(입주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2년 연장가능)
  - \* 입주공간면적 : 33.1㎡ 내외
  - 입주시설 : 공동 사무기기, 초고속인터넷, 보안장비 제공
- 여성기업 경영지원 제공
  - 경영, 회계, 법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드획득 지원)
  - 국내외 판로지원(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 중소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지원사업 등 정보제공
  - 여성기업(인), 유관기관, 지역단체 등 네트워크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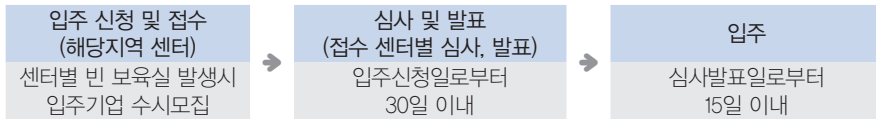
### 신청 · 접수

- 신청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wes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빈 보육실 발생 시 입주기업 수시 모집

###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해당자에 한함), 신용정보조회동의서, 대표자이력서, 회사소개서 각 1부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4398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www.wesc.or.kr) : 02-369-0900, 0931
- \* 각 지역센터 연락처

센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중앙	(02) 369-0929	135-514)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33-24 7층
서울	(02) 702-4244	133-020)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866-2 삼협빌딩 5층
부산	(051) 465-1001	601-837)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8-8 극동빌딩
대구경북	(053) 742-5192	706-803)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1341-5 5층
광주전남	(062) 523-6028	500-040)광주시 북구 중흥동 704-9번지 삼산빌딩 4층
대전충남	(042) 526-2862	302-711)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33-1 미건테크노월드7차c동 219호
인천	(032) 260-3600	405-817)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36번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울산	(052) 998-8585	683-805)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강원	(033) 241-3475	200-959)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726-3
경기	(031) 211-0292	442-833)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3 DSD빌딩 3층
충북	(043) 236-6561	361-818)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890 4층
경남	(055) 212-1241	641-200)경남 창원시 대원동 123번지 창원컨벤션센터 502호
전북	(063) 272-9973	560-821)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70-4 2층
제주	(064) 726-4467	690-827)제주시 이도2동 1185-9 아천빌딩 6층



### 궁금해요! 중기맨

- 입주시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는 어떻게 산정, 관리되나요?
  - ☞ 동 사업은 전국 14개 지역센터에 여성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300백만원, 월세는 무료이며, 관리비는 해당입주사 사무실의 전용면적에 센터별 책정된 ㎡당 건물관리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12. 12 기준)
-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 ☞ 동 사업은 예비여성창업자도 모집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주신청 및 입주당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이 되어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5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 확인증 발급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확인증을 발급하여 공공기관의 경쟁 입찰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연간 3,000건 내외

\* '12년 지원현황 : 신청 2,993건, 발급 2,583건

### 신청 자격

- 여성CEO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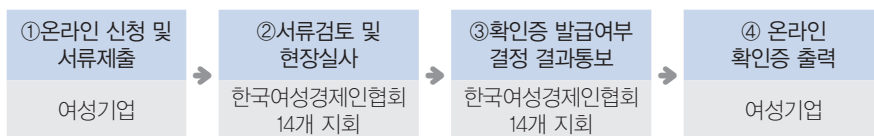
**신청·접수** 연중 수시

- 온라인신청 : [www.smpp.go.kr](http://www.smpp.go.kr) 회원 가입→마이 페이지→중소기업 확인→여성기업→신청→저장→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출력

### 제출 서류

- (공통)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4398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12



## 용어 설명

### •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 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20-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여성기업전용 입찰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참여를 활성화 시키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 하여 공공구매 입찰 참여를 독려합니다.

**지원 규모** 400개사

\* '12년 지원현황 : 총 264개사(348건) 지원

**지원 대상**

- 여성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으로 공공구매 입찰에 관심 있는 기업

**지원 내용**

-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입찰 참여기회 증대
  - 공공구매 입찰정보 사이트 운영을 통해 여성기업의 공공구매관련 원스탑 정보제공(<http://bid.womanbiz.or.kr/>)
- 홍보 브로셔 배포를 통한 제도 인식 확산 및 수혜 기업 증대
  - 공공구매 목표달성 추진 독려
  - 공공기관의 제도(고시) 인식률 제고

**신청·접수** '13.3.1부터 4주간 모집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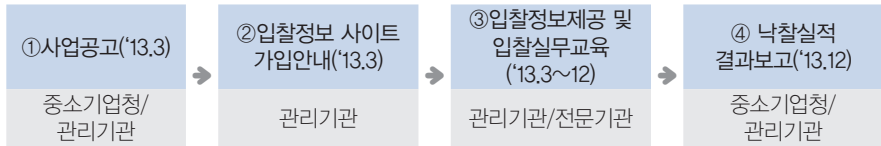
- 사업참가신청서 접수(팩스, 이메일) → 접수확인 → 입찰정보사이트 (<http://bid.womanbiz.or.kr/>) 가입

## 신청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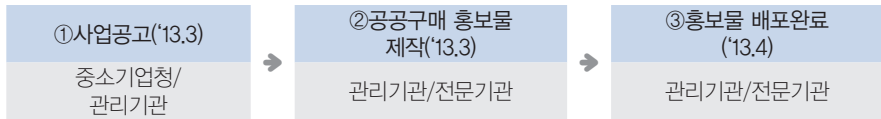
- 참가신청서, 여성기업확인증, 사업자등록증

## 처리 절차

- 여성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사이트 운영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4398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6

## 궁금해요! 중기맨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가 무엇인가요?
  -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의 일정비율이상 구매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비율이란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는 3%를 의미합니다.
- 여성기업 제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http://www.smpp.go.kr))에서 여성기업 제품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 업체수 : 약 7천개), 사이트 로그인 후 첫 화면의 상단 「마이페이지-기업정보조회-여성기업-엑셀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업체명과 품목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7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여성신진디자이너 창업관 - 디자이너상품 테스트마켓 제공

시장 진출을 앞둔 우수한 여성 신진디자이너에게 상품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두타 매장 등에서 직접 소비자와 접촉함으로써 실전 마케팅 체험기회를 얻을 수 있고 패션전문 교육 및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연간 100명(팀 또는 개인 디자이너)

\* '12년 지원현황 : 78개팀 91명 매장 입점 지원

### 지원 조건

- 지원 품목군 : 여성패션 의류(60%), 주얼리·악세서리·잡화(40%)
- 지원기간 : 사업기간내 6개월(봄·여름, 또는 가을·겨울) 지원
  - 동일 사업 참가자의 최대 사업 활용 기간 : 24개월
- 테스트 판매장 참가자 직접 체험 학습
  - 초기참가자(10시간), 사업활용 6개월 이상 참가자(5시간)

###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우수한 실력을 겸비하고 창업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패션관련 여성 신진 디자이너 (창업 5년 이하의 여성패션디자이너 포함)
  - 대학 패션·예술관련 학과 및 사설 패션디자인 교육기관에서 디자인을 전공(학습)한 여성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사업자 등록일자 기준 만 5년 이상의 기성 브랜드
- 신청일 현재 기성 패션브랜드 기업에서 근무 중인 디자이너

### 유의사항

- 직접 창작한 디자인이라도 타 브랜드의 주문/납품 상품일 경우 사입 상품으로 간주하여 선정 배제
- 도매시장 등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으며, 유통 상품의 브랜드가 신청 브랜드와 동일 할 경우 선정 제한
- 신청일 현재 기성 패션브랜드 기업에서 근무 중이나 창업 준비로 퇴직을 앞두고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참가디자이너의 상품 전시 및 공동 판매 공간 제공
  - 동대문 두산타워 (49.5㎡)
- 매장 인테리어(상품 진열 집기 포함) 및 매장 판매사원 지원
- 디자이너 컨셉 및 상품을 외부 바이어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B2B 쇼룸 개설 지원
  - 디자이너별 등급을 우수자와 신진그룹 등으로 구분하고, 바이어 회원에게 디자이너의 룩 북 전달과 샘플 및 오더 요청 등을 시스템상 처리 지원
- 패션수주전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패션쇼 개최 지원
- 우수 디자이너 대상 각종 외부판로(기업체 협업, 판로납품) 연계 지원
- 참가 디자이너 대상 패션 · 특화 정기교육(수요자요청 위주 편성) 연수 지원 등
  - 패션마케팅(10시간), 패션창업(8시간) 집합교육 연수 (2박 3일 과정)
- 신진디자이너 브랜드 상표 출원 · 등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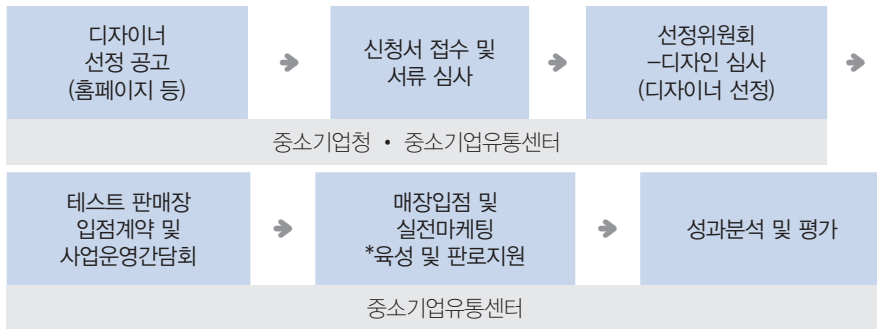
### 신청 · 접수

- 중소기업유통센터(www.sbdc.c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서류접수 : 수시접수(단,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 \* 지원 대상은 반기별 1회 선정
- 접 수 처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기업유통센터 15층 마케팅 지원팀 여성신진디자이너창업관 담당자

### 제출 서류

- 사업참가 신청서 1부
- 사업추진 계획서 1부
- 작품디자인화 서식(소재 부착 된 일러스트 또는 작품사진) 각 5부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4398
- 중소기업유통센터(www.sbdc.co.kr) : 02-6678-9314



#### 궁금해요! 중기맨

- **사업자 개설이 2008년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 ☞ 사업자개설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존 유통 상품의 입점은 안되고, 신규 상품 및 추가 브랜드의 상품테스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1인 회사로 매우 바쁜 상황인데, 반드시 판매장 체험학습을 해야 하나요?**
  - ☞ 네, 그렇습니다. 제작 상품의 전시·판매 중 직접 고객과의 대면을 통한 상품의 시장성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참가 기간별 체험학습 시간이 완화되므로, 디자인 역량 강화 및 가격정책 재고를 위하여 반드시 본인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 **사업신청 후 두 번이나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 ☞ 신청 횟수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지속 탈락일 경우, 디자인 및 타겟 마켓이 맞지 않아서 일수도 있사오니 재신청전 사업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셔서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 20-8 여성기업 해외진출지원

수출여성기업육성-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수출유망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참가비용 및 수출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연간 여성기업 20개사 지원

\* '12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28개사 중 19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800만원

### 지원 대상

수출 유망 여성기업

### 지원 내용

- 해외박람회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의 70%, 업체별 개별 통역 지원
  - \* 참가비 30% 및 항공, 체재비 및 운송비 등 자부담
- 수출 컨설팅 지원
  - \* 수출통상 전문가(품목별, 지역별 해외 마케팅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 〈주요 해외 박람회 일정〉

연번	박람회명	개최지역	파견기간	파견규모
1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Cosmoprof Worldwide Bologna)	이태리	'13. 3. 8-3.11(4일간)	4개사
2	홍콩 선물용품박람회 (Hong Kong Gifts & Premium Fair)	홍콩	'13. 4.27-4.30(4일간)	8개사
3	홍콩 귀금속박람회 (Hong Kong Jewellery&Gem Fair)	홍콩	'13. 9.13-9.17(5일간)	8개사
4	베트남 호치민 종합박람회 (Vietnam International Trade Expo)	베트남	'13. 11월 중	4개사

\* 박람회 일정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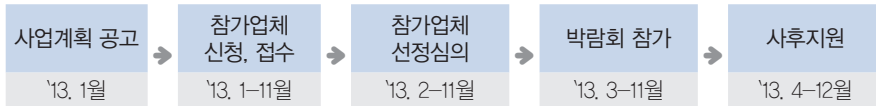
**신청·접수** 박람회별 신청기간 상이(박람회 참가일로부터 약 3개월 전 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참가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요약서 및 수출활동계획서 각1부
- 제품 카탈로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무제표 (B/S, I/S) 사본 1부(최근 2개년)
- 수출실적증명원(최근 2개년)
- 각종 인증서 및 정부포상 증빙 사본 1부

**처리 절차**



**신청·접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4398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02-369-014



**궁금해요! 중기맨**

- 여성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해외박람회는 매년 바뀌나요?  
☞ 매년 여성 수출유망산업 및 유망시장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수년동안 지원되는 해외박람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사업계획을 통해 그 해의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9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여성가장 창업시 임대보증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저소득 여성가장의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저리로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규모 50명내외

\* '12년 지원현황 : 31명 선정지원, 지원금액 810백만원, 1인당 평균 2,613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와의 사별 및 이혼, 장기실직 1년 이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 배우자의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자
  - 미혼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지원이 안되는 경우

- 신용관리대상자 (신용등급 8,9,10등급)
- 사업자등록 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동 업종 창업의 경우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의 경우
- 창업 업종이 성인전용의 유흥, 퇴폐, 사치, 향락 및 오락업종, 간이주점의 경우

### 우대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5점) 부여

### 지원 내용

- 임대보증금 최대 3,000만원까지 2년 지원 (기간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  
\*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3%로, 분기별 납부

### 신청·접수

 '13. 1. 1 ~ 12. 31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 모집

- 신청 : [www.wbiz.or.kr](http://www.wbiz.or.kr) → 공고사항 내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 우편 혹은 방문 접수(각 지회) → 해당 지회 확인 문의

###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및 각종 증빙 서류 방문 및 우편발송

- \* 신청양식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www.womanbiz.or.kr](http://www.womanbiz.or.kr))나 여성기업통합정보망([www.wbiz.or.kr](http://www.wbiz.or.kr)) 게재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 042-481-4398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



### 궁금해요! 중기맨

- 부양가족이 1인 이상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부양가족은 25세 미만의 자녀(형제자매)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를 포함합니다.  
단, 25세 이상의 자녀는 학생, 군인, 3등급 이상 장애자의 경우 인정이 되고, 65세 미만의 부모는 장애자나 중환자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21

## 장애인기업 맞춤형 창업지원 · 경쟁력 강화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21-1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 414
- 21-2 장애인 원스탑 창업교육 · 417
- 21-3 장애인특화 창업보육실 운영 · 419
- 21-4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 422



## 21-1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전대형식 점포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또는 저소득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아이템에 따라 사업화에 적합한 최적지 사업장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 명의로 임차 하여, 3(+2)년간 창업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규모** 신규 창업자 20명 선발

\* '12년 지원현황 : 신청자 70명 중 21명 선발 및 점포지원 계약 체결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또는 저소득(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200% 이하) 예비창업 장애인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 비점포형 사업
- 공단 및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자
- 기사업자

### 지원 내용

- 선정된 예비창업자에게 1억 3천만원 한도 내 점포지원
  - 임대점포는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해서 지원 가능
  -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손실충당금은 창업자 본인 부담
  - 선정대상자 별 집기 및 시설, 간판지원비 일부 지원(별도금액)
- 상권 · 입지분석부터 개점 후 6개월까지 사후관리 지원(종합컨설팅 제공)

- 지원기간 : 최초 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5년까지 지원
  - 최초계약 이외에 추가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하여 창업자 본인이 부담

### 신청 · 접수

-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모집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중앙센터 우편접수

### 제출 서류

-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인큐베이터 구축사업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개인신용정보제공 · 활용 동의서 2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 3년간 주소지 이동내역 기재분),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만)
- 소득증빙서류(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전체)
- 통장잔고증명서 1부
- 신청아이템(업종) 관련 자격증 및 기술교육수료증(해당자만)
- 창업과정 수료증 1부(해당자만)
- 관련 직종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폐업사실증명 1부(해당자만)

## 처리 절차

단 계	내 용
인큐베이터 신청 ·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 접수</li> <li>■ 상반기(10명), 하반기(10명)를 구분하여 2회에 걸쳐 모집</li> </ul>
기초서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평가의 30% 반영</li> </ul>
심층면접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평가의 70% 반영</li> </ul>
창업인턴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업종에 대한 재직 · 창업경력 1년 미만의 자는 창업인턴십 이수 후 최종대상자로 선정</li> </ul>
최종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선정결과 합격자는 개별 통지</li> <li>■ 선정인원의 10% 내외에서 하반기 각각 추가 예비 후순위자 선정</li> </ul>
상권 · 입지개발 컨설팅 수행 (전담컨설턴트, 선정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권역별 전담컨설턴트 지정</li> <li>■ 전담컨설턴트와 인큐베이터 선정자 간 상권입지개발 컨설팅 수행</li> </ul>
창업점포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점포 선정</li> <li>■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 추가 예비후보자에게 자격 부여</li> </ul>
사후관리(전담컨설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후 6개월 간 지원</li> </ul>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326-1339, 02-2631-6229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debc.or.kr](http://www.debc.or.kr)



### 궁금해요! 중기맨

- 창업 초년생인데 단순한 계획만 있지 세부 운영방안은 없습니다. 이럴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구축사업은 전담 컨설턴트를 상권 · 입지 · 권리 및 창업 전 운영방안부터 창업 후 사후관리 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드립니다. 자신있게 도전하세요.



## 21-2 장애인 원스탑 창업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지원

창업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 및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장애 경제인들에게 창업역량진단, 창업기초교육, 업종특화교육, 창업인턴, 개별컨설팅 등 창업 실시 전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꼼꼼히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규모

장애인예비창업자 600명 예정

\* '12년 지원현황 : 창업기초교육 수료자 655명 중 124명 창업

###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전업희망 장애경제인

### 지원 내용

- 지역별, 업종별 특화된 맞춤형 교육 지원
  - 심층상담 및 개별컨설팅을 통한 창업역량 진단 및 정보 제공
  - 창업인턴 과정을 통한 창업체험 기회 제공
  - 교육 수료(12H 이상) 후 장애인기업 활동자금 신청자격 부여
  - 센터 창업지원사업(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구축사업) 신청시 우대
- 장애인 창업 적합 아이템 발굴 및 보급
  -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실제 창업 가능한 아이템 공모 및 개발하여 보급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온라인(e-learning) 시스템 구축으로 창업기초과정 수강 가능

### 신청 ·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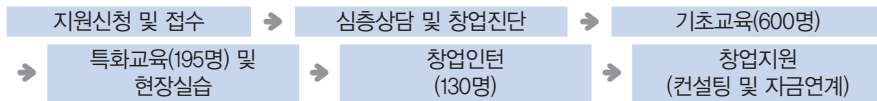
- 장애인 원스탑 창업지원사업
  - 상반기 3월 중 교육 공고 후 전국적으로 600명 선착순 접수 마감
  - 창업교육지원시스템(장애인 창업넷)을 통한 신청
- 장애인 창업경진대회
  - 6월 중 사업 공고 후 2달간 우편 접수

##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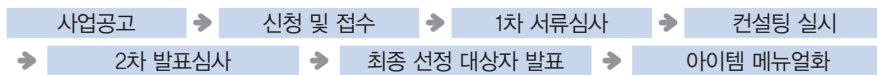
- 장애인 원스탑 창업지원사업
  - 복지카드 사본, 교육신청서, 서약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애인 창업경진대회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상동의서, 복지카드 사본, 사업자등록증 (창업성공사례)

## 처리 절차

- 장애인 원스탑 창업지원사업



- 장애인 창업경진대회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1팀 : 02-326-1334, 02-2631-6218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3년 지원시책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 비즈인포(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증기맨

- 예전에 창업기초교육을 받았는데 수료증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 ☞ 2010년까지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은 유효기간이 수료일 기준으로 1년이었지만, 2011년도 실시한 창업기초교육 및 업종특화교육은 유효기간이 없어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자금을 사업자 등록 후 7년 미만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에서 창업기초교육을 받았는데 타 기관 수료증도 장애인기업 활동자금 신청시 인정이 되나요?
  - ☞ 2010년까지는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수료증은 유효기간 내에서는 인정이 되었지만 2011년도부터 장애인기업 활동지원 자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현재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교육만 인정이 됩니다.



## 21-3 장애인 특화 창업보육실 운영

창업초기 장애인기업(예비창업자)에 장애인 전용 창업보육실 지원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 장애인기업(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과 종합적인 경영지원을 제공하여 성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지원 규모 중양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9개센터 76개실 운영

- \* '12년 지원현황 : 중양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76개실 운영
- \* 서울(중양)센터, 대구지역센터, 부산지역센터, 광주지역센터, 대전지역센터, 경기(부천)지역센터, 인천지역센터, 경남(진주)지역센터, 울산지역센터

### 지원 대상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사업화 가능한 업종 영위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사업개시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및 국세 · 지방세 체납자
- 공해, 소음 등이 유발되는 제조업(소규모 사무실에서도 제조가 적합한 경우 가능)

### 우선선정

- 중증장애인, 대학 및 연구소와 산학협력, 특허 및 실용신안 2건이상,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의 경우 가점 5점부여
- 창업자의 사업적 자질과 역량이 우수하며,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평가 우수자

### 지원 내용

- 창업보육실 입주기간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창업교육, 정보제공, 판로지원, 경영애로 상담 등 경영전반의 일괄적인 지원(센터 수행사업 연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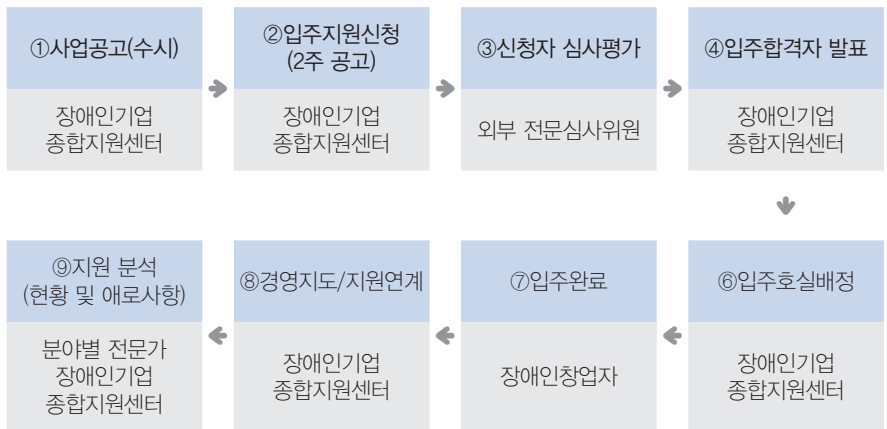
### 신청 · 접수 연중 수시(입주기업 공실 발생시)

- 신청방법 : [www.debc.or.kr](http://www.debc.or.kr)→알림마당→공지/공고→입주기업 모집 공고 확인 후 입주지원신청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신청 서류

- 입주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http://www.debc.or.kr)) 알림마당에 게재된 입주 모집 공고 참조

### 처리 절차



###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영총괄팀 : 02-2631-6202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3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종기맨

- 창업보육실 입주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 창업보육실 입주비용은 3.3m<sup>2</sup> 기준 보증금 10만원 관리비 1만원이며, 그 외 경영애로 상담을 비롯한 지원사업 참여와 공용사무기기 및 책상 등은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1-4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기술력,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출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여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기업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 발전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지식재산권 80건, 국내외 전시회 참가 57개사, 홍보물 제작 95개사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장애인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12년 장애인기업바로알리기(홍보물제작지원사업) 수혜업체

### 지원 내용

-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지 원 한도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지원(특허/실용신안) 업체당 2건	80만원 / 50만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국내/해외)	200만원 / 500만원
	· 홍보 브로셔 / BI·CI 개발 및 제작 / 제품 카달로그 제작	200만원
	· 홈페이지 개발	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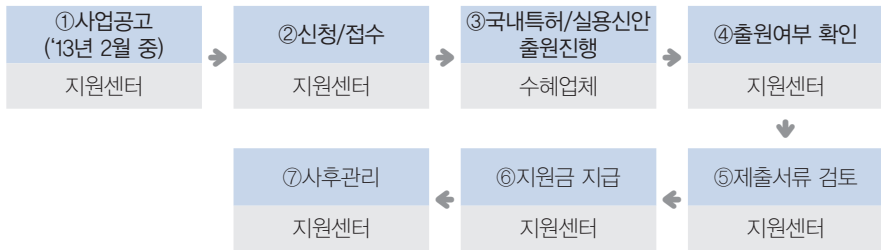
### 신청 · 접수 '13년 2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통해 공고문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 \* 신청양식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공지사항 참조

### 처리 절차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1팀 : 02-326-1358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



#### 궁금해요! 중기맨

- 지식재산권 지원은 모든 분야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하나요?  
☞ 특허는 80만원 한도, 실용신안은 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답니다.
- 국내외전시회 참가비용 전액지원이 되는 건가요?  
☞ 국내외전시회의 참가비 일부지원입니다. 최대 국내, 해외 각 200만원, 500만원 한도, 부스임차료, 장치비에 한해 지원됩니다.

---

## 10부. 도움이 되는 제도



S M A L L   A N D   M E D I U M   B U S I N E S S   A D M I N I S T R A T I O N

<b>22</b>	<b>알아두면 좋은 제도</b>	<b>426</b>
	벤처기업 확인 · 조세감면 등 각종 우대혜택 받으세요	427
	이노비즈 제도 · 기술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430
	메인비즈 제도 · 경영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432
	우수그린비즈 선정제도 · 녹색경영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 우대	434
	중 · 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확인 ·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436
	사업조정 제도 · 중소기업 경영 피해 방지 위한 대 · 중소기업간 사업조정	438
	중소기업음부즈만 · 불합리한 규제 처리 파수꾼	439

# 22

## 알아두면 좋은 제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22-1 벤처기업 확인 · 431
- 22-2 이노비즈 제도 · 434
- 22-3 메인비즈 제도 · 436
- 22-4 우수그린비즈 선정제도 · 438
- 22-5 중·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확인 · 440
- 22-6 사업조정 제도 · 442
- 22-7 중소기업옴부즈만 · 443



## 22-1 벤처기업 확인

조세감면 등 각종 우대혜택 받으세요

벤처기업은 독자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조세감면 등 각종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지원 혜택

구 분	내 용
세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은 4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사업용 재산 등록·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li> <li>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보조·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소득 비과세</li> <li>벤처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 등록·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li> </ul>
창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시 휴·겸직 허용</li> <li>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li> </ul>
자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 한도 확대 등)</li> <li>연기금의 벤처기업 투자 지원</li> <li>창투사 투자 대상에 업력 제한없음(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li> <li>코스닥 상장 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 면제)</li> </ul>
기 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OSBIR 프로그램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li> <li>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대상</li> <li>항공우주산업 관련 사업 참여자격 우대</li> </ul>
입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험실공장 허용(교수, 대학(원)생, 연구원의 3000㎡ 이하 실험실 공장등록)</li> <li>BI·집적지역 등에 설치되는 도시형 공장 및 실험실 공장 설치 승인 절차 간소</li> </ul>
M &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의적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또는 신주발행 통한 부분적 주식교환의 경우)</li> <li>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li> </ul>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 50%까지)</li> <li>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가 300인까지 가능(일반기업 50인 이하)</li> <li>연구전담요원 2인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일반기업은 5인)</li> <li>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연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li> </ul>

**인증 요건**

• 아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증서 발급

구 분	내 용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단, 문화콘텐츠 제작자인 경우 7% 이상 투자</li> <li>* 벤처투자기관 : 창투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li> <li>• 최소 5,000만원 이상 투자</li> </ul>	벤처 캐피탈협회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대출(결정된 보증대출 가능금액 포함)금액 8,000만원 이상(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보증(대출)금액 4,000만원 이상, 총자산 비율요건 적용 제외)</li> <li>•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이상. 단,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비율 적용 제외</li> <li>• 기술성 평가 우수(기술성, 사업성, 경영주 기술능력)</li> <li>* 단, 창업전인 기업은 기술성 평가만 실시</li> </ul>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개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부설연구소 보유</li> <li>• 연구개발비 5,000만원 이상</li> <li>•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 단,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비율 적용 제외</li> <li>• 사업성 평가 우수(경영주 기술능력, 사업성)</li> </ul>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 · 접수**

벤처인([www.venturein.or.kr](http://www.venturein.or.kr)) 사이트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확인요건별 신청서류를 벤처인([www.venturein.or.kr](http://www.venturein.or.kr))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업로드

\* 기술평가보증 · 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확인 신청시에는 기술사업계획서도 함께 제출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425
  - \* 벤처인(www.venturein.or.kr) 시스템 관련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1544-1120)
- 기술보증기금 : 051-606-7653
- 중소기업진흥공단 : 02-769-6684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02-2156-2125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2012년 지원시책」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⑩ 행정지원



## 22-2 이노비즈 제도

기술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혜택

-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시 우대
    - 보증료 감면 : 0.2%p
    - 전액 보증 지원 : 기술보증기금과 이노비즈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전액 보증 가능
    - \* 협약 금융기관(14개 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국민, 신한,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외환, 전북은행
    - 기업당 보증한도 설정 우대 : 이노비즈 기업 50억원(일반기업 30억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 정책자금 우대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자격 부여, 융자한도 예외적용
    - 중소기업청 R&D 자금 신청시 우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 등
- ☞ 이노비즈(Inno-Biz) :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 신청 대상

- 업력 3년 이상의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 다만,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등과 일부 업종은 신청 제외

### 선정 기준

- 업종별 기술혁신 평가지표(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등)에 의한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자체평가기준에 의한 신청업체의 개별기술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개별기술 등급의 종류 :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 신청 · 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자가 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650점 이상이면 온라인으로 인증 신청

### 제출 서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접속해 기업 및 공장정보, 주생산품, 재무사항 등 입력
- 기술사업계획서(이노비즈넷에서 다운로드)

### 처리 절차

온라인신청(연중)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00/9651)
현장 · 경영평가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 1544-1120) ∴ 현장평가 등 모든 업무는 해당기업 소재지 지점에서 처리
이노비즈 선정(수시)	중소기업청(해당기업 소재지 지방중기청에서 확인서 발급 등 총괄 관리)
종합연계지원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 042-481-3990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31-628-9600/9651
- 전용정보사이트 : www.innobiz.net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 22-3 메인비즈 제도

경영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서비스업, 문화산업 등 비기술 분야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 정부의 지원 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혜택

-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시 우대
    - 보증료 감면 : 0.1%p까지 차감
    - 금융기관\* 금융지원 협약을 통한 우대 : 부분보증비율 85%  
\* 협약 금융기관(6개 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 금융 지원 : 신한은행 jump-up 금융지원시 이자율 0.6%p 차감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 정책자금 우대 : 융자한도 예외적용
    - 중소기업청 R&D 자금 신청시 우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 등
- ☞ 메인비즈(Main-Biz) :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2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 신청 대상

- 설립 후 3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등은 신청 제외

### 선정 기준

- 분야별 경영혁신 평가지표에 의한 현장평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결과 평가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인 기업

### 신청 · 접수

메인비즈(www.mainbiz.go.kr)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안내에 따라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600점 이상이면 온라인으로 인증 신청

### 신청 · 접수

메인비즈(www.mainbiz.go.kr)에 접속해 기업 및 공장 정보, 주생산품, 재무사항 등 입력

### 처리 절차

온라인신청(연중)	메인비즈넷(www.mainbiz.go.kr)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02-1666-5001)
현장평가(연중)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 1544-1120)
Main-Biz 선정(수시)	중소기업청(해당기업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확인서 발급 등 총괄 관리)
종합연계지원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 등

### 문의처

- 중소기업 기술정책과 : 042-481-3990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02-1666-5001
- 전용정보사이트 : www.mainbiz.go.kr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 개인사업자도 업력이 3년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설립 후 3년이 지났다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도 신청 조건인 업력 3년에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합니다.



## 22-4 우수그린비즈 선정제도

녹색경영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 우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녹색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녹색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수그린비즈로 선정하고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혜택

- 금융지원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우대
- R&D 및 사업화 연계 우대지원
  - 기술개발지원사업, 해외기술인력 도입지원,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등
- 판로 및 해외진출 지원
  - 공공기관 납품시 우대,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평가 우대, 수출기업화지원사업,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방송광고료 70% 면제 등



〈우수 그린비즈 마크〉

### 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

### 선정 기준

- 녹색경영 평가지표(5대분류 20개 평가항목)\*에 따라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평가하여 녹색등급(S, A~D등급)\*\*을 부여하고, A등급 이상에는 우수그린비즈로 선정·우대
  - \* 평가지표 5대분류 : 녹색경영 전략, 시스템, 에너지·자원, 온실가스·환경오염, 사회·윤리적 책임
  - \*\* S(1,000~850), A(849~700), B(699~500), C(499~350), D(349이하)

### 신청 · 접수

상시(자금 소진시까지)

### 제출 서류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그린넷 홈페이지([www.greenbiz.go.kr](http://www.greenbiz.go.kr)) 참조

- 녹색경영 평가 신청서 1부
- 녹색경영 평가 기업현황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약도 1부

### 처리 절차

온라인신청(연중)	중소기업( <a href="http://www.greenbiz.go.kr">www.greenbiz.go.kr</a> )
현장평가(연중)	한국표준협회(현장평가 등 모든 업무는 해당기업 소재지 지부에서 처리)
우수그린비즈 선정 및 확인서 발급(수시)	중소기업청(해당기업 소재지 지방중기청에서 확인서 발급)
종합연계지원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청 녹색성장팀 : 042-481-4438
- 한국표준협회 그린경영팀 : 02-2624-0158
- 전용 정보사이트 : [www.greenbiz.go.kr](http://www.greenbiz.go.kr)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 22-5 중·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확인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공공기관의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경쟁입찰에 참여하면 중소기업청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

### 지원 혜택

-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경쟁입찰 참여시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시 신인도 가점 부여
- 중소기업청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에 따른 신인도 가점부여
  - \* 가점 범위 : 소상공인 0.5점, 소기업 0.25점, 장애인기업 1.0점

### 유효 기간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은 창업 등을 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장애인기업 확인서 :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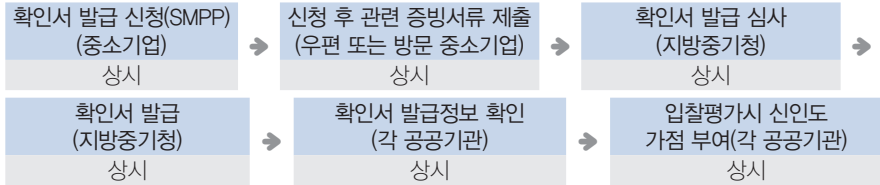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http://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기업정보등록 → 마이페이지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제출 서류

-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원본 1부-공통
- 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1부-공통
  -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업체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만 제출. 단, 개인사업자 및 다른 기업과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에 한함.
- 주주명부(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 등 특수관계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공통
- 대표자 장애인 등록증 또는 대표자 국가유공자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기업
- 장애종업원 현황 1부(각 장애인등록증 사본 첨부-소기업은 제외)-장애인기업
- 관계기업(지배·종속) 및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주주명부 1부.
- 지분관계도 1부(해당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참고(www.smpp.go.kr)
- 사회적기업인증서-해당기업
  -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등기발송 또는 직접 제출

### 처리 절차



### 문의처

- 사이트 : www.smpp.go.kr(공공구매종합정보망)
- 각 지방중소기업청 : 전화번호 부록 참조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 궁금해요! 중기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편익을 증대하고,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용'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⑩ 행정지원

## 22-6 사업조정 제도

중소기업 경영 피해 방지 위한 대·중소기업간 사업조정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 유예 또는 사업축소를 대·중소기업이 자율 합의를토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대·중소기업간 상호 조정의 과정을 거쳐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 신청 요건 및 방법

- 신청인 :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인(동일업종 1/3이상의 찬성)
- 피신청인 : 대기업 등(대기업이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 \*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 대기업 임원의 중소기업 임원 겸임·파견, 대기업(또는 친족·임원)의 중소기업 지분 50% 이상 소유 등

### 대기업의 진출 유예기간

- 사업의 인수·개시 및 확장을 최대 6년(3년+3년)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

### 사업 조정 절차

- ① 조정신청(관련 협동조합 등) → ② 중소기업중앙회 검토·의견서(45일) → ③ 중기청으로 이첩 → ④ 사업조정심의회 → ⑤ 이행권고 → ⑥ 공표(이행권고 불이행시) → ⑦ 이행명령(공표 후 권고사항 불이행시) → ⑧ 이행명령 불이행시 1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 : 02-2124-3194/3195
- 중소기업청 사업조정팀 : 042-481-4367/4368

## 22-7 중소기업옴부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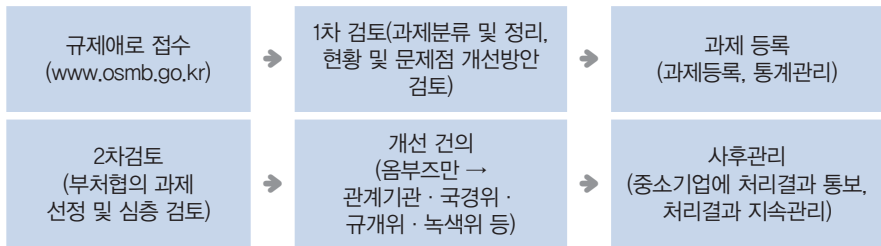
불합리한 규제 처리 파수꾼

중소기업의 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발굴·정비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인의 시각에서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적 체계적으로 접수하여 관련 민원의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요 기능

-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고충처리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중소기업 관련 행정규제의 조사 및 규제 정비 보고·평가분석 등 수행
- 규제 정비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반기별로 보고,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조사 및 의견을 청취하거나, 직무 관련 내용 및 결과 공표

### 처리 절차



### 문의처

- 중소기업옴부즈만실(www.osmb.go.kr) : 02-2100-4900

---

# 부 록



S M A L L   A N D   M E D I U M   B U S I N E S S   A D M I N I S T R A T I O N

1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 방법	442
2	중소기업 조세 지원	444
3	중소기업청 및 지원기관 연락처	448

## 1.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 방법

### 1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

- 규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으로 구분
- 업종별 규모기준 :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자본금) 기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것

해당업종	해당업종	소상공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조업	C	상시 근로자수 10명미만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건설업	F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수 50명미만	상시 근로자수 50명미만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수 5명미만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상시 근로자수 10명미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수 5명미만	상시 근로자수 10명미만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해당업종	분류부호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상시 근로자수 5명미만	상시 근로자수 10명미만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서울남부(서초)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상한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1,000억 원 이상
  -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 독립성 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2 비영리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 :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이 아닐 것
-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이 아닐 것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가 아닐 것

## 2. 중소기업 조세 지원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 후 4년내 에너지신기술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대상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는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 경비 및 경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지원 내용
  - 법인세·소득세 : 최초 소득발생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50% 지원
    - \* 창업일(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로 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취득세·등록세 : 창업일(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로 부터 4년간 면제
    - 재산세 : 창업일(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로 부터 5년간 50% 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대상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서비스/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하는 사

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 사업, 전신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지원 내용 :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 · 소득세의 5~30% 감면

구 분	수도권 내사업장	수도권 외사업장
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 · 소매업, 의료업 10%</li> <li>·상기 업종 외 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 · 소매업, 의료업 10%</li> <li>·상기 업종 외 30%</li> </ul>
중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기반산업 10%(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 · 비디어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 · 소매업, 의료업 5%</li> <li>·상기 업종 외 15%</li> </ul>

-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주된 사업의 업종별로 다음 기준 이상인 기업을 중기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구분
- (제조업) 100명,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 여객운송업) 50명, (기타) 10명
-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 제외

###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법인세 · 소득세)

세액공제제도	수도권 내사업장	수도권 외사업장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 · 소매업, 의료업 10%</li> <li>·상기 업종 외 20%</li> </ul>	3%
연구 ·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용 자산 등(전년대비 고용인원 감소시 기본공제만 적용)	기본공제율 4% + 추가공제율 3% *감소시 기본공제금액에서 1명당 1천만원 차감
연구 ·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시험용시설, 직업 훈련용시설,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사업용자산	10%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세액 공제율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관리 정보 시스템설비, 지식관리시스템	7% (대기업3%)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유동산업 합리화 촉진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 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산업 재해예방시설,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 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업무 수행 위한 보강·확장 시설, 식품위해요소방지 시설, 기술유출방지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3% (기술유출 방지시설 7%)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수도시설·절수설비·절수기기,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부품·중간재·완제품 제조 시설	10%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자세액공제	대기오염방지시설,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방진 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지 선박·장비·자재, 탈황시설, 청정생산시설	10%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 내용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 연구·인력개발비의 3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연구·인력개발비의 3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3년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50% 혹은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25% 중에서 선택한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 당해 과세연도 이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가 소급 4년간 발생한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보다 적을때는 당해연도 발생비용의 25% 공제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p>가. 자체연구개발비</p> <p>①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직원 인건비,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p> <p>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p> <p>–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게 위탁</p> <p>–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 또는 공동개발</p> <p>다. 직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p> <p>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 또는 도입기술을 개량하기 위한 비용</p> <p>마.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p> <p>바. 고유디자인 개발 비용</p> <p>사.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p> <p>아.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p>
2. 인력개발	<p>가. 위탁훈련비</p> <p>①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p> <p>② 직업훈련기관의 위탁훈련비</p> <p>③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p> <p>④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p> <p>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p> <p>나.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p> <p>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p> <p>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p> <p>마.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대학의 운영비</p>

###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세액 공제율
고용증대 세액공제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하는 경우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년 : 100% 청년 외 : 50%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p>① 대학교와 계약에 따른 맞춤형 교육비용 및 현장훈련수당</p> <p>②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기부</p> <p>③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와 계약에 따른 현장훈련수당</p>	<p>① 25% (조특법 10조 준용)</p> <p>② 10%</p> <p>③ 25% (조특법 10조 준용)</p>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임금총액)	100%

### 3. 중소기업청 및 지원기관 연락처

#### 중소기업청

☎1357 [www.bizinfo.go.kr](http://www.bizinfo.go.kr)

부 서 명	전 화 (042-481- )	팩 스 (042-472-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청 장 실	042)481-4309	042)472-3252
차 장 실	4312	3255
중 소 기 업 정 책 국		
정 책 총 괄 과	4507, 8948	7929
기 업 금 융 과	4347, 4454	3275
인 력 개 발 과	4424, 4467	3278
규 제 영 향 평 가 과	3984, 3985	3272
소 상 공 인 정 책 국		
소 상 공 인 정 책 과	4567, 4568	6958
중소기업사업조정팀	3988, 4366	5641
소 상 공 인 지 원 과	3952, 4495	042)489-2961
시 장 상 권 과	4562, 8930	7935
창 업 벤 처 국		
벤 처 정 책 과	4426, 4428	3282
벤 처 투 자 과	4419, 4578	042)481-4418
창 업 진 흥 과	3967, 4497	042)481-3972
지식서비스창업과	4524, 4525	3428
경 영 판 로 국		
판 로 정 책 과	4378, 4515	7932
공 공 구 매 제 도 과	4581, 8995	3294
해 외 시 장 과	4461, 4514	3293
기 술 혁 신 국		
기 술 정 책 과	4440, 4573	3287
녹 색 성 장 팀	4496, 4508	
기 술 개 발 과	4448, 4451	3289
공 정 혁 신 과	4450, 4460	3291

##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02-2100-4900	02)2100-4941
(110-30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2층		

## 지방중소기업청

	구 분	전 화	팩 스
서울청	청 장 실	02)509-6710	02)504-6545
	창 업 성 장 지 원 과	6730	504-6545
	공 공 판 로 지 원 과	6749	507-5769
	수 출 지 원 센 터	6661~2	509-6659
	기 업 환 경 개 선 과	6756~9	502-9847
	기 술 혁 신 지 원 과	6773~9	504-6548
	* 주소 : (477-72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중앙동 2번지)		
부산·울산청	청 장 실	051)601-5101	051)334-4333
	창 업 성 장 지 원 과	5114, 5157	334-4333
	공 공 판 로 지 원 과	5123~6	335-4334
	수 출 지 원 센 터	5163~6	341-0364
	기 업 환 경 개 선 과	5133~5	335-4335
	제 품 성 능 기 술 과	5137~8	341-4204
	시 험 연 구 지 원 팀	5146~8	341-4204
	울 산 사 무 소	052)283-0350~1	052)283-0354
* 주소 : (618-819)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송정동 1633-1)			
대구·경북청	청 장 실	053)659-2202	053)626-2604
	창 업 성 장 지 원 과	2205, 2208	624-3656
	공 공 판 로 지 원 과	2233~8	627-0194
	수 출 지 원 센 터	2241~5	626-8771
	기 업 환 경 개 선 과	2211, 2264	654-1714
	제 품 성 능 기 술 과	2293, 2288	625-0117
	산 학 협 력 팀	2504~7	592-2604
	* 주소 : (704-833)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점단로 132(월암동 1111번지)		

	구 분	전 화	팩 스
광주·전남청	청 장 실	062)360-9116	062)366-1955
	창업성장지원과	9104~7	366-1955
	공공판로지원과	9145~8	362-6229
	수출지원센터	9191~4	366-9671
	기업환경개선과	9133~6	366-9662
	제품성능기술과	9157~9	366-9669
	시험연구지원팀	9161~2	366-9669
	제주시험연구센터	064)723-2101~3	064)723-2107
* 주소 : (502-72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2길 14번지			
경기청	청 장 실	031)201-6900	031)201-6919
	창업성장지원과	6911~2	201-6919
	창업서비스팀	6852~4	201-6919
	공공판로지원과	6931~5	201-6939
	수출지원센터	6944~6	201-6949
	기업환경개선과	6955~8	201-6959
	제품성능기술과	6974~9	201-6969
	북부사무소	820-9023~4	201-9029
* 주소 : (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인천청	청 장 실	032)450-1103	032)818-7469
	창업성장지원과	1114~7	818-7469
	기업환경개선과	1140~2	818-0206
	수출지원센터	1132~7	818-8364
	제품성능기술과	1158~9	818-8339
	시험연구지원팀	1163~4	818-8363
* 주소 : (405-849)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34(논현동 445-1 30B/1L)			
대전·충남청	청 장 실	042)865-6103	042)865-6119
	창업성장지원과	6125~6	865-6119
	수출지원센터	6150~5	865-6159
	기업환경개선과	6130, 6141	865-6139
	제품성능기술과	6142~3	865-6149
	충남사무소	041)564-2284~6	564-3855
* 주소 : (305-343)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유성구 장동 23-3			

		구 분	전 화	팩 스
강원청	청 장 실		033)260-1700	033)260-1619
	창 업 성 장 지 원 과		1611~8	260-1619
	수 출 지 원 센 터		1671~3	260-1679
	기 업 환 경 개 선 팀		1623~4	260-1629
	제 품 성 능 기 술 과		1636~7	260-1639
	연 구 개 발 지 원 팀		1641~5	260-1659
	* 주소 : (200-9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청	청 장 실		043)230-5303	043)235-2492
	창 업 성 장 지 원 과		5357~8	235-2492
	수 출 지 원 센 터		5371~4	235-2494
	기 업 환 경 개 선 팀		5321, 5324	235-2492
	제 품 성 능 기 술 과		5331~4	235-2493
	건 강 관 리 팀		5325, 5341	235-2493
	* 주소 : (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청	청 장 실		063)210-6403	063)210-6429
	창 업 성 장 지 원 과		6415~7	210-6429
	수 출 지 원 센 터		6485~6	210-6489
	기 업 환 경 개 선 팀		6431~5	210-6460
	제 품 성 능 기 술 과		6441~5	210-6449
	건 강 관 리 팀		6411, 6414	210-6429
	* 주소 :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청	청 장 실		055)268-2501	055)262-5146
경북청	창 업 성 장 지 원 과		2521~5	262-5146
	수 출 지 원 센 터		2543~5	262-5012
	기 업 환 경 개 선 팀		2530, 2581	262-5560
	제 품 성 능 기 술 과		2553~5	262-5074
	시 험 연 구 지 원 팀		2572~3	268-2552
	* 주소 : (641-0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50			

###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지 방 청	전 화	팩 스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509-6661~2	02)509-6659	(427-72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601-5165~6	051)341-0364	(618-819)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1~2	053)626-8771	(704-833)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91~4	062)366-9671	(502-723)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201-6944~6	031)201-6949	(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대전· 충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865-6150~1	042)865-6159	(305-343)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450-1132~3	032)818-8364	(405-849)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260-1671~3	033)260-1609	(200-9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230-5371~2	043)235-2494	(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 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210-6485~6	063)210-6489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268-2542~3	055)262-5012	(641-0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광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064)723-2101~3	064)723-2107	(690-130) 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광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064)723-2101~3	064)723-2107	(690-130)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 분	주 소	전화 및 팩스	
본부	150-7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Tel. 02)769-6700 Fax. 02)784-9230	
수도권본부	158-72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중소기업유통센터 사무동 13층)	Tel. 02)6678-4021 Fax. 02)6678-4008	
수도권 지역본 (지)부	서울지역본부	158-72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중소기업유통센터 사무동 14층)	Tel. 02)6678-4021 Fax. 02)6678-4008
	서울동남부지부	137-88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한국벤처투자 1층)	Tel. 02)2156-2222 Fax. 02)2156-2209
	서울북부지부	150-7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9층	Tel. 02)769-6816 Fax. 02)769-6838
	인천지역본부	406-840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Tel. 032)450-0521 Fax. 032)442-3236
	인천서부지부	404-841 인천광역시 서구 검바위로 46( 코레일공항철도빌딩 1층)	Tel. 032)450-0560 Fax. 032)450-0580
	경기지역본부	443-76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511(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층)	Tel. 031)259-7911 Fax. 031)259-7901
	경기동부지부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유스페이스 A동 503호)	Tel. 031)628-6888 Fax. 031)628-6899
	경기서부지부	429-450 경기도 시흥시 만해로 49( 중소기업기술센터 내)	Tel. 031)496-1083~4 Fax. 031)496-1080
	경기북부지부	410-72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Tel. 031)920-6700 Fax. 031)920-6789
	강원지역본부	200-042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2가 96 번지(우리은행빌딩 5층)	Tel. 033)259-7600 Fax. 033)256-9614
	강원영동지부	210-703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사 15층)	Tel. 033)655-8870 Fax. 033)646-9960
중부권본부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042)866-0181 Fax. 042)866-0189	
중부권 지역본 (지)부	대전지역본부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Tel. 042)866-0114 Fax. 042)866-0149
	충남지역본부	331-98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Tel. 041)621-3687 Fax. 041)621-3689
	충북지역본부	361-2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043)230-6811 Fax. 043)230-6888
	충북북부지부	380-100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Tel. 043)841-3600 Fax. 043)841-3619
	전북지역본부	561-73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Tel. 063)210-9900 Fax. 063)210-9988
	전북서부지부	573-87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31( 대한생명빌딩 4층)	Tel. 063)460-9800 Fax. 063)460-9888

구 분		주 소	전화 및 팩스
중부권 지역본부 (지)부	대구지역본부	702-010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90(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Tel. 053)601-5300 Fax. 053)601-5301
	경북지역본부	730-350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경북경제진흥원 2층)	Tel. 054)476-9322 Fax. 054)476-9319
	경북동부지부	790-8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111호)	Tel. 054)223-2047 Fax. 054)223-2049
	경북남부지부	712-210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Tel. 053)212-3300 Fax. 053)212-3305
남부권본부		645-48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 (부산경남연수원 내)	Tel. 055)548-8069 Fax. 055)548-8079
남부권 지역본부 (지)부	광주지역본부	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Tel. 062)600-3000 Fax. 062)956-7518
	전남지역본부	530-831 전라남도 무안군 상향읍 오룡3길 2(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061)280-8000 Fax. 061)280-8080
	전남동부지부	540-969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33	Tel. 061)724-1056 Fax. 061)724-1057
	부산지역본부	617-050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보생빌딩 A동 1층)	Tel. 051)630-7400 Fax. 051)646-0516
	부산동부지부	612-05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백산 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Tel. 051)712-9670 Fax. 051)712-9669
	울산지역본부	680-81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74(W-Center 14층)	Tel. 052)703-1100 Fax. 052)703-1190
	경남지역본부	641-99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창원컨벤션센터 3층)	Tel. 055)212-1350 Fax. 055)212-1360
	경남동부지부	621-905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46(KT&G빌딩 1층)	Tel. 055)310-6600 Fax. 055)310-6677
	경남서부지부	660-844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바이오21센터 벤처지원동 201호)	Tel. 055)756-3060 Fax. 055)756-3068
	제주지역본부	690-0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064)751-2054 Fax. 064)751-2058
연수원	중소기업연수원 (안산)	425-78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Tel. 031)490-1472 Fax. 031)490-1116
	청년창업 사관학교	425-78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Tel. 031)490-1373 Fax. 031)490-1379
	호남연수원	500-15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Tel. 062)250-3000~2 Fax. 062)250-3077/8
	대구·경북연수원	712-100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	Tel. 053)819-5001~2 Fax. 053)819-5050
	부산·경남연수원	645-48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	Tel. 055)548-8045~6 Fax. 055)548-8081

## 중소기업중앙회

구 분	주 소	전화 및 팩스
본부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Tel. 02)2124-3114 Fax. 02)761-6109
서울지역본부	138-2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81-5 (서일빌딩 8층)	Tel. 02)761-7991 Fax. 02)761-6425
부산· 울산지역본부	611-839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702-1 (프라임빌딩 6층)	Tel. 051)637-2061 Fax. 051)637-2066
울산지부	683-804 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03호)	Tel. 052)283-4323 Fax. 052)267-4320
대구· 경북지역본부	704-130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268-5 (드림피아 3층)	Tel. 053)524-2110 Fax. 053)524-2117
인천지역본부	405-84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64 (한국토지공사 2층)	Tel. 032)437-8705 Fax. 032)437-8708
부천지부	421-809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364 (부천테크노파크 관리동 4층)	Tel. 032)234-2810 Fax. 032)234-2813
경기지역본부	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층)	Tel. 031)259-7800 Fax. 031)259-7810
경기북부지부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 203호)	Tel. 031)851-0164 Fax. 031)851-2862
안산지부	425-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2(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2층)	Tel. 031)492-2574 Fax. 031)492-2594
광주· 전남지역본부	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광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Tel. 062)955-9966 Fax. 062)951-9966
강원지역본부	200-944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70-3 (강원도향토공예관 3층)	Tel. 033)241-0010 Fax. 033)241-0015
원주지부	220-952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50-29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8)	Tel. 033)733-0513 Fax. 033)733-0516
충북지역본부	361-8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Tel. 043)236-7080 Fax. 043)236-7084
대전· 충남지역본부	302-86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267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2층)	Tel. 042)864-0901 Fax. 042)864-0902
천안지부	331-170 충남 천안시 성정동 1437 (충남타워 901호)	Tel. 041)622-3823 Fax. 041)622-3826
전북지역본부	561-84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37-2(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063)214-6606 Fax. 063)214-5166
경남지역본부	641-200 경상남도 창원시 대원동 123 (창원컨벤션센터 401호)	Tel. 055)212-1177 Fax. 055)212-1170
제주지역본부	690-824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064)758-8579 Fax. 064)757-5673
중소기업 인력개발원	449-870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900	Tel. 031)320-0153 Fax. 031)320-0713
LA사무소	4801 Wilshire Blvd, Suite 312, Los Angeles, CA 90010, USA	Tel. 1-323-634-0455 Fax. 1-323-634-0415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단명	주 소	전화 및 팩스	홈페이지(www.)
중앙회	302-847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기움 대전센터 14/15층)	Tel. 1588-7365 Fax. 042)480-4007~8	www.koreg.or.kr
강원재단	200-04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45 (SC은행 3층)	Tel. 033)251-0011 Fax. 033)251-1356	www.gwsinbo.co.kr
경기재단	443-76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3층)	Tel. 031)259-7700 Fax. 031)259-7777	www.gcgf.co.kr
경남재단	641-2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창원컨벤션센터내 4층)	Tel. 055)212-1250 Fax. 055)212-1276	www.gnshinbo.co.kr
경북재단	730-350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7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층)	Tel. 054)474-7100 Fax. 054)474-7104	www.gbsinbo.co.kr
광주재단	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내)	Tel. 062)950-0011 Fax. 062)950-0063	www.kjsinbo.co.kr
대구재단	704-902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46-29(대구은행 죽전지점 4층)	Tel. 053)560-6300 Fax. 053)554-9905	www.ttg.co.kr
대전재단	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장북로 96(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내)	Tel. 042)380-3800 Fax. 042)380-3888	www.sinbo.or.kr
부산재단	614-780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프라임시티빌딩 5층)	Tel. 051)860-6600 Fax. 051)816-4551	www.busansinbo. or.kr
서울재단	121-70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Tel. 1577-6199 Fax. 02)3278-8114	www.seoulshinbo. co.kr
울산재단	680-80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3층)	Tel. 052)289-2300 Fax. 052)289-8964	www.ulsanshinbo. co.kr
인천재단	405-8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인천종합비즈니스 센터 9층)	Tel. 032)260-1515 Fax. 032)260-157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540-951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 (전남도청 동부청사 1층)	Tel. 061)729-0600 Fax. 061)729-0608	www.jnsinbo.or.kr
전북재단	560-04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 영로 72(전주상공회 의소 1층)	Tel. 063)230-3333 Fax. 063)230-3377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690-802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	Tel. 064)758-5740 Fax. 064)758-5748	www.jejuinbo.co.kr
충남재단	336-813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1층)	Tel. 041)530-3800 Fax. 041)541-9838	www.cnsinbo.co.kr
충북재단	361-8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충북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5층)	Tel. 043)236-2691 Fax. 043)237-0362	www.cbsinbo.or.kr

## 그 외 중소기업 지원기관

구 분	주 소	전화 및 팩스
신용보증기금	1588-6565	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1544-1120	www.kibo.or.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46	www.innobiz.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400	www.tipa.or.kr
(사)한국산학연합회	042-720-3300	www.sanhak.net
중소기업유통센터	02-6678-9000	www.sbdc.co.kr
벤처기업협회	02-890-0600	www.venture.or.kr
한국여성벤처협회	02-2156-2160	www.kovwa.or.kr
한국벤처투자(주)	02-2156-2000	www.k-vic.co.kr
(사)창업진흥원	042-480-4300~5	www.iked.or.kr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042-256-1070	www.kmcca.net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00	www.womanbiz.or.kr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326-6200	www.debc.or.kr
소상공인진흥원	042-363-7700	www.sbdc.or.kr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www.sbdc.or.kr
전국상인연합회	042-721-0120~9	www.ukma.or.kr
시장경영진흥원	02-2174-4339	www.sijang.or.kr
한국무역협회	1566-5114	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02-3779-6295	www.koreaexim.go.kr
KOTRA 중소기업원본부	02-3460-7491	www.kota.or.kr
한국산업은행	1588-1500	www.kdb.co.kr
기업은행	1566-2566	www.ibk.co.kr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www.ksure.or.kr
대·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00	www.win-win.or.kr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02-6050-3853	www.sppm.korcham.net

## 2013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

발행일 : 2013년 1월

발행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481-3965

팩 스 : (042)472-7929

---

중소기업청  [www.smba.go.kr](http://www.smba.go.kr)